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책임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최우영(전북대학교 · 교수)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윤인진(고려대학교 · 교수)

이영란(중앙대학교 · 전임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영양실조, 신체발육부진, 가족해체, 정규교육기회의 상실, 은둔과 도피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남한 정착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회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처방안 연구가 시급함.
-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외 정책과 난민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연구 내용

-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이 포함되었음.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개념 및 현황분석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책분석
 - 중국 연변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 인도차이나 난민을 중심으로 한 난민청소년 사례연구분석
 - 정책제언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개념 및 현황분석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현재 이들의 규모, 발생원인, 이동경로 및 체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음. 그 결과 이들은 북한에서의 열악한 경제 및 가정환경에서 탈피하고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3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됨. 또한 이들의 체류지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에는 동남아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음. 현재 이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조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지역에만 대략 2만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문헌연구에 나타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은 정체성의 위기, 열악한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의 위기, 가족의 해체, 교육권의 박탈, 노동력 착취 및 여성의 인신매매 등과 같이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은 위와 같은 개인적 어려움 뿐 아니라 관련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더해져 그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한국 정부는 북한이나 해당국과의 외교관계로 인해 조용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며, 관련국들 또한 자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난민관련 국제기구나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하고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 색채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해 해당국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인권현황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으나 그 영향력 면에서 아직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함.
-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은 선행연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과 도피와 은둔으로 점철된 제3국에서의 생활로 인해 이들의 건강상태는 열악했으며, 가족은 해체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제3국 체류시 정규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었으며, 현지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개인교습이나 소규모의 과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학습의욕은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크게 저하되어 있었음. 또한 신분 노출과 체포 및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족해체에 따른 심리적 상처 등으로 이들의 정신 건강 역시 크게 위협받고 있었음. 이들에게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생활 및 경험만이 허용되었으며, 또래관계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랐음. 이들은 청소년이

라는 특성상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꿈과 이들이 처한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음.

- 중국 이외의 태국과 같은 동남아 지역이나 몽골 등에 위치한 공관위탁보호시설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역시 시도되었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신변보호를 이유로 이들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들에 대한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은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청소년들의 상황과도 많은 유사점을 보였음.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의 자국탈출에서부터 재정착까지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방안들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수립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3. 정책 제언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대규모의 전반적인 조사 실시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 수립
 - 민간단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 관할 공관 및 수용소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 지원
 - 이벤트성 기획망명의 억제
 - 북한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지원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6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6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정책	7
3) 난민 청소년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4) 정책제언	8
3. 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8
2) 면접조사	8
3)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9

II.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3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13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8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34
1) 정체성의 위기	34
2)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	36
3) 정신건강	41
4) 가족의 해체	46
5) 교육권의 박탈	49
6) 노동력 착취	51
7) 여성의 인신매매	52
3.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	55
1) 한국의 정책	55
2) 관련국들의 정책	74

III.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중국 연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1. 자료수집	109
1) 조사 대상	109
2) 면접절차	112
3) 자료 분석	113
2.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114
1) 거주 유형	114
2) 주요 특성	117
IV. 난민 청소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난민 청소년의 제3국 체류 경험과 건강 및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1.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 탈출과 난민 캠프 체류 경험	154
1) 인도차이나로부터의 탈출	154
2)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	160
2.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162
1) 미국 및 서유럽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164
2) 난민 캠프 또는 인접국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166
3) 정신적 외상	171
3. 난민 청소년의 교육문제와 사회적응	174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181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87
2. 정책제언	190
3. 향후 연구계획	207
참 고 문 헌	209

표 목차

<표 II-1>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7. 3월 기준)	21
<표 II-2>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6. 6월 기준)	22
<표 II-3> 국내 입국 북한이탈아동·청소년 현황 (2006. 6월 기준)	22
<표 II-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가족별 국내 입국 현황 (2006. 6월 기준)	23
<표 II-5>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별 현황 (2006. 6월 기준)	24
<표 II-6>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HAZ	38
<표 II-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SM-IV-TR 진단적 준거	41
<표 II-8>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학력	50
<표 II-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비율(1998-1999)	59
<표 III-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적사항	109
<표 III-2> 현지활동가의 인적사항	110
<표 IV-1> 난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연구의 유형화	164
<표 V-1> 정책 방안 추진 계획	205

그림 목차

[그림 II-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주요경로	30
[그림 IV-1]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 탈출(1975-95)	155
[그림 IV-2] 베트남 보트피플의 일시 보호처(1975-95)	156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주민들의 규모는 1999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전체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2002년 이후 한 해 입국 인원이 1,000명을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1990년대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3월 현재까지 총 1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또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입국경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단독 입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한 입국이나 여성 중심의 입국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입국 주민들의 연령층도 다양화되었으며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느 연령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2005년 한 해에만 총 380명이 입국하였으며, 2006년에는 총 469명이 입국하였다. 또한 2007년 3월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20세 미만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수를 살펴보면 모두 1,615명에 이르고 있다(통일부, 2007). 이러한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입국한 평균 북한이탈 주민의 약 17%에 해당한다.

입국 당시 만 20세 미만의 무연고 청소년들의 입국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5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에는 50명이 입국함으로써 연도별 최다 입국자 수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7명과 25명이 입국하였으며, 2007년 6월 현재 총 무연고 청소년의 수는 25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통일부, 2007). 이렇게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의 증

가 및 형태의 다양화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규모의 증가로 이어졌다.

문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규모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나온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예: 박선경, 1998; 김미숙, 2004)은 남한사회에 정착한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미숙(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 기초학력 획득 준거인 60점 미만을 받은 학생들이 각각 약 29%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국어, 수학 각각 18%, 67%)보다는 중학교(국어, 수학 각각 43%, 82%)에서 그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학력문제는 곧 학교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적응상의 문제와 겹치면서 정규학교의 중도포기 사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규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옮기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학원을 차선택으로 택한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는 이들에 비해 유해환경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길은배, 문성호, 2003). 이는 아마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만큼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및 경험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비행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인들의 편견,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 뒤늦은 진학으로 인한 동급생들과의 나이차이 등의 이유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의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박선경, 1998;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이러한 경우 이들은 주류사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소외감 및 열등감, 불안, 분노 등의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들은 폭력 행사와 같은 일탈 내지는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조한범, 이우

영, 이금순, 전효관, 2003; 길은배, 문성호, 2003).

이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적응 현상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상태 및 욕구, 그리고 현재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인 이 연구는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친 3개년 계획의 연구이다. 제1차년도 연구인 2006년 연구에서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수준에 대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거주 기간이 짧고 북한이탈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북한이탈 과정에서 외상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남한생활에서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 가정적응 문제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문제가 남한정착 이후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오기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것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예: 이새롭, 2003; 정우창, 2006;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또한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에 오기 이전부터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심각한 식량난은 이들로 하여금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하고 그에 따른 성장발육상의 문제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붕괴와 가족 해체를 불러일으키며, 정규교육의 기회를 빼앗기도 하였다(정우창, 2006). 탈북 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장기간에 걸친 학교경험의 부재와 학력 손실을 경험하였으며(정진경 외, 2004), 탈북과정에서의 체포 불안 등에 따른 정신적 황폐화, 일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심각한 성적 유린 상태에 대한 무방비적 노출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이새롭, 2003).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및 신체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이후 남한사회적응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윤인진, 2000).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미 북한이탈과정 혹은 훨씬 이전인 북한거주기간에서부터 형성된 문제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는 남한에 거주하기 이전의 상황에서부터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제2차년도 연구인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외의 정책 및 난민에 대한 외국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부분은 이들에 대한 개념 및 현황,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 본 이들의 특성, 면접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이들의 특성이다.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개념 및 현황

여기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개념, 규모, 발생원인, 이동경로 및 체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2) 문헌연구를 통해 본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
이 부분에서는 그간의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면접자료 분석을 통해 본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
문헌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국 연변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와 선행연구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다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정책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으로는 한국의 정책 및 관련국의 정책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정책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및 지원정책,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원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관련국의 정책으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 미국, 유엔과 NGO들의 기본 정책을 살펴보고, 국제아동권리협약이 전반적으로 불이행되고 있는 실태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3) 난민 청소년에 대한 외국의 사례

외국의 난민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는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외국사례 연구의 내용으로는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의 모국으로부터의 탈출, 제3국 난민 캠프에서의 체류, 난민 수용국으로의 입국 및 적응 등이 포함되었다.

4) 정책제언

위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제언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출되어진 제언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추진단계를 표기하여 정책 수립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1) 문헌연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및 특성, 심층면접을 위한 기본 질문지 작성, 조사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해석, 이들에 대한 한국 및 관련국들의 정책분석, 외국의 난민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 연구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2) 면접조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현황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및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로는 현재 가장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 지역의 북한이탈 청소년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몰리고 있는 몽골, 태국 등에 위치한 공관위탁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공관위탁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들

과의 면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연락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 신변보호를 이유로 이들과의 접촉을 허락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면접조사만이 실시되었다.

3)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선행연구 개관, 질문지 작성 및 면접조사의 결과 해석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산·학·연·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장전문가들이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정책제언에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Ⅱ.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3.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

II.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특성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제3국 체류 북한이탈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나 제사회적 논의, 그리고 정부당국의 관련 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특별히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는 개념 정의 과정에서 성인과 청소년층이라는 구별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인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정책적 필요나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청소년, 여성, 장년, 노인 등으로 연령대를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사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에 있어서 연령대별 구별에 기초한 차별적 명칭과 개념 정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치적·법적 지위는 어떠하며, 이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가 더욱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이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국내에서 그들을 명명하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제3국이라는 지형 속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치적·법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범위를 살펴보자. 그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로 북한이탈주민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법률에 기초하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을 정의하면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2006)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사망하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간 자는 모두 2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외국으로 이민 간 청소년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들 중 일부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그 국적을 포기하고 제3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여 그 곳에 체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북한을 떠난 후 아직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 속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정치적 시각 및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등이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써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정착한 경우에는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북한인 등으로 지칭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정시각을 담고 있다. 귀순의 경우에는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남북 간의 체제경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길은배, 2002). 북한출신 남한 이주자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기존의 용어들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선

입견을 제거하고 독일의 경우와 같이 민간의 정착지원을 이끌어 내자는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자유북한인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최근 들어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고 남한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명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 명칭에 따라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포괄적·총체적 차원의 명칭사용보다는 연령별 구분에 따른 호칭 사용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게다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을 천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명칭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은 그 명칭의 사용이 다의적 목적을 가짐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를 염두에 둔 명칭 사용이나, 이에 관한 우리 정부 및 미국, 중국, 태국 등 관련국들의 정책적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난민 지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난민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들을 불법입국자 내지는 체류자로 결정하고, 강제 복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난민지위를 확보할 경우에는, 우리 사회나 제3국으로의 인도 등과 같은 조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분히 그러한 난민지위 여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탈북난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민, 북한(실향)유민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탈북난민(refugee)¹⁾이란 용어의 사용은 이들이 국적국인

북한이나 체류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 처벌의 위협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실향)유민(externally displaced person)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탈출한 난민들과는 차별되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규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 국적국 밖에서 떠돌고 있는 경우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이우영 외, 2000). 이처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난민 인정 문제는 그들의 생존권 내지는 인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뛰어넘는 정치·사회적 지위 개념의 문제와 맞닿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의 문제를 직접으로 표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태국 등이다²⁾. 그중에서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보다 구체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가장 영향력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련 재정지원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2005년 미국무부의 북한이탈주민 실태 및 북한이탈주민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또한 중국 등 재외 공관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용이 테러 및 탈북자들의 신변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2006년 북한자유주간에 동남아에 체류 중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정착한 북한

- 1)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1951년 난민협약서와 1967년 난민의정서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계층,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거나, 자국의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다.
-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난민지위 문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 중 관련국들의 정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이탈주민 가족에서 정치적 망명지위를 부여한 지역이민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대량 탈북유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이금순, 2006)되면서 그 활동과 정치적 입장이 당초보다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정치 및 자국의 관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층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현재 중국은 자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불법체류자’ 또는 ‘경제이주민’으로 보고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통일부, 2006). 즉, 한국 등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중·북 양국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태국 역시 1951년에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서울신문, 2007.4.3).

반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다(통일부, 2006). 우선,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되, 탈북을 유도·조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즉,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국내법령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국내에 수용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는 것에 반대하며, 체류국 내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UNHCR 등 국제기구와 협조,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및 인도적 배려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장기적으로 난민지위 인정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용한 해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의 변화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정도 및 시각도 점차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 가졌던 ‘굶주림에 지쳐 나라를 등지고 온 같은 민족’이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수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탈 청소년은 반세기 동안 떨어져 지내온 우리의 민족이기보다는 현재 남한 사회에 소속된 ‘소수집단’³⁾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바로 북한이탈 청소년이 몇 몇 소수의 문제가 아닌 ‘소수집단’의 문제로 등장한 것에 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대적 의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몽골,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 규모 등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2006년 통일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외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동남아 등에 체류하고 있으나, 거주지별 체류 규모 등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은둔, 도피 생활을 하는 관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2006). 따라서 현재 제3국 체류

3) ‘소수집단’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 또는 국가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집단 또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때도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힘의 균형관계가 문제될 때 피지배에 놓인 집단을 소수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발표된 이들의 규모는 거의 대부분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한 추정치였으며, 그나마 정부 관계자와 민간단체 실무자의 추정치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왔다(김인혁, 2005). 따라서 청소년을 포함,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추정 통계치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타당한 것으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추정한 후, 최근까지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 중에서 청소년층의 규모를 파악하여 비율로 나타낸 다음,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추정치 중에서 그 비율만큼을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로 추정하는 접근 방법일 것이다. 이의 계산 방법을 구체화 하면 다음과 같다.

-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추정치 : A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 B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 C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의 규모(비율) : D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추정치) : E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의 규모(비율) : D

$$\frac{C}{B} \times 100 = D$$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 : E

$$A \times D = E$$

○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추정치(A) : 약 10만 명

1990년대 말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중국지역의 북한이탈주민 규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중국에서 국경이동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활동가 및 관련 연구자들은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를 약 10만~4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이금순, 2005a). 이후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3만~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박상봉, 2003). 2003년 6월 유엔의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여 명으로 추정하였다(조선일보, 2003.6.20). 중국 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인 양첸밍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규모를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하였다(양첸밍, 2004).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 역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5만 명 이하이며, 그 중 많은 수가 수차례 월경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만~4만 명 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005년 2월 미국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으나, 2000년경에는 7만 5천~12만 5천 명 선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U. S. State Department, 2005). 좋은벗들이 2005년 6월~7월경에 중국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3만~5만 명 선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에 대한 미국무부의 추정을 재확인시켜준다(좋은벗들, 2006.9.17).

한편,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송환된 탈북주민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가 동북3성 지역 국경도시를 실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한 뒤인 6월과 7월에는 6천 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고 밝혔다(USCR, 2002.6.6). 이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6만여 명 정도가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성과 같이 다양한 추정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이 둔화된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규모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규모(B) : 8,541명

통일부는 2007년 3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총 10,30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표 II-1>). 그러나 <표 II-2>과 같이 국내 입국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정부의 통계자료는 200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2006년 6월 말 기준인 8,541명으로 집계하였다.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C) : 약 1,533명

2006년 통일부가 국회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표 II-1>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7. 3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3	합계
이전																현재	
인원	633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594	10,300

※ 자료 : 통일부, 2007.

<표 II-2>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6. 6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91 이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계
인원	625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854	8,541

※ 자료 : 통일부, 2006.

6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약 1,533명 정도이다. 아래의 <표 II-3>에 근거할 때, 동기간 중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총 1,615명이나, 이중에서 '0~6세'의 아동을 제외하면 1,533명이다. 물론, 1,533명 중에는 7~8세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인 9~24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7~8세 아동을 제외한 별도의 자료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들을 포함시켰다.

○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층의 규모(D) : 약 17.9%

<표 II-3> 국내 입국 북한이탈아동·청소년 현황(2006. 6월 기준)

(단위 : 명)

연령 성별	0~6세	7~13세	14~20세	21~24세	합계
남	36	145	314	307	802
여	46	135	321	311	813
계	82	280	635	618	1,615

※ 자료 : 통일부, 2006.

앞에서 제시한 통계 산출 방식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말 기준 국내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541명 중에서 동 기간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 1,533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이다.

$$D = \frac{C(1,533\text{명})}{B(8,541\text{명})} \times 100 = 17.9\%$$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E) : 약 18,000명 내외

앞에서 제시한 통계 산출 방식에 의거하여 2006년 6월 말 기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전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을 약 10만 명으로 추산할 때, 이 중 17.9%에 이르는 약 18,0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표 II-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2년부터 탈북자들의 가족 단위 국내 입국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 중에서 청소년층이 차지

<표 II-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가족별 국내 입국 현황(2006. 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입국자 수	가 족		단독 입국자 수
		가족 수	세대원 수	
02년	1,139	160	409	730
03년	1,281	190	464	817
04년	1,894	274	668	1,226
05년	1,383	168	380	1,003
06.6월	854	121	267	587

※ 자료 : 통일부, 2006.

하는 비율이 30%에 가깝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국 체류 북한 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추정 방식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에 따라 그 숫자가 변동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형태가 과거의 단독입국에서 2002년부터는 가족 단위별 입국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청소년층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청소년층의 비율이 30%에 가까움)을 보이고 있으나, 위의 통계 산출 방식은 그러한 특성을 담아 낼 수 없는 한계도 있음을 명시한다.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발생원인

현재 북한당국의 통제 강화 및 중국 등 현지 국가들의 강제 송환 조치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발생원인은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II-5>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가족단위의 탈북 경향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층의 탈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세대와 차별화된 탈북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결정에

<표 II-5>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별 현황(2006. 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생활고	처벌 우려	체제 불만	가족 동반	중국 정착	가정 불화	기타	계
03	774	80	123	194	46	53	11	1,281
04	1,125	104	156	401	12	87	9	1,894
05	849	81	96	308	7	36	6	1,383
06.6월	543	39	19	208	4	24	17	854

※ 자료 : 통일부, 2006.

의한 동반 탈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사회보다도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 가부장적 권위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가족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녀들의 의사가 존중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특히, 탈북과 같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탈북에 성공하여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 중에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남한사회로의 입국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에 입국하여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원인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최근의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① 북한의 경제난·식량난 악화 및 재화 획득 욕구 증가

북한주민이 탈북을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인 것으로 평가된다. 초기의 탈북은 식량난으로 생존자체를 위협받던 국경산간 지역과 동북부 대도시 지역 주민들이 먹을 것과 생필품을 찾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김강녕, 2006).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무연고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생존을 위해 가족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일명 ‘꽃제비’로 불리는 거리의 청소년으로 전락하여 중국지역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길은배, 2002).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소수에 해당할 뿐이며,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경제난·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보호자들의 결정에 따른 동반 탈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3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조한범 외, 2003)에서는 ‘탈북의 목적’으로 ‘배가 고파서’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가족과 동반 탈

출' 이 12.5%, '부모가 없고 의지할 곳 없어서' 가 12.5% 등으로 나타났다(조한범 외, 2003).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탈북의 주요 원인이 경제난 및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이 외부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식량난이 완화되었으며, 북한주민들도 장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모색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이전처럼 단순히 절박한 생존형의 탈북보다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탈북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탈북을 감행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돈을 벌어 장사밑천을 마련하여 귀환하거나, 중국에서 취업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탈북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전 탈북경험을 통해 중국 및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탈북 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 하에 가족들도 연차적으로 탈북하여 남한으로 입국하기에 용이한 제3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인권백서, 2006).

② 탈북경험을 통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접촉

이전의 탈북경험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도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비교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재탈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선한승, 강일규, 김영운,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 2005). 또한, 탈북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몸수색과 구타 등을 통해 탈북자로 하여금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재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 후 중국 등의 관련 기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성인의 그것보다 낮아 재탈북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한 번 탈북한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으로 송환되어 간다 하더라도 억압적인 체제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고 재탈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에서는 ‘927그루빠’라는 것을 조직하여 별도의 수용소를 만들고 꽃제비와 탈북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을 그곳에 집단 수용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지급하여도 대부분이 이곳을 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역 앞에 있는 8층 건물을 927수용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불을 찢어서 밧줄을 만들어 8층에서 타고 내려와 도망가는 정도라고 한다(길은배, 2002).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송환을 통해 이들의 탈북경험이 주위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탈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의 변방지대, 북한 국경지역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서 조사와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같은 처지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재탈북의 정보를 상호 교환, 입수하여 재탈북을 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인권백서, 2007).

③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

북한주민들이 국경이동을 새로운 생존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동북3성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도 한몫 담당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는 매우 강한 민족의식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문화혁명기에는 북한사회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조선족들은 북한식량난 초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역단위에서 상당한 정도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에 김태현, 노치영(2003a)이 13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중 연변의 조선족 중에 친척이 있어 탈북을 시도한 여자 청소년의 증언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번도 거저 불세루(불시로) 이렇게 중국에 그 안까지 통해서 온 게 거저 연변에 친척두 있구, 한번 중국에 갔다 오구 거저 중국이 거저 괜찮다, 좋다는 거 이렇게 말하더라 말이, 북조선보다 생활이 더 좋고, 그렇더라 말이, 그럼 돈이랑 벌 수 있다, ... 연변의 농촌 같

운데 가면 이렇게 말이 무슨 어느 마이 이렇게 메른(말을 매면) 돈
이 중국 돈으로 15원씩 준다 이런 말 들었던 말입니다...” (김태현,
노치영, 2003a)

또한 중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종교단체 및 개인들의 간접적 지원도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였다(북한인권백서, 2007). 예로써,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리 공동체’는 조선족의 보호와 지원 속에 어렵게 생명을 유지하
며 떠돌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사회적응을 도와주
는 대표적 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중국에서 직접 데리고 온 북한이탈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은 약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다(길은배, 문성호, 2003).

그러나 탈북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저지른 절도, 강도,
살인, 인신매매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처벌압력도 강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족들이 행하
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가 상당부분 쇠퇴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
나 향후, 이들에 대한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가 주목된다.

④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

탈북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는 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
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해외공관을
포함,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반인도적 범죄자 등 매우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통일백
서, 2007).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정부는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및 임대주택 지급, 교육보호, 국민기초생
활보장, 의료보호, 사회적응교육, 취업교육, 취업보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조선족,
현지체류 남한 기업인 및 개인, KBS 사회교육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확

산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탈북의 결정적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인권백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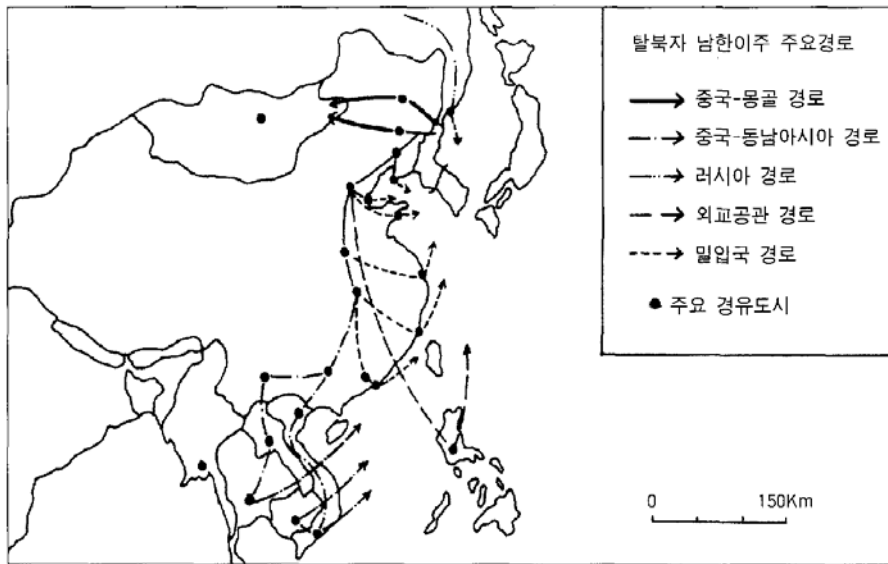
⑤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내 잔여 가족에 대한 기획 탈북 시도

최근 남한 입국자 중 가족단위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에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많은 수가 정착금과 기타 소득을 활용하여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국경이동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락통로가 다양하게 열려있고,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북한 내 가족과의 직접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가족들의 신변을 확인한 후 이들의 탈북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북한인권백서, 2006).

통일연구원이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80명 중 대다수인 90.1%가 가족들의 탈북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실제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들의 탈북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를 위해 직접 중국을 거쳐 북한을 다녀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이동경로

최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이동경로는 대부분 보호자와 동반 탈북하여 이동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2007년 4월 26일에 불법 밀입국 혐의로 5개월여 동안 라오스 구치소 등에 수감되었다가 국내로 입국한 최향(14세), 최혁(12세), 최향미(17세) 등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해 오다가 2006년 11월 태국으로 가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 라오



출처: 문남철(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재외 거주공간정책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4), 497-511.

[그림 II-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주요경로

스 국경을 넘는 도중 국경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화일보, 2007.4.26). 이는 2000년대 초반 중국지역에 집중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동경로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1] 참조).

1990년대 후반 북한이탈주민들의 체류지역은 주로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이후 중국 측의 단속이 강화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지어 습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체류지역이 한족마을 및 대도시 빈민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체류지역의 확대와는 달리 중국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급감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경 경비와 단속의 강화,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연합뉴스,

2005.8.21). 또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모두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식량과 돈이 어느 정도만 모이면 다시 가족과 친척이 있는 북으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돌아갈 가족과 북에서의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주로 중국거주나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이외의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전 지역으로 이동경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체류의 목적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 국가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인권백서, 2006). 즉, 동남아 지역 국가와 몽골 지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행을 위한 경유지 혹은 대기 장소로서 기능해 온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써, 2006년 8월 태국에서 175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 당시 연행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중 대부분은 부녀자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와 임산부, 장애인, 심장병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태국정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처리문제에 대해 중국과는 달리 관대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단속강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태국으로 몰리고,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 “미국으로도 쉽게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태국행 입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http://news.media.daum.net/printpage/politics/others>). 이처럼 태국이 근래 들어 한국 또는 제3국행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떠오르면서 2005년도에는 태국 경찰에 체포된 북한이탈주민이 50여 명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400여명, 그리고 2007년 4월까지도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07.4.3).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왜 동남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가이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은 중국이 북·중 관계 및 동북3성 치안 등을 고려해 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 주요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 몽고로 가거나 중국 서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타이-미얀마-라오스 국경을 이루는 메콩강을 건너 태국 북부 치앙마이로 가는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의 견해이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안의 검문검색에 걸려 북한으로 강제 소환되는 중국에 체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동남아지역으로 이동한 후, 현지에서 기회를 포착하여 한국 또는 제3국행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불안한 입장을 고려하여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제3국 체류 실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기까지 제3국을 떠돈 기간은 몇 달에서 몇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병호, 정진웅, 정효관, 이부미의 연구(2002)에 따르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여러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교를 다니는 경우(27.8%)보다는, 교회의 원조(22.2%)를 받거나 노동(25.0%), 구걸(5.6%) 등을 통하여 생계를 꾸리거나, 단속을 피해 은둔생활(19.4%)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체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윤여상, 2003). 첫째, 부모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가족단위로 탈출하였거나 개별적으로 탈출 후 중국에서 합류한 경우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할 경우 공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족단위 생활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는 조선족 친척과 생활하는 경우이다. 중국의 친척들은 이들을 장기간 보호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보호한 후 고아원이나 은신처를 알선해 주거나, 약간의 이동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지원 단체 및 개인 활동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단체 및 활동가들은 개별적으로 은신처나 고아원을 운영

하면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는 등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동북3성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밀고아원’은 과거 수십 개에 이르렀으나,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 때문에 그 규모와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구걸 등을 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생활이 오래된 북한이탈 청소년일수록 언어습득 수준이 높고 현지 적응력이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경우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고 기본적인 잠자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로 이른바 ‘꽃제비’라고도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관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낮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며 도리어 자신이 중국에서 구걸 등을 통해 번 돈으로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나이보다 서너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 부랑아처럼 거리와 시장을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영양실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몸집을 보고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조한범 외, 2003). 그러나 현지 활동가들은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꽃제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을 포함, 북한이탈주민들의 태국과 캄보디아 체류 생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난민지위를 얻지 못한 이들을 둘러싸고 국가 간에 얽혀있는 복잡한 외교관계, 국제법 등으로 인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면,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는 이들이 태국에서 체류하는 이들보다 더 조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두 국가 간의 공통점이라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거주지가 주로 기독교인들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

들은 그곳에서 집중적인 성경공부와 글자공부 등을 하고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제3국에서 머무는 기간은 약 4~10개월 정도인데 아동, 환자, 노인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 가족은 약 4개월 정도 현지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북문화통합교육원, 2006).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특성

1) 정체성의 위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제3국에 체류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정체성(identity)의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인 적응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적응을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응은 건전한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는 탈북 이후의 현지 체류 기간 및 개인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접촉을 통해 일정 정도의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한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함과 동시에 역할과 준거대상의 부재 및 가치관의 혼란과 같은 아노미 현상을 체험함에 따라 이들의 정체성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 이후 북한에서 영위해 왔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상당부분 버리고 제3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즉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전에 받아들인 내면화된 규범이나 가치, 행위 유형을 떠나서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가치와 행위 유형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탈북을 전후로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탈북 후 중국 등의 현지에 체류하며, 은둔, 도피, 구걸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사회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전우택(1997)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위기를 문화적응이 아닌 체제 정체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정체성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북한이탈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전우택, 1997). 이 연구에 따르면 특이하게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다른 난민들(예를 들어 베트남 난민)과는 달리, 남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건강상태는 돈과 그에 대한 만족도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주위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되었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 즉 북한이나 남한 어느 한쪽에 대한 소속감이 아닌 그 중간적인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정체성의 문제는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사회적응 단계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기존의 남한 청소년들과 쉽게 어울리지만 방과 후에는 자신들과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는 또래집단하고만 어울리는 한국 내 북한사회를 형성한다거나, 본인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 등은 이들이 갖는 이중정체성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길은배 외, 2003). 이러한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속이며 살아가야 하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중정체성은 북한사회에서 형성됐던 이른바 ‘보호문화’의 해

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북한청소년들은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으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북한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특정 조직과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에 익숙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체로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수동적인 행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길은배, 문성호, 2003). 이렇게 북한사회에서 경험했던 보호문화와 순종의 습성이 탈북 후 생활하고 있는 제3국가에서의 다양한 자립적 생존과정 속에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중정체성을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체성 확립의 문제가 가시적이지 않다고 하여, 이를 소홀히 다룬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제3국 체류 경험이 비교적 짧은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국내 입국 이후의 사회적응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제3국 체류 기간이 길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경험했을 청소년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겪을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 및 사회가 감당해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

북한은 1990년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하면서 거의 모든 계층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매우 열악해졌다(임원혁, 1998). 여덟 살 정도의 남자아이로 보였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조사결과 15세 소녀(고등중학교 3학년)로 밝혀진 것은 이러한 열악한 영양상태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윤여상, 1998). 또한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은 1998년 가을, 북한 내 8개 지역에서 7세 미만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62%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장기

적인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였다(연합뉴스, 2000).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은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막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북한 식량난의 최대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영양섭취도 하지 못해 성장발달의 문제 및 각종 질병피해의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은 의료 및 보건위기와 맞물려 그야말로 ‘대책 없는 상황의 연속’ 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중·후반에는 남북한 청소년의 평균체중 및 신장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였으며, 성장장애를 앓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은 위급의 수준을 넘어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위협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나는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했고 먹지도 못해 키도 142cm 정도 밖에 안 되며 신체 또한 허약하여 중국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왜소하다...나이는 어려도 조선과 중국의 차이는 너무나 심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다. 조선수용소에 갇혀 봤는데 짝 하면 때리고 욕하며 구박주지만, 용정수용소에서는 큰 소리로 욕은 하였지만 때리지는 않고....밥도 이밥에 김치, 국을 주었는데 한 그릇을 어느새 먹었는지 모르겠다....조선에서 언제 이밥을 주겠는가. 통강냉이 몇 알에 맨물이 다고 그것조차 반 그릇이 고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살고, 다시는 조선에 가고 싶지 않다. 중국에서 공부도 더 하고 힘도 더 키워 역세계 자라고 싶다.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잠자면 키가 더 자랄 것이다(함경남도 함흥시 18세 남자 청소년, 좋은벗들, 1999a).

국내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신체적 왜소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있어왔다. 예로써, 이기영(2002)은 그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발육부진과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남한 또래에 비해 신체적으로 왜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윤영(2006)은

<표 II-6>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HAZ*

연령(세)	남아			여아		
	N	HAZ	SD	N	HAZ	SD
0-5	2	-.43	1.35	1	-.23	.
5-10	19	-1.02	.92	22	-.75	.99
10-12.5	22	-1.27	.96	17	-1.24	1.50
12.5-15	24	-1.86	1.19	28	-1.46	1.36
15-17.5	38	-1.65	1.39	31	-1.35	1.14
17.5-20	47	-1.32	1.00	32	-1.25	.94

* HAZ: Height-for-Age Z-score: 나이 대비 신장 표준편차 점수

출처: 박순영(2006). 성장발육-생물인류학적 연구.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 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43-259). 서울:한양대학교출판부.

200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북한이탈 아동들의 신장을 같은 연령에 속하는 남한아동의 평균신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소 3cm에서 최대 30cm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박순영(2006) 역시 1999년대 후반부터 2003년 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신장과 남한의 아동 및 청소년의 표준신장을 비교해 본 결과 십대 청소년들에게서 남북한의 차이가 가장 컸음을 보고하였다(<표 II-6>). 일반적으로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에 비해 더 빨리 사춘기에 이르는 것으로 인한 성장속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은 남한 청소년의 평균 신장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직접 연구한 경우도 이들의 왜소한 체구와 열악한 영양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01년에 걸쳐 북한이탈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윤여상, 2003), 조사대상자 중 19명(47.5%)이 탈북 동기에 대해 배고픔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사회의 식량사정이 썩 좋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그 당시 이들의 영양상태도 열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으로 건너온 후에도 이들의 건

강 및 영양상태는 열악한 음식과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장 발육 저하로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약 43%인 17명은 각종 신체장애와 질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이 호소하는 질병으로는 주로 위장병, 설사, 피부병, 동상, 처벌로 인한 후유증 등이었다. 또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특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국내외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였다.

연변에 거주하는 4세에서 19세까지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 436명(남 306명, 여 1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남수, 강은영, 이종미, 이명근, 2000)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신장, 체중, 가슴둘레와 같은 성장 발육상태는 98년 한국 표준치의 70~90%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11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 상태는 표준치에 비해 특히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내용 조사에 따르면, 식품의 종류는 식물성 식품에 편중되었으며, 섭취한 식품의 가짓수는 평균 2.8개에 불과하였다. 탈북 이전 하루 3끼를 모두 섭취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34.6%에 불과하여 에너지, 단백질, 미량 영양소가 극심하게 부족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대상자의 9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영양결핍 임상증세를, 전체의 68.6%는 2~4가지의 결핍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5가지 이상의 결핍증을 지니고 있는 아동도 15.1%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영양상태 및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연구의 자료가 1999년 여름에서 가을사이에 수집된 것이고 현재의 상황은 이 당시에 비해 많이 호전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결과를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제3국의 체류 기간에도 도피 등으로 인해 균형있는 영양섭취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들의 신체 및 영양상태는 여전히 열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예영(2005)의 연구가 있다. 2005년에 이루어진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한 만 9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이들의 신장과 체중은 남한의 표준치에 못 미쳤으며, 특히 이들 중 약 30%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장발달 수준은 심각한 저하상태로 남한 표준치의 하위 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의 경우 남한 표준치의 하위 3%에 해당하는 이들은 모두 12명으로 약 28%였다.

한편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최창민, 정우경, 강철인, 김도형, 김형근, 허상택, 김희진, 2006 재인용) 2003년 북한의 결핵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184명, 도말양성 신환자는 77명으로 전 세계 평균치인 140명과 62명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북한 내에서 결핵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영양결핍으로 인해 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포함, 북한이탈 주민들의 건강상태도 북한 내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탈 주민들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도피생활과 신체적 및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환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인 이들이 체류국의 의료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나 연구조차도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이들의 건강상태는 실로 열악하다 할 수 있다.

3) 정신건강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탈북 과정 및 제3국 체류 상황에서 겪은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syptoms; PTSD)이다. PTSD는 “충격적인 사건(외상)에 노출된 이후 나타나는 전반적인 불안장애(Dumas & Nilsen, 2003)”를 의미한다. 충격적인 사건에는 학대, 자연재해나 전쟁,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해진 심각한 상처나 폭력에 의한 죽음 등을 포함한다. <표 II-7>은 DSM-IV-TR에서 제시하고 있는 PTSD에 대한 진단적 준거이다. DSM-IV-TR에 따르면, PTSD의 임상적인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표 II-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DSM-IV-TR 진단적 준거

A. 다음의 두 가지가 나타날 경우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으로 반복 경험된다.
(1) 실제 죽음이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처, 또는 자기나 타인의 신체적 보전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게 된 사람	(1) 심상, 사고, 또는 지각을 포함하여 순환적이고 집중적으로 사건이 회상된다(어린 아이들의 경우 외상의 주제나 국면들이 반복적인 놀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2) 개인의 반응은 강력한 두려움, 무기력, 또는 혐오스러움을 포함한다(어린이의 경우 이것이 비조직화되거나 동요된 행동에 의해 대체되어 표현될 수 있다).	(2)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통스러운 꿈을 꾀다(어린이의 경우 내용도 알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B. 외상적 사건은 다음의 방식들 가운데 한 가지(이상)로 지속적	(3) 외상적 사건이 재현되는 듯한 행동 또는 느낌(깨어있을 때 발생하거나 흥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경험을 되살리는 감각, 환상, 망상, 그리고 플래쉬백 삽화를 포함)

을 갖는다(어린 아이들의 경우, 외상의 구체적인 재상영이 발생할 수 있다).	수 없음)을 갖는다.
(4) 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화하거나 모방하는 내·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느껴지는 강력한 심리적 고통	(7) 앞이 차단된 미래에 대한 시각(직업, 결혼, 아이,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가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갖는다.
(5) 외상적 사건의 어떤 측면을 상징화하거나 모방하는 내·외적 단서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	D. 다음의 두 가지(이상)에 의해 지칭되듯이, 증가된 각성의 지속적인 증상(외상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경험한다.
C. 다음의 세 가지(또는 이상)에 의해 나타나듯이, 외상과 관련된 자극(외상 이전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것)의 지속적인 회피와 일반적인 반응성의 무감각을 경험한다.	(1) 수면에 들거나 수면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1) 외상과 관련된 사고, 느낌 또는 대화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2) 성미가 급하거나 분노가 폭발한다.
(2) 외상을 회상시키는 활동, 장소, 또는 사람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3) 주의집중이 어렵다.
(3) 외상의 중요한 측면을 재생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보인다.	(4) 과도한 경계심을 품는다.
(4)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획기적인 감소를 보인다.	(5) 지나치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5) 타인으로부터 분리 또는 소원함의 감각을 갖는다.	E. 혼란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준거 B, C, D의 증상).
(6) 제한된 범위의 감정(예를 들어,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F. 혼란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디스트레스나 사회적, 직업적, 그 밖의 기능화에 중요한 분야의 손상을 유발한다.

Specify if:

Acute(급성): 만약 증상이 3개월 미만 지속될 경우

Chronic(임상):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Specify if:

With Delayed Onset: 만약 증상이 스트레스 인자 이후 최소한 6개월 이후 시작될 때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rth Edition, Text Revision(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3가지 증상들은 바로 주입적인 증상, 회피증상, 과잉각성이다(Dumas & Nilsen, 2003). 주입적인 증상은 PTSD의 핵심적인 증상으로 심상, 사고, 지각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주입적인 고통의 회상을 의미한다. 외상에 대해 반복적인 악몽을 꾸는 것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이다. 회피증상은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나 정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증상이다. 회피증상의 일종인 기억의 제거는 나이가 어린 아동들보다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서 빈번히 나타난다. 과잉각성은 수면장애, 과민성, 제한된 관심과 주의집중, 위협에 대한 지나친 경계, 그리고 비정상적인 놀람 반응 등을 포함한다.

물론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PTSD가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외상 경험 및 증상들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윤여상(2003)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 이들은 모두 7명(17.5%)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 당시의 심정에 대해 ‘죽으러 가는 느낌이었다’거나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중국 공안의 체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으로 송환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혹하여 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밤샘조사, 집단구타, 몽둥이와 총 머리를 이용한 구타, 혹한에 옷 벗겨 밤새 세워 두기 등을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두만강과 강을 떠내려가는 시체를 보는 꿈을 꾸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난다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증언(소중섭, 2007)은 PTSD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이렇듯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극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해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윤인진, 2000)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김윤영, 2006), 불안감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지 못하는 경향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기영, 2002). 또한 이들은 체포와 북으로의 송환에 대한 불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체포에 대한 불안에 인신매매의 불안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예: 윤인진, 2000; 이기영, 2002; 장창호, 2001; 전우택, 2000; 조한범 외, 2003). 여자 청소년들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이후의 절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외상경험을 측정한 연구(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희우, 2004)에서는 응답자의 약 79%가 북한에서나 탈북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외상척도를 개발하여 95명의 국내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PTSD정도를 측정한 연구(강성록, 2003)에서도 외상척도에 따라 PTSD를 보인 사람은 전체 95명 중 26명으로 약 27%의 유병률을 보였는데 외상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PTSD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경험을 연구한 두 연구에서 모두 외상 경험이 많거나 PTSD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수준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 이는 외상경험이 PTSD 뿐 아니라 또 다른 정신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2006)의 연구에서도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무응답자 18명 포함) 중 약 72%가 한 가지 이상의 외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상경험은 이들의 남한생활에서 보이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북한 생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의 경험이 이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인영(2001)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약 30%는 한국 사회로 편입되기 전부터 탈북과정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겪은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상적 우울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우울 증상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남한사회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덧붙여지면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탈 아동들의 우울 정도에 관한 연구(김예영, 2005)에서는 연구대상자였던 하나원 북한이탈 아동들의 우울정도의 평균은 14.30(표준편차

=4.64)점으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평균 우울 정도(약 12.36~13.5점)보다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울의 정도는 제3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3국의 장기체류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TSD 외에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는 불안과 공격성을 꼽을 수 있다(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가르쳤던 남한 교사들도 일반적으로 그들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진경 외, 2004). 이들이 보이는 불안과 공격성은 한편으로는 PTSD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경향은 북한 및 제3국에서 극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인해 체포 및 복송,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표출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에서 좌절과 극도의 긴장을 경험한 것이 청소년기의 불안정과 겹쳐지면서 공격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정진경 외, 2004; 최명선 외, 2006).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히 이들이 겪은 탈북 과정 및 제3국에서의 극한 경험에 의해 나타난 개인 심리적 특성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정향진, 2005; 이수정, 2005)도 있다. 이들의 공격적 행동은 그보다는 북한사회가 가지는 문화심리적인 특성에 의한, 감정의 심한 기복과 극적인 감정 표현의 한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사람 특유의 ‘직선적인’ 감정표현과 말보다 감정이 앞선 행동을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공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수정(2005)의 논문에서 나타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행동 중 패싸움을 하고 동료들을 ‘패 주는’ 행동이나 ‘교사들 컴퓨터를 다 때려 부수는’ 행동은 남한사회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공격행동으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남한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고쳐야 하는 행동이기도 하다.

4) 가족의 해체

탈북과정에서의 또는 그 이전 북한생활에서의 가족해체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임채완(2001)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를 잃거나 가족 해체로 북한 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을 해본 아동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조사된 탈북 아동의 86% 정도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 수 없는 아이들이며, 도리어 아동 자신이 중국에서 구걸하여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상(2003)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 40명 중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9명(47.5%)이었으며, 한쪽 부모가 없는 경우가 4명(10%)인 반면 양쪽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2명(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부모가 없는 고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에 있을 때조차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해체가 이미 탈북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탈북과정이나 제3국 체류 과정에서도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 중 일부와 함께, 또는 혼자서 북한을 떠나오기도 하고 제3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가족과 헤어지는 상황이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이다(최명선 외, 2006). 다시 윤여상(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북한 탈출 당시 동행자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와 함께 했다는 응답자는 12명(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혼자서’가 8명(20%), ‘친지와 함께’가 6명(15%), ‘친구와 함께’가 5명(12.5%), ‘형제와 함께’가 4명(10%), 그리고 기타 (5%)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북한이탈 당시 부모와 동행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백혜정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200명(무응답자 5명 포함) 중 71명(약 36%)이 가족 중 일부만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 없이 혼자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4명(약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탈북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가족해체를 경험하였음을 시사한다.

“나는 18세 난 소년이다. 나는 지금 연변 유슈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 나는 원래 조선에서 살았다.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않고 계속 흉년이 지고 살아가기 힘들게 되자 나의 부모들은 우리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리하여 나와 동생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기도 하고 도둑질을 해 먹기도 했다. 밤이 되면 역전의 으스스한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마를 쪼다가 깨어나서는 아침거리를 찾으러 거리를 다니면서 유랑걸식을 해왔다. 그러던 끝에 동생이 파라티푸스에 걸려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함경북도 어랑군 출신 18세 남자청소년, 좋은벗들, 1999a)

“나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신염을 앓고 있다. 나의 동생은 영양실조이다. 나는 집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기에 너무 배가 고파서 집을 떨쳐 나와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을 좀 얻으면 집에 어머니와 동생에게 갖다 주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더 중하여지니 나는 중국에서 약과 식량을 얻어가려고, 1999년 2월에 동무 4명과 함께 강을 건너왔다.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잠잘 곳을 찾기 곤란하여 벼짚 무더미에서 잘 때가 많았다.” (16세 남자청소년, 좋은벗들, 1999a)

이상과 같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술은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족, 특히 부모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비단 북한이탈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김은정, 백혜정, 2007). 그러나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낯선 땅에서의

도피생활을 비롯, 그들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일반청소년들이나 성인이 겪는 어려움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해체 문제는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탈북으로 인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중의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이다(이기영, 2002; 이장호, 1997). 베트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Matsuoka & Ryujin, 1989-1990)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이민 오지 못한 경우, 베트남 이민자들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도 자신의 탈북이 북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죄책감이 베트남 이민자들의 그것에 못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국가보위부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비밀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탈북자 은신처와 동료 탈북자, 그리고 민간 활동가들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윤여상, 2003). 이러한 강요에 의한 신고활동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죄책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부모와 함께 탈북했다고 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 부모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위협과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 또한 제3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식이나 애정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최명선 외, 2006). 따라서 심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생계곤란을 겪다 못해 자신의 자녀들을 팔아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여상, 2003). 먹고 살 길이 없어 중국 남방의 돈 많은 사람 집에 아이를 보내려다 사돈의 꾸지람을 듣고 포기한 탈북여성의 경우나 5세, 8세 11세의 아이 셋을 모두 한족과 조선족의 집으로 각각 보낸 탈북여성의 경우(좋은 벗들, 1999a)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거나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탈북과정에서 한 부모 가정, 부모의 재혼 등이 발생하면서 부모로부터의 방임과 유기를 경험하기도 한다(최명선 외, 2006).

이렇듯 가족에 대한 죄책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방임과 낮은 책임감에 따른 불안정한 애착 형성, 도피생활로 인한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은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단지 청소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 지속될 수도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5) 교육권의 박탈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기회를 상실한 것은 탈북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남북문화교육통합원(2006)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정상적으로 학교에 오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자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장기화된 식량난으로 인해 학생들은 식량을 구하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대량 장기결석으로 이어졌다. 또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식량배급 중단으로 인해 번갈아 결근을 하며 식량을 구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남아있는 교사는 자신의 담당 과목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까지 가르쳐야 했으며, 심지어는 학생들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교사를 찾으러 다니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청년동맹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의 식량을 마련하거나 운동장을 갈아서 밥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이 등교한 경우에도, 허기와 교과서 및 학용품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여상(2003) 역시 북한 정규교육의 붕괴를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문제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 1996~98년 당시 북한의 인민학

교 등교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규교육기회의 상실은 제3국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탈북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중국공안의 단속과 체포 위협,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떠돌이 생활 등 불안정한 생활환경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교육기회의 상실로 인해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은신처에서 생활하는 취학 연령의 청소년 중 문자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비율이 10~20%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행히 은신처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호구(신분증)가 없어 정규학교에 등록하기도 어렵거니와 비밀고아원이나 은신처에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지원하는 비밀고아원이나 은신처 중에는 물론 이들을 위해 남한의 교과서와 동화책을 마련해 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만을 읽도록 하는 곳들도 여러 곳이다(Chung, 2003). 이런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신앙관련 활동만 할 뿐이며 그 곳을 나와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I-8>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학력

학력	빈도(명)	비율(%)
무학	99	24.0
인민학교 중퇴	81	19.6
인민학교 졸업	12	2.9
고등중학교 중퇴	186	45.0
고등중학교 졸업	33	8.0
대학 중퇴	2	0.5
결측치	2	
합계	415	100.0

출처: 남북문화교육통합원(2006).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더불어 무지개 남북문화교육통합원(p. 59).

<표 II-8>은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24%에 해당하는 이들이 무학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학력결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교육,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을 강조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에도 반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뜩이나 교육열이 높은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는 이러한 학력결손이 학력저하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김미숙, 2004)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6) 노동력 착취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체류초기에는 친척이나 친지 등에 의탁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노동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힘든 직업에 종사하게 되며, 더 나아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벚들(1999b)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약 40.9%는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을 뿐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인 평균 임금의 30~50%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적인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고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고발조치당하는 수가 있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는 경우에는 임금착취 뿐 아니라 지역 내 절도사건 등이 발생하면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규, 2004). 아래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식당에 일을 하러 가서) 그러니까 일단 말은 했죠. 조선사람이라구. 그래 쓰겠다 했죠. 근데 한 달이 되구 두 달이 되구 돈을 달라구 가겠다구. 돈을 안줍디다.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돈을 달라구 말을 못하죠. 제 신분이 여기 신분이 아니구 다른 민족 신분이니 혹시 이 사람이 나를 공안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신고하면) 거저 잡혀가는 것이니까 말을 못하죠. 한 2년 돈을 못 받구 때때로는 (한 달에) 50원, 60원씩(한국돈 10,000원 정도) 주죠.(김태현, 노치영(2003b))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노동환경은 비단 성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특히 10대 후반 이후의 남자 청소년들은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7) 여성의 인신매매

좋은 벗들의 실태조사(좋은 벗들, 1999b)에 따르면 1999년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5.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북한이탈 주민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남성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도시의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인해 처녀가 부족한 농촌 지역이나 도시의 유흥가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김인성, 2005). 북한이탈 여성들은 중국 내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거나 각종 집안일, 식당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는 조사된 북한이탈 여성의 50% 이상이 인신매매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좋은 벗들, 1999b).

한편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2000)의 연구에서는 탈북 후 붙잡힌 경험이 있는 이들(전체의 23.7%)중 중국인에게 잡혀 중국인 남자에게 팔려가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8%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이들이 바로 중

국 내 북한이탈 여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신매매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조사의 무응답 수치가 27.8%로 나타난 것은 수치상 등으로 인해 인신매매 경험을 숨기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조사된 수치보다 높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조직은 탈북과정에도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채완, 20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북한이탈 여성들은 아예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되어 국경을 넘어온 후 미리 연계된 중국인에게 넘겨지는 경우도 있었고, 조·중 국경 근처에서 지키고 있던 인신매매꾼들에게 붙잡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내륙도시까지 무사히 들어왔으나 목을 곳이 없어 거리를 서성이다가 인신매매꾼들에게 붙잡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인신매매꾼들은 그 당시 북한이탈 여성의 결혼여부, 즉 이들이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상관없이 결혼이라는 형태를 통해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매를 통해 결혼하게 된 북한이탈 여성들은 중국남편의 보살핌을 받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문숙재 외, 2000) 감금과 폭행,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질병, 노동착취, 반복되는 매매 등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았다(김인성, 2005). 결혼생활에 이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로는 첫째, 이들의 결혼이 중국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그들의 결혼대상자(한족 남성)중 대다수가 중국인의 평균적인 삶을 살기 보다는 나이 많은 홀아비, 신체불구자, 알콜중독자, 성격장애자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최하위층인 사람들로 북한이탈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대접하기보다는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임채완, 2001).

인신매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단 성인여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여상(2003)에 따르면 북한이탈 여성들이 경험하는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는 어린 소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 없이 혼자 중국에 들어온 북한이탈 소녀들의 경우에

는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신만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들은 생존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유흥가의 접대부나 성노리게 등으로 전락하여 수치심과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상(2003)의 연구에 소개된 15세의 탈북 소녀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조선족에 의해 인근의 50대 후반 한족 홀아비에게 인계되어 그와 동거하다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결국 생계를 위하여 도심지역 유흥가로 또다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13세에 국경을 넘어 온 한 소녀가 마흔이 다 된 남자에게 팔려 16세에 두 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다(남북문화교육통합원, 2006).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신매매의 현장에 청소년까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 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실로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나이 어린 소년들의 경우는 신체적 미성숙 및 성지식 부족으로 임신과 낙태를 거듭하고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이들의 특성은 크게 정체성의 위기,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의 악화, 정신건강의 악화, 가족의 해체, 교육권의 박탈,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과 같은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이후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생활을 택하거나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모두에서, 심지어는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에라도, 이러한 특성들은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문제들이 가지는 심각성의 정도가 더 높다 할 것이다.

3.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

1) 한국의 정책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와 정부의 입장

2007년 4월, 10대 북한이탈 청소년 3명이 중국을 거쳐 2천마일 이상 이동해 라오스에 도착했지만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가 있었다(연합뉴스, 2007. 4. 19). 다행히 이 사건은 성공적인 교섭과정을 거쳐 당사자 3명이 무사히 국내로 입국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⁴⁾ 단적인 예로 북한과 접경해 있으면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그 수가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30만 명 정도로까지 추정되고 있다(김인성, 2005).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숫자까지 고려하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불거진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체류국가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예측이나 명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현재 이들의 문제는 국가별 정치적 입장과 명분 속에서 특정 맥락의 중요성이나 이슈화의 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4)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구소련 지역, 동남아 지역 등 한인사회가 존재하는 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대만, 호주,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체류지역이라기보다는 한국행 또는 최종 희망지역을 가기 위한 경유지라고 할 수 있다(북한인권백서, 2007).

점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른바 ‘조용한 해결’이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 정부의 원칙이라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박해 위험 등을 고려하여 중국 측에 체류 목인이나 송환 자체 등과 같은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이나 중국 측의 입장을 염두에 두는 비공식적이고 조용한 해결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전병범, 2004).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공개된 장에서 논의하면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⁵⁾ 또한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첨예한 외교적 안건으로 공식화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차원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제기하고 관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북한의 정치적 운명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을 감안할 때, 이 문제가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정영선, 2000a). 이처럼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반영하듯,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현지의 개별적 사건으로만 축소시키려는 것이 남북 당사자는 물론 관련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이다. 결국 소극적 대처 내지 방치정책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임정규, 2004).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재외공관에서의 귀순, 망명요청

5) 이는 2004년 현재 통일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내외신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우리사회의 탈북자 지원 단체가 제3국을 유랑하는 탈북자의 어려움을 인도적 견지에서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곽해룡, 2005b 재인용).”

자 등에 관한 처리지침’에 의해 국내입국을 사례별로 선별 처리하여 왔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제기된 이래 우리 정부의 입장이 표명된 몇몇 사례를 보면, 우선 1999년 3월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북한당국이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과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정부는 한국행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2000년 3월 제56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국제사회가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입장과는 별개로 실제 한국 정부는 문제를 공식화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영선, 2000a).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황과 문제점⁶⁾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정부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의 문제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대상이 보다 한정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이에 대처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대응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사 자료는 철저하게 한국입국자들로 그 대상을 한정시켜왔다. 제3국을 떠돌아다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⁷⁾ 민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전무

6)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7)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철저히 입국자에 한정되어 있고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때문에 해외공관, 특히 중국에 있는 대사관 등에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 실정이다(김인성, 2005). 이런 가운데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조사나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탈북이라는 현상 자체가 비교적 최근의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 및 관련된 정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인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은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라는 청소년 고유의 취약성에도 북한이탈주민 일반이 갖는 불안 요인까지 더해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예컨대 이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구걸 등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⁸⁾ 이들 중 많은 수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들에게 의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 힘들며 결과적으로 거리와 시장을 떠돌게 된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중 일부는 그나마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노동력이 없고 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아니면 거리를 떠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금순, 2005b).

식량 위기가 있었던 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10대 이하를 합친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은 <표 II-9>와 같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좋은벗들, 1999b). 물론 탈북의 성격이 초기 식량 위기의 탈출로부터 점차 보다 나

대부분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다(곽해룡, 2002).

- 8) 임채완, 최영관(2001)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33%가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24%가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나혜, 2005). 이러한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청소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지만, 경제력과 자구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의 경우 정처 없이 유랑, 결식하는 비율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9>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비율(1998-1999)

연령대	수 (명)	백분율 (%)
10대 이하	770	2.7%
20대	8,273	29.1%
30대	8,851	31.1%
40대	6,756	23.7%
50대	2,531	8.9%
60대 이상	735	2.6%
무응답	556	2.0%
합계	28,471	100.0%

출처: 좋은벗들,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현지조사결과”(1998.11-1999.4)

은 삶의 모색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임정규, 2004; 윤여상, 2004; 조천연, 2002), 이러한 비율이 현재 얼마나 유효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2005년 말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7천여 명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약 30%라는 청소년 비율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백혜정 외, 2006). 또한 탈북의 단위가 점차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볼 때, 최소한 이러한 비율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비율이 이처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3 가량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일반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절실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특화된 지원이 전혀 없음을 상기할 때,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의 영역별 지원정책

①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의 법적 지위문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 문제의 처리에 있어 가장 많이 논란되는 쟁점은 이들의 ‘난민(refugees)’ 지위 인정 여부이다. 난민 문제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⁹⁾ 유사 이래 세계 각처에서 난민의 유입은 인접 국가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국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정영선, 2000a).

이에 국제적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1951년 채택되어 1954년 발효된 바 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난민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서는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제 난민문제를 처리해오고 있다. UNHCR은 상기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 금지, 비호,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난민의 강제 송환 금지이다.

상기의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원칙에 의거할 때 과연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 근거

9) 대표적으로 1917년 혁명 후 중국으로 탈출한 러시아인, 1930년 나치처형으로부터 탈출한 유대인, 2차대전이후의 유럽난민들, 1950년 소련 침공으로부터 탈출한 헝가리 난민, 1970년대의 칠레와 아르헨티나인들, 1980년대 수단에서의 이디오피아인과 에리트레아인, 199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이라크인 등이 국제난민의 사례를 보여준다(곽해룡, 2002)

10) 이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나 집단의 구성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및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규정된다(전병범, 2004).

한 불법 월경자로 간주할 것이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요쟁점이 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설혹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범위에 있어 제각기 입장이 다르다.¹¹⁾ 우선 UNHCR은 1999년 10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중 “소수의 난민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려 그룹’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 제3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예외 없이 “난민이 아니라 식량과 돈을 구하기 위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온 불법 체류자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정주신, 2006).

전통적으로 중국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북한주민들을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 1998년 적용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적극적인 송환요구가 없을 경우,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소극적인 자세로 묵인 또는 방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 이들의 문제가 한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금순, 2005b).

중국이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연쇄 유입,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이 고려되었

11)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인정 주장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형법 제62조에 의거 정치적 박해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명백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6년 말 이후 북한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여 왔고, 북한이탈주민 송환과정상 비인도적 처우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엄격한 의미의 난민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이금순, 2005b). 또한 각국의 입장은 뒤에 서술되는 관련국들의 정책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외국 공관 진입이 잇따르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색출하고, 나아가 막후 지원 단체까지 검색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불인정하는 태도는 중국과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안고 있는 제3국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주창하기보다는 북한과의 관계와 중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조용한 외교의 틀 속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임정규, 2004). 막상 난민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계기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이 유발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역량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이들을 수용하는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4년 말부터 한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 및 한국행을 알선하는 이른바 ‘탈북 브로커’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표방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 차원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역학 차원까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는 단순히 규정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 복잡 미묘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각국의 이해가 결부된 고도의 맥락적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식화하고 외교적 현안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정책이나 지원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 지위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쟁점은 차치하더라도 청소년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의 요구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주요한 당면 과제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문제에 관한 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은 이중적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광의의 난민 개념을 주장하지만 난민 지위의 공식적 획득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6자회담의 타결이라는 호재도 제공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정부의 전향적인 해법 모색과 국제적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시피난민’ 개념의 적용은 현재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한다(이금순, 2005b; 정영선, 2000a; 곽해룡, 2002). 일시피난민은 관련당사국의 합의하에, 일반화된 갈등, 분쟁 또는 인권남용지역을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일시보호제(Temporary Protection)’로부터 연원한 개념이다. 일시보호 차원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난민보호상의 의무인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 권리(교육, 복지, 노동권)에 대해 일정한 유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¹²⁾

비슷한 맥락에서 ‘좋은벗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정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동북3성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임시거류증’을 부여하도록 설득과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김수암, 2007). 현재로서는 중국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중국이 원하는 경제적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의 합의를 통해 계속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곽해룡, 2002).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 이들 조치를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성인 북한이탈주민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조건상 절대 취약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이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가

12) 물론 일시보호제에 입각한 일시피난민의 개념 적용은 약 6개월 정도의 보호를 허용하는 잠정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시보호제는 입국, 강제추방금지, 인도적 대우, 위협 소멸 후 자발적 귀환을 원칙으로 하며, 대량 피난민의 유입에 대해 단기간에 사용하는 응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다(곽해룡, 2002).

장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미성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 등 제3국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협상해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②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의 인권문제

탈북 이유에 상관없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상상하기 힘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이다. 그나마 현지에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으나,¹³⁾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 남성들의 경우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극도의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일반인들이 꺼리는 농사일, 인분 수레 끌기, 가축 돌보기, 벌목공, 채석장 등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이 그나마 신분 노출이 적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남성 노동자들이 받는 일의 대가는 일당 6.3위안(월급 220위안)으로 중국인 통상 임금의 30~50%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나마 공안이 탐색을 온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쫓아내는 일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 내 절도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의심을 받는 등 각종 인권 유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폭력 조직에 가담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다시 이들의 지위와 인권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전병범, 2004).

13) 북한이탈주민과 인척 관계에 있는 조선족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에 의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처였다. 또한 인척관계를 떠나 조선족들은 초기에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자 역할을 해오던 조선족들 역시 이들로 인한 범죄와 사회문제가 불거지자 점차 이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경제의 불황으로 조선족 경제가 타격을 받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저히 줄이거나 단절하기 시작하였다(임정규, 2004). 현재 중국 당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신고하면 500위안을 포상금으로 주며, 반대로 이들을 집안으로 들여 보호하면 1000위안 이상의 벌금과 징역을 부과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형벌을 강화하고 있다(정주신, 2006).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이다(백영옥, 2002). 이들은 주로 인신매매를 거쳐 도시의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농촌 지역에서 노총각이나 홀아비들과 비합법적인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인성, 2005). 1999년 ‘좋은벗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5.5%, 특히 연변 등 동북3성 지역은 9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범, 2004).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이유는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식량을 구하는 책임이 지워져 있는데다 인식매매조직이 탈북 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문숙재 외, 2000).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 혹은 생존을 위한 소개 결혼을 통해 근근이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중국에서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북한이탈 여성들은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합법적인 호구를 취득할 수 없으며, ‘계획생육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공안을 가장한 단속꾼들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북한이탈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부인과 질환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전병범, 2004).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제3국에서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불법체류자 상태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임채완, 2001). 또한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일부가 식량난으로 사망한 위기 상황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자신들도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와 질병 감염, 탈출 과정에서 상해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연변 자치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6%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범, 2004). 이러한 상황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한 대로 성인의 경우도 그렇거니와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비참함과 인권 유린의 실상은 훨씬 열악하다. 보호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최소한의 자구책도 갖지 못한 채 인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

문이다. 실제로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체포와 송환에 대한 불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여기에 인신매매의 불안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윤인진, 2000; 백영옥, 2002; 이기영, 2002). 이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극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윤인진, 2000),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김윤영, 2006)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적령기의 교육 기회를 박탈당함은 물론 극한 공포감이 일상화되어 성장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상 제반 인권 유린의 경험은 설혹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불안감으로 인해 타인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지 못하는 후유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이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그 취약성과 파괴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선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주권적 대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특별히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보다 강조하여 관련 당사국의 긴밀한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 급선무이다. 자구 능력이 부재한 이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비인간적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루 빨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내 외에 호소함으로써 해당 관련국들이 최소한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온 양면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인과 달리 자구적인 노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국과의 협의 하에 현지에 ‘북한이탈 청소년 정착촌’과 같은 일정한 거주공간을 만드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문남철, 2004). 공식적인 협조가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당사국의 협조와 양해를 얻어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 민간단체의 지원현황과 과제

앞서 확인했듯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제정치의 조건상 한국 정부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 문제에 대해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역할을 공식적 정책 차원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식, 비공식의 양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역할의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먼저 국제기구로서는 UN이 대표적이데, 특히 그 산하의 인권위원회, 인권고등판무관(UHCHR) 등이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직들이다. 이들 조직들은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거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서는 UNHCR과 UN총회, 안전보장이사회, UNHCR 등의 개입을 통해 해당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UN 인권위원회와 UNHCR 등은 90년대 초·중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제기된 이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 확인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 및 압력 등을 행사해온 바 있다. 이들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 난민협약’ 서명국인 중국이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과 북한정부에 대해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장을 요구할 것, 그리고 중국·북한 접경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소에 대해 UNHCR과 독립적인 옵서버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정영선, 2002a).

하지만 문제는 UNHCR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도 해당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 있다.¹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14) 대표적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판정은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와 UNHCR이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체류국이 난민 협약상의 정치적 난민 해당 여부를 우선 판정한다. 이 점에서 UNHCR의 지위와 입장은 체류국에 비해 부차적이며, 그 결과 현실적인 정책 집행의 한계를 가질 수

문제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그 어떤 주체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UN활동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NGO의 자유로운 활동은 공식적인 유엔인권위원회나 국제기구, 또는 특정 국가가 타국의 인권문제를 비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권개선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차원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역시 NGO를 주축으로 한 국내외의 민간단체들이다.¹⁵⁾

UN의 협의자격을 지닌 국제 인권 NGO들 가운데에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 국제인권연맹, 아시아워치, 국제인권협회 등 국가별, 지역별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 NGO들이 있다. 또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집중해서는 일본의 ‘북한 민중구조 긴급행동 네트워크’, ‘북조선 구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북한난민구원기금’,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세계난민과 인권재단’ 및 ‘자비재단(Mercy Corp.)’, 벨기에의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곽해룡, 2002). 대표적으로 AI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과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을 위한 긴급 구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강제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의 신원과 행방, 북한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공개할 것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구금, 사형 등의 인권침해를 가하지 말 것, 국제인권감시단의 접근을 통해 북한 내 인권상황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정영선, 2000a). AI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는 UNHCR의 난민보호활동을 비판하면서 UNHCR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문제를

밖에 없다(전병범, 2004). 실제로 1999년 5월 UNHCR의 조사단이 중국 내 불법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난민의 존재 가능성을 밝히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해 경고하고 이들에 대한 UNHCR의 공식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금순, 2005b)

- 15) UN의 협의자격을 갖춘 NGO 수는 1995년 기준 1000여개가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권문제와 관련된 NGO만도 7~8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Brett, 1995: 97, 정영선, 2000a 재인용).

제기해오고 있으나, 집단보다는 주로 구체적인 특정 사례에 대해 탄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금순, 2005b).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권관련 NGO들의 지역적 기반, 이념적 성향과 조직 및 활동의 성격 등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접근 및 여론조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최의철, 2003).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국내 NG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NGO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정영선, 2000a).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 국내외 NGO들이 가장 먼저 주창하고 있는 내용은 이들의 난민 지위 인정 문제이다. NGO들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는 중국이나 기타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해 비판과 함께 인도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정부, 반체제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허가 없이 국외 탈출을 시도한 것이 체제에 대한 저항적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면, 일차적인 탈출동기가 빈곤 내지는 기아라는 경제적 요인일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치적 박해 및 처벌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관례상 난민에 해당하며, 당연히 강제송환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곽해룡, 2005). 특히 중국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으로 온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일지라도 일단 중국에 오게 되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백영옥, 2002).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NGO 중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는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사)좋은 벗들’, ‘탈북 난민 보호 유엔 청원 운동’, ‘한국 기독교 연합회’, ‘생명줄 운동’, ‘자유민주민족회의’,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두리하나선교회’ 등을 들 수 있다(전병범, 2004; 곽해룡, 2002). 한국 정부가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아무런 공식

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활동을 펼쳐 왔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사업을 병행하면서, 제3국 채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은신처 제공은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을 추진하는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중국 내 조선족들은 북한 식량지원 활동에 우호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보호를 제공해 왔는데, NGO 등 민간단체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우회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선족 가정이나 교회를 이들 민간단체들이 후원함으로써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생명줄 운동’은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고아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이탈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의식주 제공, 중국어 교육, 성경공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경지대에서 조선족 신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의약품, 쌀 등을 지급하며, 은신처를 제공하기 힘든 성인 북한이탈주민이 교회를 찾아올 경우 1인당 약 5일분의 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좋은 벗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생필품과 현금을 지원하고, 국경지역에서 부정기적으로 의료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이금순, 2005b).

물론 이러한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이 특별히 북한이탈 청소년을 겨냥하거나 그들을 고려하여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일반의 생존권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족하나마 청소년 관련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탈북 이후 북한이탈여성과 중국 현지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인데, ‘좋은 벗들’은 현재 이들의 수가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제적 빈곤과 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해 취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통일연구원, 2006a). 현재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이들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과 중국 출생 아동들에게 임시 거처나 최소

한의 교육기회 등을 제공해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며 산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조하여, 대상자들에게 체감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 또한 없지 않다. 먼저 국내 NGO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단체이거나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단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연중, 2002). 종교단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을 조직의 목표로 보지 않고 종교적 인도주의에 바탕을 두고 선교라는 목표가 선행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는 부정적 효과들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곽해룡, 2002).

예컨대 기독교 내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활동을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첫째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 처소(지하)교회와 신자들의 가정에 단기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고, 식량과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여 안전한 내지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교적 차원의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기독교 신자이거나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하여 선교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다(이금순, 2005b).

이들 종교단체들은 종교적 인도주의에 의해 그 어떤 단체보다도 활발하게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이들은 중국 동북3성에 미션홈(처소교회, 가정교회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고아원이나 애육원을 개설하여 중국인 또는 조선족 고아나 사생아 외에 비공식적으로 북한이탈 아동들을 보호해왔다(이금

순, 2005b). 하지만 위의 두 번째 경우에서 보듯이 종교적 선교의 의미가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될 때 제3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문제 처리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의 종교적 성향은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해당 국가와의 마찰을 야기할 여지가 있고, 그것은 향후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협의와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종교활동 및 선교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까닭에 이러한 우려가 결코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한계는 이들 단체가 재정적으로나 활동 역량으로나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인권 보호 측면보다는 개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난점이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두 경우 모두 이들 민간단체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최대 체류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자유로이 활동하거나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근원적인 활동의 제약을 안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전병범, 2004).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특성이나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한 분란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협조적이었던 국가들까지 정책을 변경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럴 경우 북한이탈주민 일반은 물론 가장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까지도 해결이 난망해질 수 있다.

상기의 난관과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향후 민간단체의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은 국제적 NGO, 특별히 중국 측 NGO(중국의 적십자사, 조선족 기독교 단체 등)와 공조하여 그들을 주체로 하고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막후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곽해룡, 2002).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중 종교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은 자칫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기능적, 역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 시점

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내지 긴밀한 공조는 불가피하면서도 절실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제를 의제로 하는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외교담당자,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민간의 NGO전문가 등이 고루 포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화 및 정례화를 통해 정부는 최근의 정세와 정부의 대북 정책 현황,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각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요청사항을 청취 내지 고려한 위에서 실효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 등과 활발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정부와 교환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단체 공히 정책과 활동의 유기성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¹⁶⁾

특별히 정부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해당 청소년들의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산 경험과 활동 보고에는 이미 적지 않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과 그들의 목소리가 축적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정책 역시 중요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정착촌 내지 보호시설이 꼭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임시 거류증 발급,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면 과제를 위해서라

16) 최근 남북경제협력 분위기에 즈음하여 광해룡(2002)은 정부와 NGO가 공히 정책적, 사업적 파트너로서 경제특구에 공단을 조성, 북한사회의 자발적 귀환자를 노동시장으로 흡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자발적 귀환자의 고용을 의무로 하여 NGO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긴 이익금은 북한의 소외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며, 이를 북한이 확실히 인지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만약 북한과의 협의 하에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민감한 정치적 차원을 우회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 민간단체의 경험, 활동, 자료를 통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민간단체가 축적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역시 이와 다른 것이 아니다.

2) 관련국들의 정책

여기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및 동남아 각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처리방안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 및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를 상호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당사국인 남·북한정부 및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관련국 정부들이 고수하고 있는 정책적 문제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유니세프, 유엔인권위원회, NGO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문제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인권논의에 대한 이론 및 인권정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및 국제정치의 역학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 및 국제정치상황, 국제법상의 탈북자 처리문제 및 난민지위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등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서로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UNHCR, 유니세프,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관련 기구와 NGO들이 지향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도덕가치 실현’과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 환경 간의 합의점 찾기가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궁극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책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권고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처리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해보았다.

(1) 인권이론에 대한 다양한 패러다임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는 모든 개인의 생존권보장이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라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해석에는 보편적 해석과 상황적 적용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대해 민족, 국가, 문화, 종교 등의 차원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보편주의'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 후자는 인권문제가 각 국가의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간섭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라는 "인권상대주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영선(2000b)은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의 특성을 토대로 도넬리(Jack Donnelly)의 인권이론을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인권논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문화적, 역사적, 지역적 차이에 관계없이 인권 및 도덕적 가치가 모든 것에 우선" 하는 '극단적 보편주의(radical universalism)'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모든 도덕적 가치가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 문화 및 정치경제적 상황에 종속"되는 '극단적 상대주의(radical relativism)'가 있다. 셋째는 '강성상대주의(strong relativism)'로, 이는 "두 이론의 극단 사이에서 인권 및 모든 가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문화적 특수성에 종속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건상대주의(weak relativism)'는 "인권의 보편성은 인정하되 어느 정도의 문화적 속성 역시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인권보편주의는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와 주권주의에 기원을 둔 서구식 인권개념으로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및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유럽의 계몽주의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인권문제를 도덕적 책임의 문제로 이해하며, 국가와 사상을 넘어 인류적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 인권보편주의는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현재까지 인권논의에 대한 서구국가들의 기본방침을 이루고 있으나,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인권보편주의의 맥락에서 본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2003년부터 해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촉구 결의안’을 들 수 있다.¹⁷⁾ 이 결의안은 “강제송환 배제원칙의 준수와 임시 수용, 혹은 보호시설 마련 요망,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양자간 협약 또는 약정철폐(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수정요구압력), 은밀한 탈북을 줄이기 위한 이주채널 확보 등과 같이 장기적인 해결책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몽골의 국제원칙준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최의철, 임순희, 2003)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NGO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강화 및 국제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처리를 지향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보편적 인권주의의 발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상대주의는 각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부분적인 강조와 수용의 정도가 다양하게 해석·적용되고 있다. 인간존엄성과 도덕성에 대한 보편적 인권주의의 실현과 각 사회의 특수성을 상황에 맞게 해석·적

17) 유엔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채택된 결의안으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당국을 상대로 인권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촉구, 신체적 안전권리침해, 정당한 법 절차 및 법 지배 결여에 대한 우려 표명, 최근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등을 포함한 불안정한 인도주의 상황의 개선, 국제인권기준 준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 정책결정예의 시민사회 참여 촉구,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설치 촉구” 등을 요청하고 있다(최의철, 임순희, 2003).

용하는 상대적 인권주의는 현재 탈북자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국제정치의 양면적 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정부는 중국의 역사·문화 및 정치·경제적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실현 역시 중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권사각지대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되어 온 북한정부 역시 북한체제와 사회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북한 내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실태, 즉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한 보장의 불충분, 신체적 안전 및 인간적 대우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 상황, 법적 차별의 지속, 거주이동 자유의 제약, 건강과 교육의 권리 취약, 정치적 참여 제한 등 전반적인 자유권에 대한 엄격한 제약,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리침해 지속” (최의철, 임순희, 2003)에 대해 북한정부는 ‘국제사회의 북한체제전복’으로 대응하면서 극단적인 정치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셋째, 강성상대주의와 온건상대주의의 적절한 예를 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온건상대주의의 경우는 뒤늦게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아시아 신흥공업국, 예를 들면, 한국과 대만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온건상대주의란 문화적 전통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중요시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이 침해당할 경우 제도적 차원의 보호가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경우이다. 한국의 경우 역사·문화적 토대 위에 문화적 관습이 지속되어 왔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을 잇는 핵심이 되지만,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객관성 역시 헌법체제의 공정성, 기타 제도적 장치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보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8) 극단적 상대주의가 문화, 역사, 경제, 정치적 특수성이라는 포괄적 상대주의라면 강성상대주의는 문화적 특수성에 주로 초점을 맞춘 -그러나 때로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적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강성상대주의는 상황에 따라 극단적 상대주의의 한 부분으로 강조될 수도 있다. 강성상대주의의 예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면 중동국가의 종교문화에 따른 인권해석, 인도의 카스트제도의 합리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자. 현재 당사국인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의 80% 이상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리방안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국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는 극단적 상대주의와 극단적 보편주의의 충돌로서 이 두 논리는 어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난향을 거듭하고 있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문제는 결국 식량난민 또는 경제난민으로서 이들의 법적 지위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국간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다음 절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문제와 인권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법적지위 문제와 인권현황

① 법적 지위 문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는 이들을 처리하는 문제의 핵심이자 관련국 간의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적 지위 문제는 이들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문제는 국제사회질서의 중요한 변동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언급할 점은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그 동안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난민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의로는 1954년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서 명시하는 난민 개념을 들 수

있다. 이 조약 제1조 2항에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또한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한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1967년에 발효된 ‘난민 의정서’ 이후에도 난민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로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난민관련 국가들이 자의적 또는 다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임채환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임채환, 2001). 첫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서 ‘공포’ 가 내포하는 주관성은 난민신청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가 우선해야 되지만, 기아 또는 자연적 재해가 어느 차원까지 ‘객관적 공포’ 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기아 난민이나 경제난민, 전쟁난민 등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의 경우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서구유럽국가로 밀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본국송환방침’ 이라는 원론적 처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공포의 자의적 해석을 보여 주는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바 없는, ‘박해’ 란 단어의 다의성 역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즉 공포라는 단어가 주관적으로 해석되듯이 박해 역시 다양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우상의 차이가 될 수 있으며, 그 차별적인 조치가 모든 상황에 비추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를 박해로 간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주민과 난민이 갖는 지위의 모호함은 상황적 요건에 따라 경제적 이주민이 될 수도, 또 난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초기에는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제3국으로 건너온 이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난민의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제3국으로 떠나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난민인정이 출신국의 국적을 소유하되 출신국 영토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보호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난민 적용 정지 및 배제 조항의 다의성 역시 문제시될 수 있다.

난민조약에 규정된 난민정의가 이처럼 문제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난민과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망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법상 망명은 통상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피하여 본국으로부터 도피한 자’로 한정·정의되고 있다. 즉 망명자가 정치적 이유의 탈출자라면, 난민은 전쟁, 경제상황, 천재지변이 몰고 온 식량난 등과 같은 상황적 결과가 야기한 본국 탈출자인 셈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은 전쟁이나 체제의 억압, 천재지변 등이 동태적으로 얹혀있는 복합적 상황인 만큼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법적인 경계 및 사회학적 분류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난민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UNHCR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법적 차원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강제송환금지’, ‘비호’, ‘불법체류 처벌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국제사회의 권고일 뿐 국제법의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난민지위부여가 관계국가의 난민수용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결국 당사국의 실천이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뿐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문제, 나아가 중국 내의 소수민족문제 및 사회분열 등과 같은 파급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문제를 살펴보자. 이들의 법적 지위문제는 외교적 보호관할이 남한정부나 북한정부를 가름하는 것

인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즉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법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는가, 남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부체제를 가진 별개의 국가이니만큼 북한주민의 이중국적이 허용될 수 있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그 허용범위에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가,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허용문제는 국적법상 남북한 양국 정부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등의 문제는 법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학적, 역사학적, 행정학적, 철학적 차원 등 수많은 인문사회 영역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¹⁹⁾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어떤 원인과 목적으로 탈북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²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탈북의 첫째 이유는 가뭄이라는 천재지변과 북한 영농기술의 낙후와 비효율성에서 기인된 극심한 식량난을 들 수 있다. 대략 199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은 비공식적으로 수백만 이상의 아사자를 발생시켰고, 이 당시 북한과 국경을 접한 동북3성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몰려 든 북한주민의 숫자는 수십만을 상회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¹⁾ 이 당시의 북한식량난민의 체류성격은 단기적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즉 이들은 식량을 구한 후 북한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의 부실함이 낳은 결과로서 북한주민들이 다양해진 통로를 이용하여 외부세계 및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했음을 들 수 있다. 중국으로 넘어 온 식량난민의 불법체류는 그동안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의 풍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된다. 이 상황은 기아극복이라는 식량난 타

19) 국내법상, 국제법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0)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탈북 원인 및 목적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제 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 중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발생원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1) 1994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북한의 90년대 식량난민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좋은벗들(1999a)의 <두만강을 건너 온 사람들>을 참조하라.

개에서 더 나은 삶을 찾는 경제난민으로 탈북의 성격이 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즉 탈북의 성격이 ‘생존유지’에서 ‘생계유지’로 그 유형이 바뀌면서 2000년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을 규정짓는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정부의 중앙배급제 마비로 인한 사적인 경제활동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의 확대가 북한사회의 일탈을 더욱 가속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탈북이유는 북한정권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다양한 사회문제점들, 예를 들면 중앙배급기능의 마비, 식량난 타개에 대한 북한정부의 대책마련 부재, 월경에 대한 암묵적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가뭄이라는 천재지변까지 악재로 등장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혀 북한주민의 탈북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종합해 보면 북한주민의 탈북은 북한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무정부 상태에 이르러 자국민을 보살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해외체류 상황은 ‘난민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는 더욱 타당하다.

② 인권현황²²⁾

현재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는 중국정부에 따르면 3만여 명, 한국정부에 따르면 5만여 명, UNHCR에 따르면 10만여 명, 국내 NGO들에 따르면 20~30여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이 중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여자청소년의 비율은 7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길은배, 2002).²³⁾ 중국공안의 체포와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나 베트남, 라오스 등 동

22)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3) 최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앞서 서술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황에서 추정해 보았다. 추정결과는 약 18,000명에서 20,000명 내외로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시아 국가에 은신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²⁴⁾ 윤여상(1998b; 1999)의 자료에 따르면 ‘나홀로 탈북’을 감행한 청소년들의 수치가 전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만큼, 성인 보호자 없는 이들의 체류현황은 매우 참담한 실정이다.²⁵⁾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대부분은 흔히 식량난이나 탈북과정에서 가족해체 및 상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중국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식량난이나 탈북과정에서 가족의 파괴 및 상실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불법체류기간에 겪게 되는 빈곤과 배고픔, 영양실조, 노동력착취, 체포와 감금 그리고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황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탈북하기 전의 건강상황과 탈북해서의 건강상황은 영양결핍 및 질병에 대한 노출이라는 점에서 그리 큰 차이는 없는 듯하지만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는 현지공안의 추적과 강제송환 및 북한 교화소의 두려움 등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제3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는 교

24) 특히 재러시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벌목장, 탄광, 건설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외화벌이에 나선 노동자들이 다양한 동기로 한국행을 희망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 외에도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역시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역시 러시아경찰과 북한 공안요원의 감시로 인해 은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언어적, 인종적 문제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재러시아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치 역시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가족의 해체로 탈북을 감행하거나 탈북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어 중국을 경유,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러시아로 입국한 청소년 등이 다수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25)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성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중국체류 실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조사로서는 좋은벗들(1999a)의 <두만강을 건너 온 사람들>과 이금순(2005b)의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중국으로 월경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질적 연구이고, 후자는 북한주민의 국경이동현황에 대한 분석자료이다. 또한 윤여상의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면담자료 역시 이들의 중국체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윤여상, 2002a; 2002b; 2002c)

육권 상실, 또래관계 및 경험상실 등은 성장기에 습득해야 할 사회성 및 인성 발달의 결여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한 인격체의 총체적 파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 불법체류자라는 3중의 억압에 놓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인신매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도 하는데, 사회범죄인 인신매매가 갖는 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조차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성적 유린 실태의 심각성만을 추측할 뿐이다.

이상과 같이 이들의 탈북원인과 체류상황을 살펴 볼 때,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문제는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조약 및 협정이 권고의 대상일 뿐 어떠한 국제법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탄력적인 대응만이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이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접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여러 나라의 정책들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안에 포함되어 있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요 관련국들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중국의 정책

중국은 1960년대 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199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길림성 변경 관리조례’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색, 체포 및 강제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북한과 중국은 국경이탈과 불법체류를 감행하는 ‘범죄자’라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

한이탈주민 정책에 있어 중국은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초기 생존형 탈출시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가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성체류의 성격이 뚜렷했고, 이에 대해 중국정부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월경자 묵인정책 내지는 완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사회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추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대량탈출의 위험이 커진 1990년대 말에는 대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2004년 북한인권법의 미국 하원의회 통과이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외국시설 진입증가에 대한 불안과 북한과의 외교마찰 우려에 따라 현재 중국정부는 보다 엄격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기획망명인 재중외국공관점령사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 역시 단호하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곽해룡은 중국정부가 “내부적으로 한국의 입장이나 국제적인 인권단체의 인도적 견지에 따른 압력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고려는 하는 듯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의 기반 위에 대(對)한반도 정책과 연계된 대북정책사”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무마시켜야 할 필요성과 패권주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사회주의 파트너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갖는 가치 및 소수 민족 정책에 대한 중국 동북부 지역 불안요소의 해소” 때문이다(곽해룡, 2005b). 즉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증가에 따른 중국사회 내 치안문제, 둘째, 북한과의 우호관계문제,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지가 국경근처 조선족 자치주인 동북3성으로 집중됨에 따라 나타나는 소수민족정책 마찰문제, 마지막으로 대량탈북이 야기할 동북아 정세불안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국경이동 북한주민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량탈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한 방법”으

로서 “이러한 방침을 변경할 현실적인 이유”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금순, 2005b). 또한 중국정부는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식량유민’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경제적 이주자로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이금순, 2005b). 이와 같은 정세에서 현재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체류자’ 혹은 ‘불법월경자’로 규정하여 공안의 감시, 관련자 체포, 구호단체의 해체 및 추방, 강제송환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윤여상에 따르면 대대적 단속 기간이었던 1998년 하반기에는 매주 400여 명 정도가 중국공안에 의해 연행되어 북한으로 소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윤여상, 1998b). 또한 2002년 소위 기획망명으로 일컬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 점거사건을 시작으로 점점 빈번해지는 중국주재 외국공관 침입사건, 산둥성 옌타이에서 시도한 해상탈출 실패사건 등은 중국공안의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⁶⁾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체류지역 역시 국경지역을 넘어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중국 내륙지역에도 골고루 퍼져있으며, 중국공안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 라오스 등 제3국으로의 감행도 자주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중 도시지역에서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여성의 경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금순, 2005b).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독립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및 체포와 강제송환, 북한이탈주민 구호단체 탄압과 관련자 엄중처벌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정책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⁷⁾ 중국

26) 여러 NGO 담당자들의 증언은 한 해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송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7) 강제송환의 경우, 96년 이후부터 매 해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난민지위부여와 보호정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성인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식량난 시기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탈출하여 ‘국제미아’가 되어 떠돌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보호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② 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의 정책

재러시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별목장, 탄광, 건설사업장 등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출신 노동자들이 다양한 동기로 한국행을 희망하면서 합법체류에서 불법체류로 법적인 지위가 바뀐 경우와 그리고 중국의 단속을 피해 러시아에 밀입국한 북한주민의 불법체류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역시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등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치 또한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러시아 정부는 1994년 이후부터 ‘탈북자 관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본적 동기는 1994년 한국정부가 러시아 정부에게 북한출신 별목공에 대한 신변처리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고는 있지 않으며, 이들의 러시아 정착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동시에 북한공안의 러시아주재 북한이탈주민의 검색 역시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UNHCR과 같은 공인된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제한된 차원에서라도 실천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비교해 러시아의 정책은 좀 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은 개별적이고 우호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될 뿐이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 (홍미희, 2004)의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러시아정부의 정책 역시 매우 미온하다고 할 수 밖에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고, 98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수치가 급증하면서 매월 1000여 명이 넘는 송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수치 역시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송환자의 규모는 더할 수 있으며, 이 사실로 미루어보아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엄청난 것으로 예상된다.

없다.

태국정부의 정책은 UNHCR과의 긍정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경우이다. UNHCR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태국정부는 제3국이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밀입국자로 적용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 구류형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이들에 대한 처리는 제3국으로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북한인권백서, 2006).

③ 미국의 북한인권법

미국 국무부는 2002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각국의 인권실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노선의 핵심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및 테러와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독재정권 탄압임을 감안 할 때 인권실태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정책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북한부분의 주요 내용은 6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보고서의 제1조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과 신체적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존엄성 추구, 제2조는 언론, 출판, 집회, 종교, 여행 등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적 권리 강조, 제3조는 사상과 관련된 정치적 권리 강조, 제4조는 북한 내 국제기구와 NGO 활동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북한정부의 적대적 반응 주시, 제5조는 인종, 성, 장애 및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및 북한아동의 열악한 영양환경에 대한 북한정부의 미온적 태도 비판, 제6조는 결사의 권리, 단체행동 및 교섭권, 이동노동문제 및 인신매매 등과 관련된 북한의 노동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최의철, 임순희, 2003:4-9).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기아와 억압으로 주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정권’으로서 인권유린국의 대표주자이다. 따라서 미국의 적극개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아래 미국의 대북한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인권문제를 천명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바로 이 연속선상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7월 21일 미국하원의회 통과 이후 10월 18일 부시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²⁸⁾ 이를 근거로 미국은 탈북자들의 보호와 인권 개선, 민주화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는 등 북한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명칭과 목적 및 정의조항 등 5개 조문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 5장 2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①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의 금지, ②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③ UN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④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책 제공 등이다(김동한, 2004).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을 언급하고 있는 제1장은 북한주민 인권유린 실태의 국제이슈화,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재정지원,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방송채널 확대, 북한 인권유린 현실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장 북한주민지원 부분에서는 북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토록 하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정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제공이 시작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난민, 북한이탈주민, 이주자, 고아, 인신매매 희생자’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민지위, 망명, 임시입국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보호 및 재정착을 신청하려는 북한주민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난민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3장에서는 “중국 등지에 숨어살고 있는 북한 난민이주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평가”와 “중국내 북한 주민들이 UNHCR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중국 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SEC. 302조)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28)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망명신청자들의 UNHCR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과 난민지위 인정의 거부, 북한이탈주민 색출 및 강제송환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난민의정국가의 회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대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SEC. 303조 및 304조). 북한인권법의 목적 중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난민 지위 문제와 관련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해결책 제공”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SEC 201-212).

○ 제목2. 북한난민 보호를 위한 조치

- SEC.201(우선난민지위 인정 정책의 실시): 북한주민에 대해 우선난민지위인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입국하려는 탈북자에 대해 안전한 피난처와 보조를 보장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북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정책을 권장한다.

- SEC.202(미국인의 북한아동 입양): 북한 아동 중 수천 명은 고아이며 이들이 북한에 남아 있을 경우 기아와 질병으로 위협을 받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국토안보부장관은 북한 고아들의 입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SEC.204(북한주민의 신분변경): 국토안보부장관의 재량으로 북한주민 중 미국에 입국허가 또는 임시입국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아래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 조건은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둘째, 그 외의 경우라도 최소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불법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불법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다.

- SEC.206(S비자): 이 부분은 이 법안의 상정으로 미 이민법의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다. S비자(특별우선순위 비자)와 신분변경에 관한 것들로, 이민법 중 각 ‘법무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장관’으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시스템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사항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S비자의 대상에 포함되며, 그 인원은 3,500명을 넘지 않는다.

－ SEC.207(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 국토안보부에 대량살상무기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이 센터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 유통구조, 물질, 기술 및 그러한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 입수를 첫째 역할로 하는 한편, S비자와 관련된 상담원을 교육시키고 S비자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평가를 하는 등 이 법에 규정된 S비자의 발급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

－ SEC.209(난민지위): 국무장관은 정치적·종교적 신념과 행동으로 박해받는 종교인이나 정치범 등을 ‘특별우선순위 제2그룹’으로 지정한다.

－ SEC.212(난민 고려에 있어서의 자격): 이 법의 목적상 북한주민이 남한 헌법상 향유할 수 있는 제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권리가 미국에서의 난민 지위에 관한 적격성 획득을 방해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2005년 2월 26일 미 하원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미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규모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당국과 중국의 정책 평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수용기준 제시 및 수용절차 등을 골자로 미 국무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명을 받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국제이슈화에 기여하는 한편 당사자인 북한과 관련국인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송환된 북한이탈 여성들의 강제낙태 및 출산금지, 강제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총살형이라는 극단적 처벌, 북한이탈 여성 및 청소년들의 국경지역 인신매매 성행, 국제적 인권규범거부 등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북한이탈주민 정책 보고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지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우선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벗어난 북한 난민, 탈북자, 고아,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은 매년 2000만 달러이지만, 이 예산은 2006년 현재 미국정부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실행 역시 보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미국이 제시한 난민수용 프로그램 역시 구체화된 적이 없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한 명도 없다. 다만 미국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체류를 허가한 예가 2006년까지 9명만 있을 뿐이다. 북한인권법 제3장에 따라 미국은 중국 등의 관련국가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망명신청 절차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망명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정부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북한이탈주민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 역시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결여 되어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성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요외교 정책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 및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미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정당화될 수 있는지 되묻게 된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 원인은 다른 아닌 북한인권법의 제정동기와 실행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제정동기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무기삼아 핵시설을 비롯하여 대량살상무기 해제를 목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즉 부시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원인을 김정일 정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북한의 핵시설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장은 곧 북한주민의 기아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시설과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부시 행정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위시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의미가 지닌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인권법 발효이후 UNHCR과 NGO들의 네트워크 작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중국정부에게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있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북한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나아가 이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채택되어 북한주민의 자유권 확립과 인간존엄성 보장, 북한의 문호개방 요구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문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수확으로 볼 수 있다.

④ 국제인권레짐(legime): 유엔과 NGO

인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도덕적 인식에서 출발하며, 국제인권레짐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규범, 규칙 및 실행절차”(Krasner, 1983:2-3, 정영선, 2000b 재인용)를 의미한다. 국제인권레짐의 핵심은 “인권의 보편성 문제가 ‘주권’을 빙자하여 특정 국가 내 관할권 원칙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레짐의 개입을 정당화” 시킴과 동시에 “각 국가에게는 주권에 바탕을 둔 관할권의 ‘포기’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도덕성의 제도적인 구현”(정영선, 2000b)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를 야기하여 인권문제가 국제정치 안에서의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제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모든 국제기구 및 NGO의 기본정책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원리이자 국제법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관련국들인 중

국, 북한, 남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에 의해 방치된다면 유엔을 비롯한 NGO의 개입은 차선책이자 실질적 대안으로서 국제인권레짐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도덕적 상호의존’ 및 해결마련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수행은 불가피하다.

전쟁이나 내전, 기아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 난민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기구는 유엔에 속해있는 UNHCR일 것이다. 이 기구는 이미 발생한 난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난민발생예방과 난민처리의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UNHCR의 대응은 한 마디로 ‘일시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이 보호는 다시 ‘일시적 피난(temporary refuge)’, ‘일시적 비호(temporary asylum)’, ‘일시적 보호(temporary protection)’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피난과 비호가 대부분의 난민들로 하여금 제3국에의 재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경우라면, 보호는 사태해결 이후 본국으로의 귀환을 권장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트남전쟁과 보스니아내전 이후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들이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착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내전으로 발생한 전쟁난민이나 기아로 인한 경제난민 등이 이웃 국가로 피난하여 일시적인 보호를 받다가 자국 상황이 안정된 후 다시 귀환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난민 발생시 UNHCR이 부딪혀야하는 결정적인 난제는 난민지위 부여나 난민보호 등에 있어 UNHCR의 방안이 어떤 국제법적인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국들에게 국제법상의 의무를 전혀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²⁹⁾ 즉 일반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보호나 처리방침은 관련국들의 고유권한으로 한정되며 UNHCR은 난민지위부여나 난민보호를 관련국에 요청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유형이 계속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UNHCR에게는 난민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포괄적인 접근 수립이 절실히

29)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장복희 1998년 논문 참조.

요구되고 있다.

수십만에 육박하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UNHCR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한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부여가 중국정부의 사안인 만큼 UNHCR의 권고는 실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지금까지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UNHCR의 권고를 통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이탈주민 문제 및 이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명과 비판은 ‘중국에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곧 중국내정의 문제”로 인식하는 중국정부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UNHCR과 함께 언급해야 할 기구로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소위원회(UN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가 있다. 이 양 기구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 이후부터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역시 북한전체주의체제에 대한 비판, 시베리아 별목공 문제, 양심수문제, 식량난과 기아문제, 탈북자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촉구 등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부터 해마다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냉전 이후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만큼 세계인권운동과 인권전문기구로서 인권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⁰⁾ 이 인권문제의 핵심이 세계안보문제 및

30) 유엔인권기구들의 대북한 인권정책에 대해 북한정부의 대응 역시 강경하다. 북한은 인권규약 탈퇴라는 극단적인 방식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대북지원의 조건이었던 미사일회담의 일방적인 중단 발표 등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세력들과 그에 추종하는 몇몇 나라들의 주동에 의한 것으로 여기며 단호히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EU 결의안

국제질서유지와 연계된 주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중요성 확대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나 북한이탈주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의철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인권존중은 주권존중과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권원칙은 국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존중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국가가 인권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을 철회 또는 지연시키는데 국제사회의 이해가 확대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규범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인도주의 개입을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과거보다 용이하고, 특히 EU,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협력하는 경우에 인권침해국들에 대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최의철, 2005:129).

다음으로 국제인권레짐에 대해 가장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구들은 국가간 협약이나 의무사항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민간단체들이다. 국제 NGO들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때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1983년 이래 매년 북한 정치범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1999년 국제엠네스티는 재러시아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0년에는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상정과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모두 공격하였다. 결의안 내용들에 대해서도 인권은 곧 국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천명하고 있다(최의철, 임순희, 2003).

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여 북한이탈주민 인권유린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국제엠네스티 외에 북한 관련 NGO 중 제 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NGO 단체들의 2005년 이후 최근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탈북자 관련 보고서 발표

국제위기그룹은 “Perilous Journey: The Plight of North Korean in China and Beyond”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 중국에서의 상황, 제3국의 정착과정 등을 기술하고 관련 당사국에 대해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정치적 억압보다는 경제적 기회의 결여가 더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식적 망명 의도로 탈북하지는 않지만 중국 내 체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제3국 정착을 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일본, EU 등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강하게 제기하는 동시에 이들이 실제로는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정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국 정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 북한: 중국 여행 정책 강화, 허가 없는 중국 방문 처벌 재검토, 개혁과 개방의 확대,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남북관계 연계 해제.
- 중국: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임시 거류증 부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의 협조 및 접근 허용,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이 낳은 자녀의 취학 허용 등
- 베트남, 버마, 라오스: 북한이탈주민 송환 중지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원칙 준수 촉구, 정치적 망명을 위한 국내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조

- 남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절차 마련, 북한이탈주민 망명 지원활동으로 중국에서 체포된 남한 활동가의 석방 적극 추진(임순희, 김수암, 이금순, 2006).

○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인권 관심사(North Korea: Human Rights Concerns)”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문과 감옥 내 부당 대우: 고문, 극형 지속, 북송여성 임신부에 대한 박해, 즉결처형과 장기간의 강제노동 지속 등
- 공개처형: 2003년 공개처형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지만 2005년에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처형
- 난민: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송환지속(임순희 외, 2006).

○ 미 인권단체들: 북한이탈주민 송환 항의 집회

‘북한자유연대’ 주도로 14개국 20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에 대해 규탄시위를 전개하였고 강제송환 지속에 대한 항의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미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고서 발표

보고서는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중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유동이 북한 내 인권유린으로 인해 발생하고,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또 다시 인권문제를 야기하며, 인권의 문제는 국제공동체의 의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는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46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

민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중 97%가 북한으로 돌아 갈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음.
-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행 희망자는 64%, 미국행 희망자는 19%, 중국 체류 희망자는 14%였음.
- 탈북동기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유가 95%로 압도적이었던 반면 정치적 박해는 4%에 불과했음.
- 중국체류 기간과 관련 3년 이상 체류한 자는 응답자 전체의 68%에 달했음.(임순희 외, 2006).

(4)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불이행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 인권문제 및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인권유린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고사하고 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마저도 ‘체포와 강제송환’ 만을 반복하고 있는 관련국의 방침은 인권침해논란의 여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까지 관련국 간이나 국제사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바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일 것이다.

아동권리사상의 역사는 1922년 아동복지회의 창설자인 에글란타인 켈(Jepp)에 의해 탄생된 “아동권리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년 후인 1924년 국제연맹은 이 선언문 전문과 5개조로 구성된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5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10개조로 구성된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79년은 이 선언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아동의 해’로 선포되었다. 이후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탄생하였다. 전문 및 54개조로 구성된 이 협약은 무엇보다도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를 강조하며 1990년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세계 191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국제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이 아동권리협약은 4개의 주요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다.³¹⁾

- 생존의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발달의 권리
 -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보호의 권리
 -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참여의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이배근, 1998)

이 주요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중 북한이탈 청소년 인권문제 및 관련국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아동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협약 제22조를 살

31) 이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은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펴 볼 필요가 있다. 2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2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받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사국의 다른 규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에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아동권리협약, 제22조)

위의 협약내용의 핵심은 보호자의 동반여부와 관계없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국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취급되는’ 부분에 있어 해석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2002년 5월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조항 이행 노력에 대한 ‘아동권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얻으려하거나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난민으로 간주된 아동은 없었으며, 따라서 실제로 난민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06, 북한인권백서).³²⁾ 이와 함께 남북한 당국은 물론,

중국정부 역시 ‘난민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조항’ 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 및 중국정부 등의 입장에서 보자면 난민으로 간주된 북한이탈 청소년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법을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국들의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은 아예 부재로 이어지고, 북한이탈 청소년이 처한 열악한 상황은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권고의견’ 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아동귀환자’ 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 협약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국경 근처의 중국 도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북한 아동들이 희생자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범법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동권리협약 제8조 2항은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부분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방침이나 북한정부의 귀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화소 감금’ 과 ‘노동단련대’ 등과 같은 처벌원칙은 인권유린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³²⁾

이처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각국의 ‘적절한 신변보호와 인도적 지원’ 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과

32) 이 보고서에는 단지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의무조항 준수 및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을 보고하고,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내에 아동권리협약 국가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및 법규를 조정하며, 국제사회가 2000년도 까지 지원한 2억 달러 중 60%를 어린이 교육, 건강, 사회 및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의 처벌실태는 2006년 북한인권백서 248-262쪽을 참조

청소년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의 실행은 매우 시급하다.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비티 문타본(Vitit Muntarhborn)은 “국경이동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현장난민’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당국과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경이동 자체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이 현재 체류국에서 단속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며 그 곳에서 중대한 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현지체재 중 난민이 된 자’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북한인권백서, 2006). 결국 북한을 위시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책은, 아동의 최대이익 보장의 원칙과 아동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³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남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의 정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34)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명분을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내용에서 살펴보면,

- 6조 생명권: 아동의 생명존중과 생존 및 발전보장의무
- 8조 신분보존권: 상실된 신분회복 지원의무
- 12조 의사표시권: 자신에 관한 사항 및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아동 의사 표시권 보장
- 19조 폭력, 학대, 착취: 폭력,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 아동보호와 이를 위한 계획수립
- 22조 난민 아동보호: 난민아동의 인도적 보호 및 난민아동지원 및 가족재결합
- 24조 건강 및 의료지원: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일반에 대한 권리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 26조 사회보장권
- 27조 생활수준향유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의 권리
- 28조 피교육권: 교육의 기회평등권에 대한 모든 권리
- 30조 소수자, 원주민 아동보호
- 31조 휴식, 여가, 문화활동: 아동의 참여권 및 균등한 기회부여
- 32조 소년노동: 경제적 착취보호
- 33조 마약으로부터 보호
- 34조 성적착취와 학대
- 35조 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거래금지
- 37조 아동고문, 사형금지: 아동의 신체적 자유박탈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사실은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의 실행과 국제적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북한 청소년들이 국경을 넘는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 현재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즉 의식주 및 신변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이들을 위한 보호와 교육의 기회 및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특히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 청소년에 대한 특별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기 신상에 대한 참여의 권리 및 사회복지와 이에 필요한 후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자의건 타의건 북한으로 돌아 온 아이들이 범법자가 아닌 희생자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북한정부의 탄력적인 처리방침을 촉구해야 한다.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방침이 정부간, 유엔, NGO간의 국제협력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인간존엄성의 시각과 생존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제3국 체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외정책의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중국과 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 미국, 유엔 및 NGO,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권이란 인간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인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와 조직 그리고 각 개인들 간의 보편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 인권은 다시 ‘법적인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정신적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적인 인권은 인간답게 살아 갈 보편적인 인간사회의 원칙으로서 제도적, 실천적 영역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인권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인권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심리·신체적인 보호라고 할 수 있다(길은배, 2004). 또한 이 세 가지의 인권 영역은 서로 맞물려 동태적으로 작용한다. 즉 정신적 인권은 사회·경제적 인권에 대한 보호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법적인 인권은 사회·경제적 인권의 실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인권의 개념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암울한 현실인 것이다. 우선 법적인 차원에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는 국경이탈자, 중국에서는 불법월경자라는 범죄자의 신분만 있다. 여기에 한국정부도 국제법상에 의해 북한주민이라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에서 오는 한계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마저도 국제미아인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해 학습기능 및 올바른 사회화가 거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주 및 위생과 의료보호의 결핍으로 건강상태 역시 매우 위태롭다. 실제 탈북청소년들의 영양 상태는 성장저하와 영양실조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외, 2006).

정신적 차원의 문제는 법적·사회경제적 차원이 실현되지 않을 때 오는 정신적 불안정 및 공황상태를 말한다. 특히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백혜정 외, 2006). 이와 같은 인권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사회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실행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특별법이 마련됨과 동시에 각 관련국에 발효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관련국 정책의 처리방안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정부의 난민협약에 따른 신분보호 및 국제적 의무가 준수되지 않고, 미국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중국의 입장이 대북 관계의 중요성에서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 핵개발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해결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Ⅲ. 제3국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중국 연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1. 자료수집
2.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Ⅲ.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중국 연변 거주자를 중심으로

1. 자료수집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8명 및 현지 활동가 9명이다. 면접대상자에 대한 보다 구

<표 III-1>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적사항

#	이름(가명)	나이	성별	체류유형	체류기간
1	보람	15세	여	생모, 조선족 계부와 생활	1년
2	은주	17세	여	사설 고아원 생활	정확하지 않음.
3	은향	17세	여	친모와 헤어진 후 사설 고아원 생활 약 3년	정확하지 않음.
4	성철	21세	남	친모, 동생(성남)과 생활, 중국에서 큰형 사망	9년
5	성남	16세	남	친모, 둘째형(성철)과 생활, 중국에서 큰형 사망	정확하지 않음.
6	혜진	17세	여	친모와 생활	15일
7	송희	14세	여	부모와 헤어진 후 보호처 생활 약 2년	4년
8	명화	18세	여	부모(친모, 계부) 사망 후 사설 고아원 생활 약 4년	8년

<표 III-2> 현지활동가의 인적사항

#	이름(가명)	나이	성별	소속	주요 활동 내용
1	박경희	40대	여	현지 활동가, 조선족	보호처 담당
2	김나영	20대	여	NGO 단체 소속 현지 활동가, 조선족	의료지원
3	홍성길	30대	남	NGO 단체 소속 현지 활동가	단체의 기획 및 행정 담당
4	차경수	30대	남	현지 활동가	아동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윤승일	50대	남	NGO 단체 소속 현지 활동가, 재미교포 선교사	산속 보호처 담당
6	이진호	50대	남	목사, 조선족	탈북자들의 중국 정착 지원
7	최대명	40대	남	전도사, 조선족	교회 내 탈북자 지원팀 담당
8	송혁재	40대	남	목사, 조선족	탈북자들의 중국 정착 지원
9	문은미	50대	여	사설 고아원, 조선족	사설 고아원 운영

체적인 정보는 <표 III-1>과 <표 III-2>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각 표에 제시된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먼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14세에서 17세까지 십대 여자 청소년 6명과 각각 16세와 21세인 남자 청소년 2명이었다. 이들의 탈북 후 중국 체류기간은 15일부터 8년 정도까지로 개인에 따른 편차가 컸다. 또한 당시 이들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이는 단 한 명이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정규학교에 다니다 그만두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개인교습이나 소규모 과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현재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소규모의 사설 고아원 형태의 보호처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4명,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청소년이 4명이었다.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경우는 편모슬하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3명이었고, 나머지 한 명은 생모와 조선족 계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면접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관찰한 것에 덧붙여 현지 활동가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연변 일대에서 십대 남자 청소년을 포함하여 북한이탈 남성을 찾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면접대상자 중 남자 청소년이 적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 체류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 남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이동성이 강하여, 외부 지원망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면접에 응해 준 현지 활동가들은 주로 NGO 단체³⁵⁾에 소속되어 있거나 신앙심을 바탕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20대에서 50대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도 조선족들은 청소년들을 포함,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적으로 지원, 보호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 들어간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돌보는 보호처 또는 사설 고아원 등을 후원하거나 다양한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라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 현지 적응을 우선책으로 삼으며, 남한이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주선하는 일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35) 이들이 주로 속해있던 한 NGO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약 200여명에게 교육, 의료 및 의약품 지원, 일자리 마련 등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2) 면접절차

최근 들어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며, 발각시 북한으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 보니 면접 대상자들과의 만남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위한 면접대상자의 만남은 다음과 같이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우선 면접자의 섭외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선정한 후 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자 섭외를 담당한 연구자는 먼저 연길 현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및 단체의 협조를 받아 면접대상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현지 활동가란 북한이탈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한국인 2명, 재미교포 1명, 조선족 2명), 교회 관계자(목사 및 전도사 3명), 보호자(1명)를 일컫는다. 단체 관계자들은 현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NGO 소속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직접 보호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이에 따라 연변지역의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었다. 교회 관계자들은 현지에서의 단속 심화와 과거 한국 교회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진 상황이 겹친 악재 속에서도 자신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직접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었다. 보호자는 연길 시내 한 주택가에서 소규모의 사설 고아원을 운영하며 북한이탈 청소년 및 조선족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면접 시기는 2007년 4월과 6~7월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일인당 1회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장소로는 피면접자들이 기거하는 곳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이들과 관련이 있는 활동가 및 관계자들이 주선하는 곳을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면접대상자들은 불안한 신분 문제, 심리적 상처, 청소년기의 혼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

로 인해 자신의 신분 및 생활사가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이야기와 같이 가벼운 주제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주제를 점차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시켜나갔다. 그러나 피면접자들의 특성 및 면접 상황에 따라 면접 내용의 깊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면접자는 각 면접사례에 대한 현장노트도 작성하였다. 현장노트에는 면접 당시의 분위기나 피면접자들이 면접에 응하는 태도 및 비언어적 의사표현 방식, 기타 특기할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자료 분석의 목적은 중국을 중심으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유형화하려는 것이다. 앞서 청소년들을 포함한 북한이탈 주민들과 외국 난민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 체류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특성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중국 체류 청소년들의 자료가 워낙 부족하고 게다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수집된 자료들을 인용하다 보니 최근의 현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적 틀을 기초로 삼긴 하되, 이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자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면접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제분석 방법(Doffey & Atkinson, 1996; Patton, 1990)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이란 자료에서 반복적이거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주제, 행동 유형, 사건 등을 찾아 범주화(coding)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범주화된 자료들은 각각 하나의 하위 범주가 되며, 여러 개의 하위 범주들은 또 다시 유목화를 거쳐 하나의 상위범주 안에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거쳐 하나의 범주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선행연구논문들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대조자료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범주화 및 개념화한 분석결과는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었다.

2.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

1) 거주 유형

중국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거주 유형은 소규모 사설 고아원 거주, 가족단위 거주, 그리고 산속 보호처 거주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1) 소규모 사설 고아원 거주: A 고아원의 예

부모와 이별한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중국인 집에 입양되지 않으면,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소위 꽃제비라 불리는, 혼자 떠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런 청소년들을 마주치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중국 사회에도 산업화, 도시화 바람이 불고, 조선족 사회에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 대처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현지 고아들도 증가추세에 있다. 게다가 북한이탈 여성들 중에는 중국에서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후 홀로 남한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늘어나자 이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정부나 시차원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고아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개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연구자들이 방문한 A고아원도 이러한 사설 고아원 중의 하나였다. 이곳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밀리에 운영되는 곳도 아니었다. 공안이나 주변에서는 모두 이곳에서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 그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고아들이 모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아닌 조선족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 고아원은 기독교 신자인 50대 여성 조선족의 작은 가정집 내에 있었으며, 이 여성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정신지체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설고아원의 운영자가 되었다. 면접 당시 그곳에는 3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아 약 1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조선족 아이들이나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운영자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출신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혹시라도 북한이탈 청소년이 있다는 것이 발각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서로의 출신을 알아봤자 이득될 것이 없다는 것이 운영자의 말이었다.

이곳은 생활비 일부분 등 부분적으로 NGO 활동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곳을 지원하는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약 200여명에게 중국 현지에 적응하여 생활해 나갈 것을 우선책으로 삼아 교육, 의료 및 의약품,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A 고아원에 대한 지원도 그러한 활동의 일부였다.

(2) 가족단위 거주

또 다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거주유형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고아원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중국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체류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족들은 교회나 현지 활동단체의 도움으로 조선족 가정에 얹혀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교회나 활동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미 현지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 단위라 하더라도 양친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함께 있으면 공안에게 잡힐 위험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나이 어린 자녀들은 소규모 보호시설에 맡겨지고 부모는 각자 돈벌이를 하러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부부와 자녀들 모두 중국에 있는 경우는 다행인 축에 속하였다. 대부분은 북한에서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후 어머니가 중국으로 건너와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과 재혼하여 북한에 남아있던 자녀들을 불러들이거나,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와 체류하는 경우였다.

자녀를 데리고 중국에 체류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북한에서의 오랜 기간에 따른 후유증, 탈북과정에서의 사고 및 수감생활, 불안정한 중국생활에서 오는 불안과 어려움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었다. 또한 대개는 나이 어린 자녀만큼 중국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언어 숙달이 빠르지 않아 자녀들의 교육이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병들고 무능한 어머니라도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커다란 심리적 위안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3) 산속 보호처 거주

현지 활동가의 말을 빌리면, 산속 보호처는 주로 시골 마을 산속으로 깊이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현재 연변 지역에 산속 보호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과거에 비해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다. 보호처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현지 활동가의 진술에 따르면 면접 당시 한 보호처에는 약 16명 정도의 개인과 가족들이 기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십대 청소년 한명, 이십대 초반의 청년 여러명과 중년의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숙소를 따로 만들어 생활하고 있으나 젊은 남녀 사이에 서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에게는 현지 활동단체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거나 주변 농가의 일손을 거들며 생활하고 있었다.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였다. 이곳에 머무는 청소년의 경우는 성경 공부가 이들이 받는 교육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다.

2) 주요 특성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보이는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유목화하였다. 또한 피면접자들의 경험과 문제점을 이들의 언어로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사기록에서 관련 부분을 부분적으로 발췌, 인용하였다.

(1) 신체발육 및 건강상의 문제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김예영, 2005; 김윤영, 2006; 박순영, 2006; 윤여상, 2003; 장남수 외, 2000)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신체적 왜소 및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에 대해 꾸준히 보고해 왔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본 연구자들은 피면접자들의 외모에서 이들의 신체발육이 부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주나 은향이의 경우는 둘 다 17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50센티 전후의 키에 중국 또래들보다 4살 정도는 더 어려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 보람이도 14살이지만 10~12세 정도로 어려 보였고, 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2차 성징이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람이는 다행히도 현재 중국에서 현지 활동단체가 공급해 주는 영양제를 먹고 있어 신체발육이 좀 더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접자: (북쪽에 있을 때) 하루 세끼 다 먹었어?

혜진: 대체로 아침은 안 먹었습니다.

면접자: 아침은 굶고, 점심하고 저녁은 그래도 웬만큼 차려서? 이밥 먹었어? 아니면 잡곡밥?

혜진: 어머니가 하는 대로 이밥이면 이밥, 잡곡이면 잡곡.

면접자: 친구들에 비하면 잘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혜진: 네. (중략) 나보다도 위의 나이들이 못 먹어서 나보다 다 작으니까.

면접자: 그치. 작아. 제일 컸지?

혜진: 약하고 그래서 엄마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6개월 동안 무슨 약 먹이면…….

면접자: 무슨 약이야?

혜진: 키 크게 하는 약이래요. (혜진, 17세)

반면, 17살 혜진이는 또래에 비해 키가 큰 편이었다. 혜진이는 자신이 북한에서는 평균키 이상이며, 북한의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자신보다 키가 작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열악함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신체 발육이 더딘 것 이외에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혜진: 손에 껍질이 자꾸 벗겨지고.

면접자: 습진이…….

혜진: 습진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고..

면접자: 손바닥?

혜진: 네.

면접자: 지금도 그래?

혜진: 네.

면접자: 약 바르는 것 있나?

혜진: 약 안 바르고 손이 계절이 바뀔 때는 손이 심해졌다가 계절이 끝나면 좀 아물다가.

(중략)

면접자: 그게 습진 종류일거야. 그게 습진이나 곰팡이…….

혜진: 갯병 그런 건데…….

면접자: 갯병이 뭐야?

혜진: 껍질 벗겨지는 거. (북쪽에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고. 고기 못 먹으면 생기는 거라고. (혜진, 17세)

북한에 있을 때 비교적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적어 신체발육이 양호했던 혜진이조차도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 이유로 영양 부족을 들고 있었다. 한편 성철이와 성남이 형제는 최근 중국에서 백혈병을 앓았던 큰 형을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야 했다. 이들을 지원했던 단체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큰 형에게 필요했던 지속적인 수혈, 의약품, 수술 등을 대줄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성철은 한때 세상과 지원 단체에 대한 원망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극복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성철, 성남 형제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도 지병으로 약을 달고 사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들 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면접자: 어머니는 어디 일하시나 지금?

보람: 지금 아파서 일 안합니다.

면접자: 어디 편찮으시다 그랬나?

보람: 예.

면접자: 어디? 신장? 위?

보람: 예. (보람, 15세)

면접자: 여기 와가지고서는 어머니가 어디어디 편찮으신 거야? 그건 더 잘 아시겠네.

참관자: 위. 위가 아파서. 감기 걸려서 애(혜진)가 약도 타가고.

혜진: 그리고 심장하고 신장. (중략)신장 아프니까 허리 아프고.

면접자: 거기(교화소) 들어가기 전에는 원래 건강했었나? 거기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게 바뀐 거야?

혜진: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나았는데…….(중략) 하루에 (알약을) 12알씩 먹고…….

면접자: 지금도 그래요?

혜진: 네. (혜진, 17세)

보람이 어머니와 혜진이 어머니 역시 몸이 좋지 않았다. 보람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혜진이 어머니의 경우는 과거 탈북 후 중국에서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구속되어 교화소에 다녀온 이후로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졌다고 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은 모두 현지 활동단체의 의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나마 약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약품의 지급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지는 못하며,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되는 수도 많아 이들의 건강 문제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2) 가족의 해체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상당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였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들은 모두 탈북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 북한에서 이미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은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면접자: 어머니랑 둘만 왔어?

혜진: 네.

면접자: 다른 가족들은?

혜진: 없어요.

면접자: 아버지는?

혜진: 의사.

면접자: 거기서(북쪽에서)?

혜진: 네.

면접자: 돌아가셨어? 근데 왜 안 오셨어?

혜진: 어머니 아버지랑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17세, 혜진)

혜진이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지자 가정파탄을 경험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명화(18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명화는 어렸

을 적 북한에서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 후 중국으로 건너 온 어머니가 조선족과 재혼하여 명화를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경우였다. 명화 어머니와 계부는 사이가 무척 좋았으나 어머니가 결국 신분이 발각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후 계부는 술을 먹고 명화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명화는 그 폭력을 견딜 수가 없어 아버지 집을 나와 할머니(계부의 친모)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다 계부마저 사망하자 엄격히 따져 그 집의 혈연이 아닌 명화는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다.

혜진: 이모하고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면접자: 아버지가 왜 무서웠어? 이렇게 예쁜 딸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엄하셨나?

혜진: 네.

면접자: 아빠한테 맞아본 적 있어, 어렸을 때?

혜진: 커서도…….

면접자: 세계 맞았어?

혜진: 네.

면접자: 왜?

혜진: 어머니 이렇게 된 다음에 생활에 적용되니까, 내가 미워져서 그렇습니다. (중략) 남자들 뭐 그렇게 되면 자식들 미워지지 않을까? 어머니 그렇게 된 뒤로는 나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혜진, 17세)

가정파탄에 따른 부모의 폭력은 계부나 계모로부터만 받는 것은 아니다. 혜진이는 친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경우였다. 현지 활동가에 의하면 혜진이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 의사인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지자 어머니가 장삿길에 나섰다고 한다. 어머니는 중국을 오가는 장사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어 2년 여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와 이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아버지는 가정에 대한 불만을 혜진

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혜진이는 이로 인해 아버지를 무서워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혜진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부터 탈북까지 약 2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경험하였다.

면접자: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뭐가 있지?

송희: 엄마, 아빠 함께 있을 때요.

면접자: 가장 슬픈 기억은 뭐야?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

송희: 네.

면접자: 송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송희: 부모님들이 잘…….

면접자: 부모님들이 잘 계신가 걱정이지, 그치?

송희: 네.

면접자: 그럼, 매일 그 걱정하고 그래?

송희: 힘들 때 마다.

면접자: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야?

송희: 부모님들이 보고 싶을 때.

면접자: 어떨 때 보고 싶어?

송희: 힘들 때.

(중략)

면접자: 교회에서 기도 요청할 땐 무엇으로 했었어?

송희: 자유롭게, 엄마 아빠를 위하여. 꿈을 위하여. (송희, 14세)

송희는 탈북한 지 4년 쯤 되는 14살 소녀이다. 열두 살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했으나 부모님이 따로 돈 벌러 간다면서 송희를 어딘가에 맡겼다. 그곳에서 보호자인 기독교인 부부와 5명의 고아들과 함께 2년여를 지냈다. 그 후 같이 있던 언니들이 다 커서 같이 지내던 이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송희는 면접 당시 또 다른 조선족 기독교인

에게 맡겨진 지 겨우 4개월 정도된 상태였다. 그동안 송희는 아빠가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고 엄마는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을 보고 싶어 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헤어진 부모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사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조선족의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피면접자: 어제 둘이 여기에 있다가 갔어요. 엄마가 먼저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왔더라고요. 도시에서 심양으로 가서 남쪽(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자: 그렇게 가면 다른 아이들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피면접자: 뭐 그제 엄마가 가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가 하지요. (중략) 여기 있는 애들이 (엄마와) 연락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엄마랑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면접자: 왜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서요?

피면접자: 네.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엄마랑 가깝게 지내길 바라거든요. (중략)

면접자: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이 파탄되는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피면접자: 힘든 일이 많긴 해도 다 잊어 버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손찌검 당한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 마음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면 손버릇이 다 나빠요. 그런데 그것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들이 일을 해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시장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손버릇이 나쁘고 그러면 저런 거 키워서 정말 뭐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며칠씩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느라 안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조선족 현지 활동가, 50대)

그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부모에 대한 애정이 적으며,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탈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한다. 문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해체는 단지 몇 사람만의 경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이들에게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의 해체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행동까지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문제가 실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 와중에 한쪽 부모만이라도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생모가 중국에서 재혼(동거)하여 의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하였다.

면접자: 만아바이(계부)가 보람이한테 하시는 얘기는 뭐야? ‘숙제 했니?’ 이런 거?

보람: 예. 그리고 어쩔 땐 놀기도 합니다.

면접자: 뭐하고 놀아?

보람: 나한테 시집오라고 건드리고요.

면접자: 이렇게 툭 치면서?

보람: (무언가) 없어지면 그림 제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그리고 찾아냈다고 웃고 그림니다.

면접자: 재밌게 해주시는 거네?

보람: 예.

면접자: 그림, 자상한 편이시다, 엄하다, 무뚝뚝하다, 재미없다, 잘해준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어떻게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겠어?

보람: 그냥 재밌는 사람이다. (보람, 15세)

보람이의 가정은 생모가 중국에서 조선족과 재혼을 한 경우이다. 계부는 보람이 엄마의 병수발을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보람이도 잘 대해주어 보람이도 계부와와의 관계에서 큰 불만은 없어보였다. 그러나 보람이는 새아버지를 북쪽 표현인 훗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큰아버지를 뜻하는 만아버

지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보람이의 경우는 그나마 계부가 있어 보람이와 엄마의 보호막이 되어 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형태를 꾸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보람이는 다른 이들에 비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어 보였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면접자: 제일 슬펐던 기억이 뭐가 있어?

보람: 어머니가 없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데리고 학교도 가는데 나는 혼자 있어서.

면접자: 제일 기뻐던 기억은 뭐가 있어?

보람: 내 생일 지낼 때.

면접자: 몇 살 생일일 때?

보람: 9살 때. 그 때 어머니가 있었던 말입니다. (보람, 15세)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 보람이의 경우도 가장 슬펐던 기억으로 어머니가 없었던 것을, 가장 기뻐던 기억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생일을 떠올렸다. 이는 부모와의 이별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상처를 주었는지 보여준다. 혜진의 경우 역시 어머니와의 이별이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다.

면접자: (어머니가) 처음에 장사는 중국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 아니야. 그 안(북쪽)에서 하셨을 것 아니야.

혜진: 난 모르는데, 여기(중국) 왔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면접자: 어머니를 자주 못 뵈었겠네.

혜진: 네. 어렸을 때는 헤어져서 많이 살았습니다.

면접자: 엄마하고 헤어지고 살았을 때는, 아빠하고 살았고.

혜진: 네. 사실 이번에도 엄마가 안 데려올라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면접자: 이제 어머니하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싶어서.

혜진: 네.

면접자: 어머니는 혼자 오실 생각도 있으셨던 거야?

혜진: 혹시 나 데려오다가 잘못될까봐.

(중략)

면접자: 잠은 잘 자고?

혜진: 잠은 깊이 못 자고.

면접자: 왜?

혜진: 조그만 할 때 엄마랑 헤어져서 그런지 신경이 예민해서…….

(혜진, 17세)

혜진이는 현재 엄마와 함께 살고 있으나 아직도 면접 중에 어려서 경험했던 어머니와의 이별애기가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고 울음을 참느라 힘겨워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감옥 생활 시기부터 혜진이에게는 수면 장애가 생겼으며 이는 면접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한 번 헤어졌던 경험이 있는 이들은 또다시 헤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해 있을 수 있다. 혜진이의 수면 장애는 아마도 이러한 불안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내는 경우이거나 가족과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가정 내의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가뜩이나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있었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높은 수준의 불안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화 증상을 보였으며, 부모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왜곡된 인지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그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는 이들로 하여금 도벽과 같은 문제행동을 낳게 함으로써 사회의 부적응자로 전락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교육권의 박탈과 학습동기의 부재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중국에 건너와서도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한다. 연구자가 만난 송희는 유일하게 정규학교에 진학한 경우이다³⁶⁾.

면접자: 몇 월달 생이야?

송희: 12월 말일이요.

면접자: 억울하겠다. 괜히 한살 더 먹은 거잖아. 지금 무슨 학교 다녀?

송희: 소학교요.

참관자: 소학교 3학년이요. 같은 나이에 비해서 낮아요.

면접자: 그럼 원래는 몇 학년으로 가야하지? 중학교인가?

송희: 네.

면접자: 몇 학년부터 다닌 거야?

송희: 3학년 들어갈 때부터요.

면접자: 지금 처음 간 게 3학년이야?

송희: 네.

(중략)

면접자: (학교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이야?

송희: 여자 선생님.

면접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이지?

송희: 재미없어요.

면접자: 재미없어? 동생들이라서?

36) 현지 활동가들에 따르면, 2000년에도 돈을 써서(소학교의 경우 보통 중국화폐 2~3천 위안) 정규학교에 진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 검거 사례가 늘자 현재 한족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희: 네.

면접자: 그렇겠다. 친한 친구는 누구 있어?

송희: 없어요. (송희, 14세)

송희는 면접당시 14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소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동급생들보다 서너 살 많아 학교생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록 재미없는 학교생활이지만 송희는 이마저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일부학교에서는 일정 금액을 내면³⁷⁾ 고등중학교까지 다닐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호구가 없으면 고등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이상 진학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호구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송희는 고등중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언제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열악하고 불안한 상황은 송희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더욱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명화는 9살 때부터 중국에서 유치원을 시작으로 정규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나 소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담임교사의 폭언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1학년 때 담임교사가 정해지면 그 담임교사 밑에서 6년을 내리 배운다고 한다. 그런데 그 담임교사가 ‘너는 시골에서 와서 그것 밖에 못하냐?’ 라거나 ‘시골에서는 좀 했다더니 이것도 못하냐?’ 는 식의 폭언으로 명화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고, 명화는 4학년부터 3년 동안 그 교사 밑에서 계속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사의 폭언에 앞서 명화의 어머니가 북한에 잡혀가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다 고아원으로 가게 된 상황이 명화의 학습의욕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명화의 낮은 학습의욕이 교사의 폭언이 빌미가 되어 학업중단이라는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37)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국의 학교는 공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학비가 면제이지만, 이들은 호구가 없으므로 학교에 일정 금액을 내고 편법으로 다니는 것이다.

다.

명화와 송희 이외에 연구자가 만난 다른 청소년들은 개인교습이나 소규모 과외를 통해 중국어를 중심으로 학습지도를 받고 있었다. 보람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 외국 활동단체의 주선으로 6개월 이상 개인교습을 받고 있었다.

면접자: 여기 그때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람: 네.

면접자: 얼마나 됐지, 공부한지가?

보람: 거의 일 년 되어갑니다.

(중략)

면접자: 지금 그래서 한어는 어느 정도해?

참관자: 지금 몇 학년 교과서 하지?

보람: 4학년.

(중략)

참관자: 수학은 몇 학년 꺼 하지?

보람: 수학은 5학년 꺼 합니다.

면접자: 그리고 두 가지만 하나? 영어는 안하고?

보람: 선생님이 영어 안 합니다. (보람, 15세)

보람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교사는 전직 소학교 교사출신으로 면접 당시 주로 중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조선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자습과 숙제를 내주며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단계를 높여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시험문제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에서 현직 소학교 교사에게 부탁하여 별도로 준비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직 교사 출신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긴 하지만 활동단체로부터 일정한 수고비를 받고 있으니 이들에게는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위험하긴 해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배울 길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보람을 느

끼고 있다고도 하였다.

보람이의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에서는 보람이와 같이 개인교습을 받았던 이들이 모두 17명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그만두고, 6개월이 넘도록 하는 경우는 보람이가 유일하다고 하였다. 보람이가 비교적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안정된 가정³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로서의 불안정한 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국어 이외의 다른 과목에는 학습동기도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향이(17세)의 경우도 개인집을 사설학원으로 쓰는 곳에서 한어, 영어, 수학을 배우고 있고, 그 중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과정에서 그런 것은 배워서 뭐하냐는 식의 심드렁한 얼굴 표정을 지어보임으로써 학습동기가 낮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보이는 학습동기의 저하는 탈북 이전, 즉 북한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명화의 경우는 중국으로 건너 온 9살에야 비로소 정규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면접자: 4학년까지 다녔으면 언제 파한거야? 오기 전까지 학교 다니다가?

혜진: 아니요. 오기 전에 학교 안 다니고.

면접자: 4학년이니까 인민반 마치고 고중 4학년까지 있다가 2년 동안 못 다녔어?

혜진: 네.

면접자: 왜 2년을 못 다녔었어?

혜진: 집 사정이 관련되서……. (혜진, 17세)

혜진이의 경우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북한에서부터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이들의 학습능력이나 동기가 선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38) 앞에서 서술했듯이 보람이는 친어머니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보람이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계부도 있다.

아니다.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오히려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거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우도 있었다.

면접자: (선생님이) 혜진이를 이뻐하셨네. 그 학교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나?

혜진: 일중학교니까. 10대.

면접자: 일 중학교? 일중학교가 최고 잘하는 학생들 모이는 곳?

혜진: 네.

(중략)

면접자: 근데 2년간 안 다녔으면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나오라고 그랬었을 것 같아.

혜진: 네. 근데 내가 안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중략)

면접자: 그래도 공부를 4학년 때까지 잘했으니까. 졸업시험은 그러면?

혜진: 보통 우등, 최우등 이렇게 나누는데…….

면접자: 뭐로 했어?

혜진: 최우등 했습니다.

면접자: 혼자 독학해서?

혜진: 네. (중략) 김일성종합대학 갈라고 했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됐는데 발전도 못하고. (중략) 시험으론 쳐서 붙을 수 있었다고 해도 김일성종합대학이라면 모든 데서, 경제도 완벽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못 돼서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혜진, 17세)

혜진이의 경우는 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학교의 배려로 치렀던 졸업시험에서 최우등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마저 북한 최고의 대학에 추천해 줄 용의를 보일 정도로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였었다.

면접자: 지금도 축구해?

보람: 지금은 많이 안합니다.

면접자: 00시에 있을 때 잘했어? 여학생들도 축구를 그렇게 해?

보람: 예. 경기 나갔었습니다. 00시에서 일등 했습니다.

(중략)

면접자: 공부 잘했지? 00시에서도 공부 잘했지?

보람: 소학교 때는 그래도 최우등을 하고요. (중략) (중학교 때는)
우등했습니다.

(중략)

면접자: 오! (인민학교에서) 뭐 반장 회장 같은 것도 했어?

보람: 회장은 안하고 그 학교 책임지는 책임자는 했습니다.

면접자: 뭐라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람: 거기선 단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면접자: 단위위원장이면 학급에서 제일 쎈 거네?

보람: 예.

(중략)

면접자: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보람이는 학급을 책임졌고.

보람: 예. 그게 네 개 반에 한명씩 있단 말입니다. (보람, 15세)

보람이도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던 경우였다. 보람이는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간부일로 선생님에게 인정도 받았고, 축구경기에 나가 일등도 했었다며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열악한 생활환경이 이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고 학습동기를 떨어뜨리도록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의 상실은 궁극적으로 이들 미래를 막게 된다. 이들이 혹시라도 호구를 얻게 되거나 남한에 정착하게 되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하더라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 정규 교육을 마친 북한이탈 성인과 그 시기에 자라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교육 기회의 박탈이 이들에게 미

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북한이탈 성인들은 대체로 예체능 면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학습 능력과 열의가 높다. 반면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은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입시 교육을 통해 불균형한 학습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육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예: 정진웅, 2006). 따라서 이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기회의 박탈은 이후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4) 자유의 억압과 불안

중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며, 중국 공안에 잡힐 경우에는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피면접자들은 일상생활이나 행동에서 많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자유도 억압된 상태도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자: 지금 집에만 있지?

혜진: 네.

면접자: 밖에는 못 나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혜진: 네. 말도 안 통하고.

면접자: 나도 말 안 통해.

혜진: 나는 돌아다니다 걸리면……. (혜진, 17세)

면접자: 댄 데서 2년간 있다가.. 그 땐 어디 나다니고 못 했겠다. 주로 집에만 있었네. 근데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 응?

송희: …….

면접자: 꼭 그렇진 않아? 불안한 게 뭐야?

송희: 누군가 캐물을까봐. 캐묻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면접자: 캐묻는 거. 지금 선생님처럼 캐묻는 거? (송희, 14세)

혜진이는 중국으로 넘어온 지 한 달이 채 안된 경우였다. 중국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돌아다니다 공안에게 걸릴까봐 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혜진이와 달리 송희는 중국에 몇 년씩 체류하고 있는 경우였지만 행동이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무척 불안해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면접자: 혹시 학교에서 집에 오고 가다가 ‘애야, 너 어디서 왔니?’

누가 물어 본 적 있어? 그런 적은 없는데?

송희: 네. 선생님이 ‘아빠, 엄마 이름 뭐야?’

면접자: 선생님이 ‘아빠, 엄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럼, 누굴 대?

송희: 마다메(피면접자의 현재 보호자)가 시켜준 이름을 대요.

면접자: 생년월일도 12살로 맞춰서 외웠어야 되네?

송희: 네. (송희, 14세)

송희는 북한이탈 청소년으로는 극히 드물게 중국에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였다. 현지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현재 송희가 다니는 학교는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다니는 곳으로, 마침 학교에 조선어반이 있어 그 반에서 1년 쯤 공부중이라고 하였다. 송희의 보호자는 14살인 송희를 급우들보다 2살 정도만 많게 12살로 낮추어 소학교 3학년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송희의 보호자는 송희의 신분이 탄로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송희의 가족관계 등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 송희에게 그대로 외워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은신처에서만 지내는 경우, 그리고 송희와 같이 바깥 활동을 하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야 하는 경우 모두 그 불안감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 보였다. 자칫하면 작은 실수로 인하여 신분이 발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철이는 어려서부터 중국생활을 했고 나이(21세)도 있어서 그런지 위장을 잘하고 있는 경우에 속하였다. 성철이는 현지인들에게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속이며, 비교적 많은 현지인들과 친분을 나누고 함께

피씨방을 드나들면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송희와 성철이는 겉으로 볼 때에는 신분위장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신분위장으로 인해 실제 자신과 사회에 내보이는 자신에 대한 괴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송희와 성철이의 경우는 정체성 형성의 문제와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면접자: 특별히 기도요청하고 싶은 거 있어?

송희: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면접자: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 교회에서 기도 요청할 땐 무엇으로 했었어?

송희: 자유롭게, 엄마 아빠를 위하여.

면접자: 자유롭게, 엄마 아빠를 위하여.

송희: 꿈을 위하여. (송희, 14세)

면접자: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동료도 여기서 몇 번 잡혔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전에 잡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중략)

보람: 그래서 어머니 여기(중국) 진저리난다고 했습니다.

면접자: 진저리난다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다고?

보람: 예. 한국 땅엔 자유도 있고 그래서. (보람, 15세)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 이들은 자유롭게 다니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희망하였다. 송희는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싶다고 대답하였고, 보람이는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다. 은주(17세) 역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에 꼭 가고

싶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세계 어느 곳이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었다. 이 같은 응답은 모두 자유에 대한 이들의 소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람: 그리고 여기(중국)에 있는 것도 불안하고.

면접자: 여기 불안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불안하다고 그랬어?

보람: 아니, 우리가 한국 갈려고 떠났는데 우리가 같이 가던 사람이 잡혀 가서 우리도 무서워서 돌아왔습니다.

면접자: 언제 그랬어?

보람: 몇 일전 전입니다.

면접자: 엄마하고 둘만 먼저 일단 갈려고?

보람: 나는 그저 한국 가는 게 제일 소원인데요. 나는 여기서 더 살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말을 몰라서 아니 됩니다.

면접자: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 한국 갈려고 역전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붙잡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보람: 우리도 또 잡힐까 봐.

(중략)

보람: 경찰만 보면 그저 막 마음이 후덜후덜 합니다. (보람, 15세)

때로는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잡혔다는 소식에 불안이 더욱 고조되기도 하였다. 보람이는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다.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노출될 가능성 이상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과 환경으로부터 파생된 불안감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만나 본 피면접자들은 하나같이 직·간접적으로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마음 놓고 길거리를 활보한 적도 드물다고 하였고, 낯선 사람은 일단 경계부터 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적 사항을 숙여서 말하며, 목소리도 되도록 작게 내었다. 면접 중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짧게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듯 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이들이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또래관계 및 경험의 제한

신분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곳에서는 사회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참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청소년기이지만 마음껏 활동할 수가 없다보니 이들의 경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면접자: 명화는 여기서 친한 친구 있어?

명화: 나가지 않아서 없어요. (명화, 18세)

면접자: 아……. (생일에) 친구들은 불러서 하지 못하고?

보람: 네. 여기 친구 없으니까.

면접자: 거기(북한)서는?

보람: 했습니다.

(중략)

면접자: 운동 뭐해?

보람: 갔다 왔다 달리기도 하고.

면접자: 달리기도 해?

보람: 예.

면접자: 혼자?

보람: 예. 그리고 아는 동무도 하나 있습니다.

면접자: 동무 있어?

보람: 예.

면접자: 몇 살이야?

보람: 비슷합니다.

면접자: 남자애야?

보람: 여잡니다.

면접자: 그 둘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놀러가고?

보람: 예. (보람, 15세)

명화는 밖에 나가지 않으니 친구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보람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람이는 면접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지만 하루 일과는 되도록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보내야 했다.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소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거리를 어슬렁거리면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네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보람이는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이다. 보람이는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 또래관계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면접 당시에는 동네친구가 하나 있어 함께 밖에서 달리고 놀기도 한다고 하였다. 보람이에게는 동네 친구 외에 중국어를 가르쳐주는 분의 손녀딸도 있었다. 그는 보람이보다 어리지만, 보람이는 동생이자 친구로 그와 잘 지내고 있었다. 그 전에는 함께 중국어를 배우던 북한 출신의 언니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없다고 하였다. 면접 당시 보람이에게 친구라고는 동네친구 한 명과 중국어 선생님의 손녀딸이 전부인 것 같았다. 보람이는 북한에서 학교에 다닐 때에는 친구가 많았고 지금도 가끔씩 그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면접자: (학교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이야?

송희: 여자 선생님.

면접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이지?

송희: 재미없어요.

면접자: 재미없어? 동생들이라서?

송희: 네.

면접자: 그렇겠다. 친한 친구는 누구 있어?

송희: 없어요.

면접자: 지금 있는 집에서는?

송희: 동생.

면접자: 예쁜 동생 있어? 몇 살인데?

송희: 1학년. (송희, 14세)

요행히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라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하고 동급생들도 자신보다 몇 살씩 어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친구다운 친구를 사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위의 면접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송희의 경우도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어린 동급생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린 동급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학교를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대안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길은배, 문성호 2003; 이기영, 2002).

현지 활동가 및 단체들의 도움으로 개인교습을 받는 경우, 같은 북쪽 출신끼리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설 고아원과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경우, 그나마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몇몇 모여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또래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찾기가 힘들었다.

면접자: 아이들끼리 싸우지는 않나요?

활동가: 안 싸워요. 아이들끼리 막 울면서 싸운 적이 크게 없어요.

(중략) 그리고 그런 아이들(여기에 온 나이 든 아이들)은 자기의 신세를 알아놓으니까는 좀 아이들이 잘하고 되는데요…….

(중략)

면접자: 이이들이 모여 있으면 다툼도 일어나고 뜯어 말리느라 고생하시고 어떤 아이들은 또 버릇이 나빠져 가지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겠어요.

활동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크게 싸우거나 하진 않아요.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싸우다가도 금세 풀어져요. (중략) 항상 튼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려면

(싸우고 속 썩으려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은 겁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안가겠다고 하니까 아.. 하느님이 도와주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도 해나가고 있어요. (조선족 현지 활동가, 50대)

면접자가 방문한 한 사설 고아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그 곳 아이들은 머물다 떠나기를 반복하는데, 아이들끼리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서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차피 서로 불안한 처지이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곳의 규율을 따라야만 그 곳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막 울면서 크게 싸우는 일도 드물다고 하였다.

면접자: 대학생이 와서 자원봉사를 해요?

활동가: 네.

(중략)

면접자: 그럼 오는 학생들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 많이 바뀌죠.

면접자: 계속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게 하는 게.. 자원봉사 인력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활동가: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주는 임무같은 게 있잖아요. 방학 때나 설에. (중략)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주말에 동아리 활동으로 주마다 한 번씩 나가요. 그거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중략)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중략) 생각하고 애들이 기억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말을 믿고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렇게(또 온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는 안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상처 받고 그러죠. (중략) 애들이 되게 순진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받는

애들이 굉장히 상처 받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절대 약속하지 말라고 해요. (조선족 현지 활동가, 20대)

가끔씩 방학을 이용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 역시 일회적인 것을 넘어 지속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현지 활동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그들과의 관계에서 큰 기대를 갖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은주와 은향이는 비밀 보호처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이들 역시 또래관계 및 경험의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성장기를 수년째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호처에 기거하며 교회와 학원에 가는 것이 외출의 거의 전부였다. 이따금씩 시내로 나가보기도 하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다른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이 매우 드물고, 보호처는 그야말로 신변 보호의 기능 이상의 내용과 형식을 제공할 수 없으니 이들의 경험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면접자: 송희가 그런(성경) 공부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송희: 탄 데 있을 때.

면접자: 탄 데 있을 때 2년 간 배웠어?

송희: 네.

(중략)

면접자: 탄 데 있을 때는 성경공부만 했어?

송희: 성경공부도 하고 다른 공부도 했어요.

면접자: 또 무슨 공부했어?

송희: 한어.

면접자: 영어공부도 했어?

송희: 아니요.

면접자: 영어공부는 안하고, 수학공부도 했어?

송희: 네.

면접자: 한어하고 수학, 성경?

송희: 네. 어문(조선어).

면접자: 어문공부. (중략) 그럼 성경공부는 몇 시간씩 했어?

송희: 반시간.

면접자: 하루에?

송희: 네.

면접자: 많이 안 했네.

송희: 반시간씩 하고 우리들은 또 책을 보고 암송하고.

면접자: 오, 그럼 송희가 책 많이 봤겠네. 몇 번 읽었어, 성경책?

송희: 세 번.

(중략)

면접자: 지금 잠언 외울 줄 알고, 시편 조금 못 외운다 했지만 거의 다 외우고, 요한복음 외우고.

송희: 골로새서.

면접자: 로마서도 외워?

송희: 네. (송희, 14세)

중국생활에서 제한적이거나 이들이 경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은 기독교 관련 경험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송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송희는 2년간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었고 면접자 앞에서 그 중 몇 군데를 암송해 보이기도 하였다.

면접자: 성경책 쓰기 많이 썼어? 하루에 몇 장씩 써?

보람: 그 전에는 10장씩 썼습니다. 책으로 10장, 성경책으로 하면 8장 정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씁니다.

면접자: 보람이는?

보람: 나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읽기는 좋아하는데 그전에 많이 해도 지금은 연필만 보면 막 짜증납니다.

(중략)

면접자: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쓴다고? 성경말씀 엄마랑 같이? 만나바이도?

보람: 중국 사람은 아니 쓰게 한답니다.

면접자: 그건 쓴 거 누가 가져가? 아까 그 선생님이 가져가?

보람: 아니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쓴 걸 받아서 한국 사람한테 줘서 거기서 또 돈 받아서 우리 줍니다.

면접자: 한 장에 얼마지?

보람: 일 원입니다.

면접자: 보람이꺼도 한 장에 일 원이고 어머니꺼도 한 장에 일 원이
고?

보람: 근데 그게 쓰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쓴 게 하루 다섯 시간.(중략) 우리 어머니는 계속 앉아서 씁니다. 이틀에 한 권.

면접자: 한 권?

보람: 70장. (보람, 15세)

보람이는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어머니와 함께 성경책 쓰기를 하고 있었다. 짐작컨대 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주고 성경책 베끼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았다. 보람이는 성경 베끼는 일을 아주 싫어하였다.

앞으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은주와 은향이는 ‘하나님의 일꾼’ 이 되겠다고 응답하였다. 성철이 역시 남한으로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고자 함’ 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이 만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현지 활동가들은 모두 기독교(개신교)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현지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 만큼 이곳 보호처에서 기독교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하지만 현지 활동가도 인정했듯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성경공부만큼이나 인지발달 프로그램, 기초학습 프로그램, 재능개발 프로그램 등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다양한 활동경험은 청소년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성경공부와 신앙생활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경험의 제한은

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는 이들이 보다 균형적으로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꿈과 현실간의 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면접자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꿈은 현재 이들이 처한 상황과는 큰 괴리가 있었다.

면접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송희: 제 꿈이요?

면접자: 응.

송희: 의사요.

면접자: 의사가 되는 거야.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송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의사돼서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면접자: 그동안에 병든 사람들 많이 봤어?

송희: 저 어렸을 때 많이 앓았어요. (송희, 14세)

면접자: 명화,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니?

명화: 가수.

면접자: 가수?

(중략)

면접자: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해?

명화: SG 워너비. (명화, 18세)

혜진: 여자가 변호사로 나오는 마이 걸.

면접자: 한국 꺼?

혜진: 네. 여자 변호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더

라고요.

면접자: 변호사?

혜진: 네. 영화배우도 하고 싶고.

면접자: 영화배우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하고 싶고. 또?

혜진: 의사도 하고 싶고….

면접자: 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네?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혜진: 정의를 이루는 사람.

면접자: ‘정의롭다’ 라는 게 뭐야?

혜진: 다른 사람이란 관계없이 곳곳이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에서…….

면접자: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혜진: 공부.

면접자: 일단 공부를 하고 싶다.

혜진: 한어하고 영어, 일어. (혜진, 17세)

14살 송희는 어릴 때 많이 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노래부르기를 좋아하고 또 실제로 노래도 꽤 잘 부르는 18살 명화는 가수가 꿈이다. 북한에 있을 때 공부를 꽤 잘 했던 17살 혜진이는 현재는 어학 공부를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에서 정의를 이루는 여자 변호사나 영화배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이들의 꿈은 이들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다. 의사가 되고 싶은 송희는 중국생활을 시작한 지 6년째로 면접 당시 부모님의 생사도 모른 채 조선족 기독교인 집에서 다른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호구가 없기 때문에 송희가 고등중학교 이상 진학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명화도 가수가 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혹시 안다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그 길이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혜진

이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였다. 이들이 운이 좋다면 독지가(대개는 재외 한인교포 기독교(개신교) 장로나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독지가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들의 삶은 여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이들은 성년이 되면 그들의 중국어 수준에 따라 식당 등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다가 현지인과 결혼하거나 브로커를 직접 사서 한국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현지의 한 활동가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생활을 위해 현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구도 없는 북한이탈 여성과 결혼하는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최하위층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열악한 삶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이 다행히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온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빚을 지고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을 적용해 볼 때 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자: 처음에 그런 거(남한 TV 드라마) 볼 때 어떤 생각 들었어?

혜진: 재미있다고보다는 우리 수준하고 그 수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줌…….

면접자: 서로 너무 틀리구나, 이런 느낌?

혜진: 네. 너무나도 천지 차이니까.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깡통 뒤지고 이런 거 보여주는데 실제로 영화로 나오는 건 그렇지 않으니까.

면접자: 영화잖아.

혜진: 영화래도 실제로 약간 나온 거니까. (혜진, 17세)

한류열풍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한국 TV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TV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혜진이는 처음 남한 TV 프로그램을 접하고는 자신의 북쪽에서 알던 남한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문화충격을 겪은 듯 보였다. 그러나 TV를 통해 나타난 화려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모습이 실제 한국 모습의 전부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실제 한국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환상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암담한 현실에서 꿈마저 없다면 이들의 삶은 한결 더 고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꿈은 훗날 이들에게 더 큰 좌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TV를 통해서만 남한생활을 접하는 이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과 꿈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소결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이들의 상황은 문헌연구에서 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건강 및 발육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해체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제3국에서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교습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학습동기는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이들은 불법체류와 발각시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결과 매우 제한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꿈과 이들이 처한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거에 비해 중국생활이 나아진 점도 있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꽃제비라 불리는 청소년들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지원단체를 통해 기본적인 의약품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의 과외활동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상당부분이 박탈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리의 박탈로 인해 형성된 문제들은 이들이 성인기에 이르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서 관찰된 문제의 원인은 한마디로 모두 북한의 경제난과 제3국 불법체류로 인해 형성된 불안정한 신분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신체발육의 부진, 가족 해체의 문제, 학습기회의 상실 등은 북한의 경제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중국에서의 생활 역시 도피와 은둔으로 인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중국생활은 불법체류로 인해 그 연령대에 맞는 보다 자유로운 활동과 또래관계, 다양한 경험들을 빼앗아 갔고 불안을 고조시켰다. 특히 도피생활에서 오는 불안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내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겹쳐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이들에게는 신체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지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이들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 불안감 감소를 위한 지원, 교육기회의 제공 및 학습동기 부여,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 제공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불안감은 불안정한 신분 뿐 아니라 부모와의 이별 경험과 같은 심리적 외상 등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인 만큼 방치될 경우 만성적인 심리적 어려움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며, 그 같은 경우에는 이후 신분이

안정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설 고아원 등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이별한 것에 이어 그 곳에서도 언제 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잠재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습동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들의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V. 난민 청소년에 대한 외국사례연구: 난민 청소년의 제3국 체류 경험과 건강 및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1.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 탈출과 난민
캠프 체류 경험
2.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3. 난민 청소년의 교육문제와 사회적응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IV. 난민 청소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난민 청소년의 제3국 체류 경험과 건강 및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을 결심한 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월경하여 일정 기간 체류를 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고, 국내에서 사회적응을 하는 과정들은 서로가 긴밀히 연결된 과정들이다(윤인진, 2000). 따라서 탈북 이전 단계의 요인들, 제3국 체류단계의 요인들, 국내 입국과 정착단계의 요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켜 그것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의 경험이 결과적으로 사회적응의 유형과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문화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3국 체류 실태 조사연구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문제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청소년, 특히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난민 청소년의 제3국 체류 경험과 실태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모국으로부터의 탈출, 제3국 난민 캠프에서의 체류, 난민 수용국으로의 입국, 수용국에서의 사회적응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성인 난민과 달리 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주국에서의 교육 획득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적응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난민에게 있어서 건강은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난민 청소년의 건강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요약하자면, 본 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서 난민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 제3국에서의 체류, 국내 입국 및 정착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난민들의 자국탈출 과정의 예로써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으로부터의 탈출과

제3국의 난민 캠프에서의 체류, 그리고 난민 수용국으로의 입국 및 적응에 관해 검토하였다. 둘째, 난민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문제의 실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외국의 난민 청소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얻게 된 정보와 정책적 함의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보호 및 적응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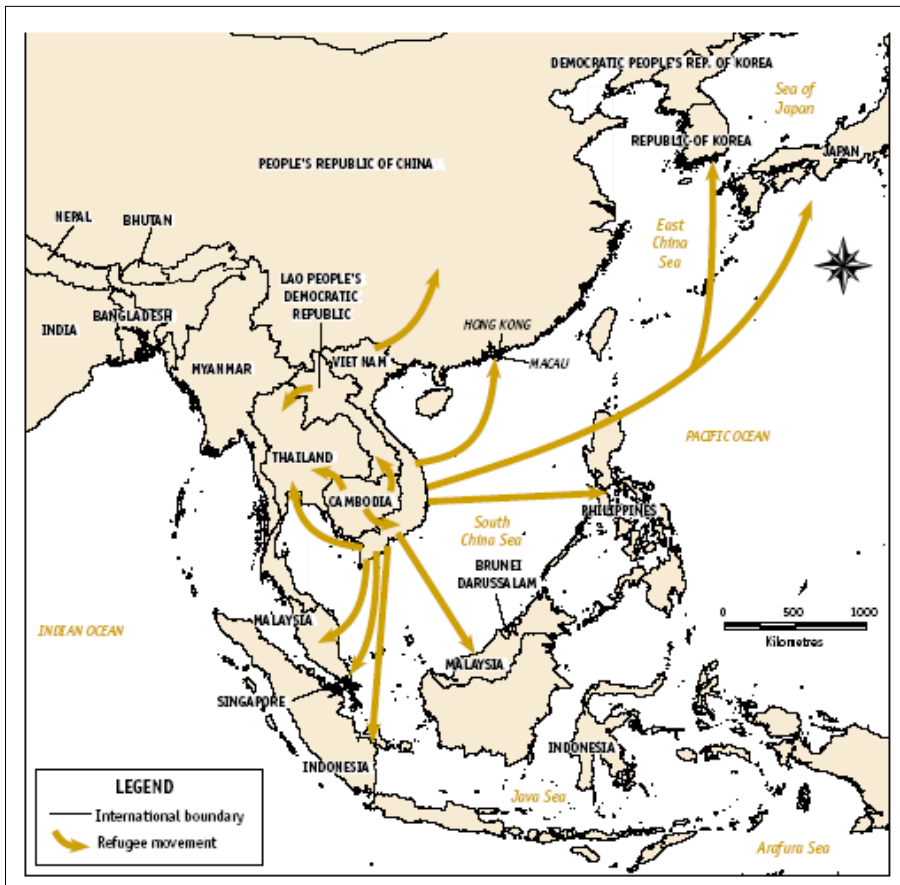
1.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 탈출과 난민 캠프 체류 경험

1) 인도차이나로부터의 탈출³⁹⁾

1975년에 인도차이나 3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이 공산화된 이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삼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모국을 탈출하였고([그림Ⅳ-1]), 이들 중 250만 명이 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50만 명이 모국으로 귀환하였다(UNHCR, 2001). ‘보트피플(boat people)’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소형 보트를 타고 공해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배가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되거나 절도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1975~78년 기간에 62,000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캠프에 수용되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Khmer Rouge)가 1975년 4월에 정권을 잡게 되면서 백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인들이 처형되거나 기아, 질병, 과로 등으로 사망하였고, 수만 명이 원거주지로부터 추방되었다. 1975년 5월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군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던 몽(Hmong)족은 다수집단인 라오스인들의 예상되는 보복을 피해서 1만 명가량이 인근 태국으로 월경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근 국가들([그림Ⅳ-2] 참조)의 부담과 반대도 증대하였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39)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모국으로부터의 탈출에 관한 내용은 UNHCR이 2001년에 발행한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의 4장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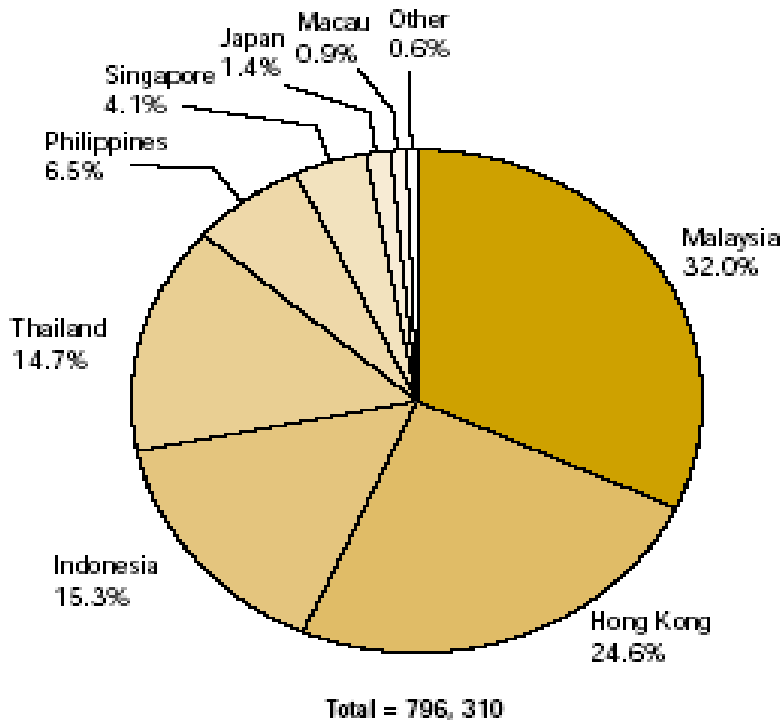


[그림 IV-1] 인도차이나 난민의 모국 탈출, 1975-95

출처: UNHCR. 2001. *The State of the World Refugees*, p. 80

정부는 보트피플을 태우고 입항하려는 선박들을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행동도 불사하였다. 한 예로 1978년 11월에 Hai Hong이라고 불리는 1,500톤급의 화물선이 2,500명의 보트피플을 싣고 와서 말레이시아의 Klang항에 입항하려고 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화물선을 공해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1975년 인도차이나 난민들의 모국 탈출이 시작되었을 때 주변국가 중



[그림 IV-2] 베트남 보트피플의 일시 보호처, 1975-95

출처: UNHCR. 2001. *The State of the World Refugees*, p. 89

어느 국가도 1951년 난민협약 또는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어떠한 국가도 보트피플에게 정주를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임시 체류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하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90일 이내에 정착 보증을 받지 못한 난민들에게는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자국의 해변에 정박하려는 선박들을 공해상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보트피플이 급격히 증가했던 1979년에는 공해상으로 떠밀린 수천 명의 보트피플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79년 7월에 세계 65개 국가들은 유엔 사

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차이나 난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난민들을 보호하고 재정주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합의 내용은 재정주(resettlement) 인원을 125,000명에서 260,000명으로 늘리고, 베트남은 불법 출국을 중단하는 대신 질서있는 출국을 장려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빠른 재정주를 위한 지역난민처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인도차이나 주변국들은 ‘일시 보호제(first asylum)’ 국가로서 난민들을 1차로 일정 기간 동안만 수용하는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재정주는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에 의해 베트남 보트피플을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행동은 중단되었다. 선진국들에 의한 난민들의 재정주는 가속화되어서 1979년 7월부터 1982년 7월까지 3년 동안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20여개의 국가들이 623,800명의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여 재정주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과 “질서있는 출국 프로그램(Orderly Departure Program)”을 체결하여 매년 일정 수의 베트남 난민이 질서있게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베트남 보트피플은 줄어들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Wain(1981: 83)에 따르면 보트피플의 약 10%가 바다에서 실종, 익사, 탈수로 인한 사망,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중반에는 베트남 난민들이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의 동쪽 해안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자 태국 정부는 난민들을 태운 선박들을 제지하고 해상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만 명의 베트남 난민들이 베트남 북쪽으로부터 중국 남부를 거쳐 홍콩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88년에는 18,000명의 보트피플이 홍콩에 입국하였다. 이에 홍콩 정부는 1988년 6월 이후로 입국하는 베트남 난민들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심사를 통해 난민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공포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1989년 5월부터 자국에 입국하는 보트피플을 말레이시아로 돌려보내기 시작하였다(UNHCR, 2001: 88).

사태가 악화되자 1989년 6월에 제네바에서 제2차 인도차이나 난민 국

제회의가 개최되어 “종합행동계획(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라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 합의에서는 1979년에 체결한 합의내용인 난민신청자의 일시 보호제(first asylum), 불법 출국 저지와 합법 출국 장려, 제3국 재정주의 원칙에 덧붙여서 난민지위 확정절차의 수립과 난민신청이 기각된 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원칙을 새로 추가하였다. UNHCR과 베트남은 제2차 제네바 회의가 있기 7개월 전인 1988년 12월에 상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베트남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고, “질서있는 출국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UNHCR이 귀환자 신변을 모니터하고 이들의 사회 재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989년 6월에는 미국과 베트남 정부 간에 베트남 정치범과 가족들의 이민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의해 1991년에 86,451명이 출국하였고 이 중에는 21,500명의 재교육 캠프 억류자와 그 가족, 18,000명의 혼혈인 자녀(Amerasian, 미군 남성과 베트남 여성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포함되었다.

한편 8년 동안 진행된 종합행동계획에 의해 베트남으로 귀환한 난민들은 모두 109,000명이었다. UNHCR은 귀국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인당 240~36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베트남 정부에게는 수도시설, 교육, 인프라 건설을 위해 6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즈 공산정권의 잔혹한 통치를 피해 1975~78년 사이에 34,000명이 태국으로, 20,000명이 라오스로, 170,000명이 베트남으로 탈출하였다. 1979년 인도차이나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해 말부터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난민들이 태국 동쪽 국경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태국 정부는 자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었다. 1979년 6월 태국 군대는 42,000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을 검거하여 캄보디아의 험한 산악지역으로 추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뢰밭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UNHCR, 2001: 92).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79년 7월에 제1차 제네바 회의가 개최되었고 주변

국들이 태국에게 부가되는 압력을 줄이기로 동의하였다. 이때 채택된 방법이 “일시 보호제(first asylum)”였다. 일시 보호제의 원칙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 입국 및 체류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에 대해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난민을 대량으로 수용하는 국가로 하여금 재정주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대신 일차적 보호를 감당하게 하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부담 분담의 원칙인 것이다. 태국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여론에 부응하여 1979년 10월에 캄보디아 난민들에 대한 개방 정책을 채택하였다. UNHCR은 이에 대응하여 30만 명의 캄보디아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 초에는 1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난민들이 Khao-I-Dang 수용소에 거주하게 되었고, 1980년 3월에는 수용 인구가 1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UNHCR, 2001: 93).⁴⁰⁾

캄보디아 난민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난민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시되고 각별한 보호가 필요했던 집단은 바로 “무연고 미성년자들(unaccompanied minors)”이었다. 캄보디아 난민들이 1979년에 태국으로 월경할 때 이들 중 상당수가 18세 이하의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무연고 미성년자’ 또는 ‘이산 자녀(separated children)’로 불렸는데, 이들이 처한 상황이 복잡했고 그에 따라 이들의 문제해결 방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들 미성년자들의 상당수는 크메르 루즈 유소년대에 징집되어 복무한

40) 한국은 1975~95년 기간에 1,348명의 베트남 보트피플을 일시 보호 차원에서 수용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같은 기간에 한국의 8배에 해당하는 11,071명의 보트피플을 받아들였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라도 거주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난민들을 일차로 보호하고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적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전쟁의 와중에서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의 Redd Barna의 연구에 의해 이들 미성년자의 반수 가량은 부모와 사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을 부모와 결합시키기 위해 모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제3국으로 재정주하도록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둘러싸고 UNHCR와 NGO 간에 이견이 생겼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 것이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문제가정(dysfunctional family)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발적인 의도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가족 결합(family unity)’의 원칙과 ‘아동의 최선 이익’의 원칙이 상호 충돌하게 되고 어느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인가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1989년에 UNHCR은 어떤 해결책이 개별 무연고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정하기 위한 개별 일차 피난처 국가에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판정 과정은 지루하게 지체되었고 1990년 11월경에는 5,000명의 무연고 미성년자들이 모국으로의 귀환이나 제3국으로의 재정주나의 판정 여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들 중 1/3이 제3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모국으로 귀환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난민 캠프에 남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판정 절차가 미성년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난민 캠프에 머물게 하는 결과를 나왔던 것이다(UNHCR, 2001: 94).

2)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

난민에 관한 연구 중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이 덜 이루어진 분야가 바로 난민 캠프와 같은 제3국에서의 체류 경험에 관한 것이다. 난민 캠프에 관한 최소한 연구 중 Murphy(1955)의 연구는 난민 캠프의 생활에 대해서 유용한 분석과 범주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Murphy는 난민

캠프의 물리적 조건들은 캠프마다 다르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 난민 캠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로는 거주국 주민들로부터의 격리, 사생활의 결여, 인구과밀, 일상생활의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난민들은 의존감을 갖기 시작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으로 인해 통제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Bakis(1955)는 난민들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식의 주된 대상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다. 난민들은 캠프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통, 정신적 외상, 처벌, 중요한 타자의 상실과 같이 그들이 이미 겪은 것들 외에도 모국, 정체성, 이전 생활의 상실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걱정, 두려움, 좌절, 정서적 동요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난민들은 유아기 상태로 돌아가거나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무관심해지며, 무기력해지거나, 심지어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난민들은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조정하며 예측하는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Pfister-Ammende(1973)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난민 캠프에 관한 연구에서 난민 캠프들이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심대한 병리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난민들이 난민 캠프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고, 캠프의 규모를 축소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며,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창고가 아니라 밝고 사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참여를 통해 의존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어느 난민 캠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n과 Loveridge(1987)의 홍콩에 위치한 베트남 난민 캠프에 관한 연구는 문화 충격,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과 문화 조건, 정서 및 심리적 생활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Chan과 Loveridge는 Kunz(197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난민 캠프에서의 정신생활은 무인도 또는 목적지 없는 경유지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Kelly(1977)는 “기다림” 이

난민들 캠프 생활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난민들은 캠프 운영자들에 의해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되면서 캠프에서 소일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Transition to Nowhere란 제목을 가진 저서의 공동저자인 Liu, Lamanna, 그리고 Murata(1979)는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이 경험하는 파분함, 불확실성, 무기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난민들의 정신상태는 마치 당구공처럼 자체적인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의 힘들에 의해서 조정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리핀, 홍콩, 일본의 베트남 난민 캠프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를 수행한 Knudsen(1983)은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을 무의미, 불확실, 시간 낭비, 파분함과 수동성으로 특징지었다.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면서 미래에 대해 갖는 불확실하고 수동적인 감정은 Knudsen이 “림보(limbo, 망각의 구렁)”라고 부르는 정신적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난민들은 외부세계로부터 잊혀지고 거부당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Knudsen은 난민들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캠프가 운영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방식과 캠프에서 난민들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에 연유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난민캠프에서의 생활은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난민 캠프에 머무는 동안 난민들의 정신상태는 무력감, 불확실성, 수동성 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국들이 생겨났고, 이들 국가 중 많은 수가 내전, 독재 등의 혼란을 겪었으며, 이러한 혼란의 결과 중 하나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차이나 난민, 과테말라 난민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 청소년들은 낮은 연령과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뛰어나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성인 못지않게 많은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illock & Reyes, 1999; James, 1997). 난민청소년들은 외상, 폭력, 범죄, 언어차이, 가정해체와 같이 성인들도 경험하는 문제 외에도 교육, 정체성의 형성 등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하는 특별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신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난민 청소년들은 전쟁, 종교적 박해를 경험하였거나 위험상황에서의 도피, 극히 열악한 난민캠프에서의 체류 등 비극적이고 외상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죽음을 목격하거나 직접 고문 또는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고 가족구성원이 폭력에 의해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 해체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였으며 길고 지루한 난민 캠프에 머무르는 동안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난민 캠프 내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에 대응해야했고, 정착지에서는 불안해하는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특히 가족 없이 난민 캠프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이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Looney, 1979; 전우택, 2000에서 재인용). 이들은 또한 자신들과 친숙했던 모든 것을 상실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은 이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적응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Fantino & Colak, 2001; 박윤숙, 2005에서 재인용).

이들 난민 중 아동 및 청소년층이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제3국에서의 정착 이후 나타난 적응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난민 과정 중에 겪은 충격이 이후의 과정에

<표 IV-1> 난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연구의 유형화

미국, 서유럽 등 안정적인 제3국에 정착		난민촌 또는 인접국에 거주
개괄적인 상황 설명	* 전우택(2000)	* 곽해룡(2005a)
	* Gracey(2004)	* 백혜정 외(2006)
	* Eisenbruch(1988)	* Miller(1996)
		* Hick(2001)
		* 전우택의 연구 중 일부(2000)
정신적 외상에 초점	* Sack, Clarke, & Seeley (1996)	* Punamaki, Qouta, & El Sarraj (1997)

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 본 것이다.

한편 난민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주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다. 즉, 제3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유럽과 같은 안정된 사회로 이동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있고 또 다른 연구로는 모국과 인접한 국가의 난민 캠프 혹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상황을 토대로 한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런 기준에서 난민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표 IV-1>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난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연구를 미국 및 서유럽과 같이 안정된 사회로 이동한 경우와 난민 캠프 또는 인접국으로 이동한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에 개괄적인 상황 설명을 한 연구와 정신적 외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미국 및 서유럽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일반적으로 난민들의 정착 과정은 대개 복잡하고, 민감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Gracey(2004)는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와 난민들 중 유아 및 아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

인하고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특히 소아과 의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아동 중에서 10,000~20,000명 정도는 고아이거나 가족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이들 중 다수가 범죄 조직이나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 중에서 착취나 학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국의 난민 아동 네 명 중 한 명이 우려할만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다른 피부색, 옷이나 관습의 차이로 인해 학교나 공공장소 등지에서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들을 담당했던 의사들은 자신이 치료 중에 있는 이민자 및 난민 아동들에게 적절한 정서·사회·의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난민들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특히 주의할 것이 결핵이나 에이즈와 같은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파상풍이나 폐렴 등과 같은 질병들은 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면역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예방 가능한 것들이었지만, 난민 아동의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수준의 예방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 등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Eisenbruch(1988)는 난민 아동의 정신 건강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족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들의 재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인데, 그것은 단순히 가족과의 이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기원국과 거주국간의 문화적인 괴리에서도 연유한다고 한다. 즉,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아동들은 쉽게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고 재정착 이후에도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Eisenbruch는 난민 아동들을 수용한 거주국들이 아동들을 거주국의 문화에 빠르게 동화시키려는 것이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서유럽 국가들은 자국에 입국한 난민 아동들을 자신들의 문화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시

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이후의 연구들은 이런 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Eisenbruch는 난민 아동들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채택될 수 있으나, 모든 방법들은 그들 문화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난민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리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여유가 필요한데 그러한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이 새 문화에 하루빨리 적응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면 미처 정리되지 못한 슬픔과 소외감 속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선진국에 정착한 난민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과정은 적응 초기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민 청소년들이 거주국의 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모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을 거주국의 문화와 융합시키면서 점진적인 적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는다.

2) 난민 캠프 또는 인접국에 거주하는 난민 청소년의 건강문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문화충격이나 문화적 괴리는 적은 대신 건강 일반에 대한 검진,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안정의 기회 또한 적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Miller(1996)는 과테말라 원주민 아동들의 증언과 정신 건강 평가를 통해 이들에게 국가 테러리즘과 난민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선정된 대상은 멕시코의 치아파스에 있는 2개 난민 캠프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야 인디안 과테말라 아동 58명이었다.⁴¹⁾ Miller

의 연구는 어머니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자녀의 정신 건강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자 아이의 우울 증세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 가족들이 왜 과테말라에서 도망쳤는지, 폭력 행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Miller의 연구는 난민 캠프의 경험 이 난민 아동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아동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길게 인용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연구가 난민의 정착 과정 또는 그 이후의 과정, 난민 캠프에서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Miller의 연구는 난민 캠프에 머무르면서 본국의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궁금증을 동기로 삼고 있다. 우선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것과 재정착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합이 강조되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무기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난민 캠프가 공격의 가능성이 큰 본국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또 난민들은 과테말라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자신들을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경우의 또 다른 차이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 기관, 법적, 교육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기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난민아동의 이주와 관련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과의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원거주지에서 이주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적 손

41) 과테말라 내전은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친미적 군사 정부와 좌익세력을 지지하며, 과테말라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마야 인디안 원주민들 간의 충돌을 말한다. 원주민들은 산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펼쳤으나 군부 세력은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내전 기간 동안 14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로 피난을 가게 되었다. 1989년 당시, 멕시코 치아파스의 난민 캠프는 126여 개에 달했으며, 26,000여명의 과테말라인 중 약 60%가 16세 이하 아동이었다.

상을 덜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난민 캠프에서의 삶은 단기간인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와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 난민 캠프에 들어와서 유년기를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2개 캠프에서 아동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들은 노동에 매우 열심히 참여하였다. 상당수의 아동들이 아침나절에는 초등학교 수업에 참석하였고, 오후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허드렛일을 거들었다. 소년들의 일은 근처 산에 가서 나무 뿔감을 구해오는 것이었는데, 이런 노동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소년들은 종종 짝을 지워 함께 일을 하였고 이 시간은 소년들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소녀들은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요리, 집안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주로 하였다. 가족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성별 구별 없이 행해진 반면, 빨래와 같은 일은 주로 여자 아이가 담당하였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일을 하는데 보내야 했지만 종종 오후나 저녁에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들이 즐기는 게임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었는데 여자 아이들은 주로 진흙으로 빵을 굽는 시늉을 하였고, 남자 아이들은 축구를 즐겼다.

연구 대상이 된 아동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비극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전쟁의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 이유로는 부모 세대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캠프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동들이 그린 그림이나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과테말라 군인들이 캠프로 잠입하여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학살, 전쟁, 고문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역시 아동들이 전쟁의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3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응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연구와는 달리 아이들에게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민 캠프가 멕시코에 있더라도 그들은 멕시코 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캠프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동화의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고, 통합에 대한 부담감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캠프에서 학교의 역할은 아동들의 심리적, 인지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통해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캠프 내 아동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히 과테말라 군인들이 자신의 캠프로 들어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 이러한 두려움이 당시에는 실제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러한 공포는 북미 아이들이 보통 밤에는 종종 두려움을 느끼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잊어버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난민 아동들은 북미의 여느 아동들과는 달리 낮 시간 동안의 활동에서도 두려움으로 인해 영향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 과테말라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놀이, 학교생활, 집안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동들에게서 발견되는 회복력이었다. 그것은 생존하고자 하는, 그리고 난민 캠프 밖의 더욱 넓은 세계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회복력은 스트레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 자기 효능감의 경험, 안정되고 정서적인 관계, 지지적이고 개방적인 교육 환경,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왜 난민 캠프로 왔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한편 정부의 명령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들 부모가 반정부 단체와의 연관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그 기대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연관성이 큰 경우 그 기대를 더 먼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Miller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불안정한 생활 기간이 점차 길어져 가는 난민 캠프 생활의 모순과 그로써 야기되는 아동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

한편 전우택(2000)은 UNHCR의 자료를 이용하여 코소보 난민 청소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당시 코소보 난민 캠프의 상황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위기는 긴장이 많이 풀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난민들 사이에서는 탈출 과정에서 겪은 참혹한 일로 인해 난민 캠프에 도착한 것에 대해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은 주로 NGO 단체나 의대생들의 봉사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쉽게 짜증을 내는 분위기가 만연하였다. 그리고 난민 아동 및 청소년들은 군복을 보면 크게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두려움은 앞서 제시한 Miller의 연구(1996)에 등장하는 난민아동들이 보이는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근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아 무료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 중학생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루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척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학교생활이 난민 아동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Miller의 과테말라 난민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교육의 부재는 이들 코소보 청소년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코소보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다른 연령층의 경험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이들은 현실 문제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그들 연령 특유의 쾌활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난민 전체 연령층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집단은 청소년과 아동뿐이었다. 청소년들은 난민 캠프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몰려

다니기도 하고, 남녀가 어울려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난민 청소년층 사이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비교적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여자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떠들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이었고 이야기 중에 종종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난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 때에 남녀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정신적 외상

Sack, Clarke, 그리고 Seeley(1996)는 그들의 연구에서 난민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 외상과 이후의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1980년 이후 발생한 캄보디아 난민 중 미국에 정착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으며, 170명의 캄보디아 청소년과 80명의 어머니를 표본으로 하여 PTSD, 우울 증세, 재정착, 최근 삶의 사건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는 전쟁에 의한 정신적 외상, 재정착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PTSD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 증상은 최근의 스트레스와 보다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외상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PTSD와 우울 증세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캄보디아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크메르 루즈에 의한 잔혹한 통치시기를 겪었고 이 시기 동안 인구의 사분의 일이 사형,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다. 특히 여섯 살 이상 아동들은 부모들과 떨어져 포로수용소로 옮겨졌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잔학한 행위의 증인이었으

며,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의 가족들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또 어떤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키워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크메르족 청소년 난민들은 유아기에 전쟁의 공포로 인해 일차적인 고통을 겪었고, 이후의 성장 과정 즉, 아동기 후반 또는 청년기 초반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이차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어린 시절의 전쟁으로 인한 외상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며, 또 PTSD와 우울 증세가 다음의 세 가지 요인, 전쟁에 의한 정신적 외상, 재정착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최근의 스트레스 경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TSD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부모 모두에게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정신적 외상이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PTSD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청소년 중 일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억을 얘기해줌으로써 회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우울 증세는 재정착 과정 및 최근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측면이 강했으며, 특히 부모 세대에서 그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난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위해서는 PTSD와 우울 증세를 구별하여 진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진행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가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 특정 지역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에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높은 상관성은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있다.

Punamaki, Qouta, 그리고 El Sarraj(1997)는 전쟁, 정치적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은 아동들과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대상자는 11~12세의 팔레스타인 아동 108명으로, 인티파다(Intifada)⁴²⁾ 동안에 심한 정치적, 군사적 폭력의 시기를 겪은 이들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비슷한 정도로 맞추어졌으며, 이들 중 약 71%는 난민 캠프에 거주하였고 나머지는 도시 지역(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정신적 외상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개 항목에 대해 체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그 항목들은 가스 공격, 야간 공습, 가족 구성원의 성폭행 목격, 군인에 의한 구타, 가족의 감금 및 부상 등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이들이 정신적 외상을 경험함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부정적 양육을 경험하고, 그것은 다시금 높은 수준의 신경과민과 낮은 자긍심으로 나타난다. 둘째, 더 많은 외상을 경험한 아동은 더 많은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적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록 심리적 적응 문제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정신적 외상에 의해 이들의 지적 능력, 인지 능력, 창조적 능력은 감퇴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외상 이후 좋은 양육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신적 적응 능력은 더욱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인지된 양육의 수준이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아동이 심리적 적응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용서하고, 자신의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에만 가능한 현상이었다.

이 연구는 소수의 인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모를

42) 인티파다(Intifada)는 봉기·반란·각성 등을 뜻하는 아랍어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연합이 이스라엘만 국가로 인정함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등지에서만 살게 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직접적으로 인터뷰하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즉, 양육의 과정을 상세하게 조사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기존의 주장, 즉, 그런 활동이 아동의 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난민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상황에 근거하고, 소수의 인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 특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난민 청소년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정신적 외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해결 방식 또한 다면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난민 청소년의 교육문제와 사회적응

난민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착 초기 이들은 거주국의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적응이 가장 크지만,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정착국에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난민 청소년들, 특히 아시아계의 난민학생들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몽(Hmong)족 난민들의 경우, 정착 초기에는 학업성취가 많이 떨어졌지만 3~4년 후에는 다른 민족 집단의 학생들과 학력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몽족 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있었다(McNall, Dunnigan, & Mortimer, 1994). 이들이 보이는 높은 교육성취의 요인으로는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에 대한 강한 동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난민 청소년들의 가족들이 난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함으로 인해 이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McNall, Dunnigan, 그리고 Mortimer(1994)의 몽족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몽족 청소년들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비몽족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과 관련하여 열정, 노력, 성취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예가 숙제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로 GPA로 측정되는 몽족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비몽족 학생들보다 높았고, 자퇴율 역시 비몽족 학생들에 비해서 낮았다. 이런 지표들은 몽족 청소년들이 초기의 역경을 딛고 미국의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Kaprielian-Churchill(1996)은 캐나다에 정착한 난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주국의 교육환경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난민 학생들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난민 집단별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난민학생들은 출신국, 인종, 민족, 종교, 문화, 사회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새로운 거주국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였다. 또한 모국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국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의 연령, 개인의 성격, 가족의 지원 정도 등도 그 영향요소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교육자들이 난민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또한 모든 난민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베트남 난민들의 미국에서의 사회적응 양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난민들이 미국의 대중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여기고 민족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동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적,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데 유리하다는 결과(Portes, 1996; Rumbaut, 1994; Zhou, 1997)와 일맥상통한다. 즉, 강한 가족연대와 공동체적 가치관, 그리고 공공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부모

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 난민 청소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고 과도한 미국화를 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착사회의 상위그룹으로 이동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Hirschman, Kasinitz, & DeWind, 1999).

Kaprielian-Churchill(1996)은 난민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난민으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성인과는 또 다른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난민 청소년들은 때때로 발달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는데, 특히 그들을 돌보아 줄 가족이 없고 혼자인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그의 연구에서 난민 청소년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 중 몇몇은 나이에 비해 더욱 성숙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배우기를 갈망하여도 권위와 훈련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거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또래 십대 청소년들의 태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 학생들은 학업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난민 청소년들이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 정착하는 동안의 과정에서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거주국에서의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모국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지 못하여 학업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모국어조차 제대로 쓰거나 읽을 수 없는 경우에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⁴³⁾. 결국 그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교육 배경에 덧붙여 난민으로서 겪는 불리함과 이전의 교육환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인해 거주국에서의 교육성취에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그 결과 난민 청소년들은 학교 동료들에 비해

43) 물론 읽고 쓰는 능력과,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읽고 쓸 줄 아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만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업 면에서 뒤처지고, 직업은 임시직을 찾아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찍 결혼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거주국에서 거주국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난민 청소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들은 제2외국어, 즉 거주국의 언어로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5~6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Kaprielian-Churchill, 1996). 이는 언어적 어려움이 초기 거주국 적응 및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난민 청소년의 교육성취를 포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James, 1997; Gillock & Reyes, 1999; Park, 1975)에 따르면 학교, 가정, 문화, 거주국의 정책 등에 따라 난민들의 적응수준에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⁴⁾ 첫째, 학교에서의 적응문제를 살펴보면, 난민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와 문화변용으로 인한 갈등은 학교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이주·난민청소년들이 가졌던 문화와 정착지 학교에서의 문화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또래 및 교사들과 문화가 다르고 그들이 소수자인 이주 청소년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그리고 현지 언어를 잘 모를 때, 이들은 우울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며 학교를 중단하게 된다(James, 1997). 또한 이들은 빈곤과 인종문제, 폭력 등을 포함하여 가난한 주거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낮은 소득 및 지위에 머무르는 등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학교탈락의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Gillock & Reyes, 1999). 이처럼 이주·난민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은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대처능력의 한계, 그리고 낮은 수입을 비롯한 빈약한 사회적 자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도시에 사는 멕시코계 미국인 고등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Gillock과

44) 이주·난민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은 박윤숙(2005)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요약하였다.

Reyes(1999)는 이들의 학교성취는 낮은 수입 및 사회적 지지와 관계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빈약한 자원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보호가 충분치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서의 적응문제를 살펴보면 난민 청소년들이 모국과 거주국 사이의 언어 및 교육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 잘 적응하는 경우에는 이들 부모들로부터 일관되게 유대감과 일체감을 부여받을 때이다(Park, 1975). 난민 청소년들은 자신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는 것이다(James, 1997). 그러나 많은 난민 청소년들의 가족들은 고문, 강간, 실종, 사망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파괴되어 지지자의 역할로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기영(2000; 박운숙(2005)에서 재인용)의 미국의 이주·난민 가족연구에 따르면 난민 가정은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더 많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지며,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갈등이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해 자녀들은 일반아동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의 문제들은 성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취업, 소득, 언어획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통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는 함에 따라 적응에 있어서 자신보다 뒤쳐지는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모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고생스럽게 일한 보상을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부모들은 대개 자녀들을 과보호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간섭을 하고 엄격한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여 자녀들과의 관계가 편치 않다. 게다가 정착지에서 많은 노동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불가피하게 일하는 시간동안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는데, 이처럼 물리적으로 자녀와 같이 있지 못하는 상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심리적 단절을 심화시킨다. 또한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심리적인 단절을 겪는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은 우울을 경험하거나 혹은 갱과 같은 대안가족(alternative family)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전우택,

2000). 한편 부모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앞서 인도차이나 난민의 경우에서 언급했듯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여러 국가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불법 이민자 및 난민 신청자의 3%에 불과한 무의탁 청소년⁴⁵⁾이 정착지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착지 주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통일부, 2002).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정착지에서 적응문제에 심각한 위험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고아들이나 부모들과 완전히 헤어져 동반자 없이 정착지로 온 청소년들, 일시적으로 부모들이 먼저 정착지로 오고 아이들은 고국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청소년,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와 인도차이나 어머니를 가진 혼혈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 적응문제를 살펴보면 난민 청소년들은 이전의 전통 문화사회와 정착지의 새로운 사회의 문화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할 때, 또래 및 교사들과 문화가 다르고 이주한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를 때 우울, 혼란, 좌절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다. 이들은 처음에는 전통적 문화를 고수하는 분리 형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빨리 현지에 동화되어 적응해간다. 즉, 멕시코 미국인계 10대 미혼모에 대한 연구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민 초기에 이주 청소년들은 전통가치에 벗어나는 성적 행동을 자제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하지만 점차 주류사회문화에 익숙해져서 학교교육을 중단하고 일찍 결혼하거나 임신을 반복하기도 하는 등 빠르게 문화적으로 변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스라엘 이민청소년들의 연구에서는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편 6년이 지난 경우에도 많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아직도 자신이

45) 이들은 보스니아 및 모로코 출신자들의 일부로 집단을 이루어 대도시의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스페인의 무의탁 청소년 난민 보호제도’ , 통일부자료, 2002).

코카시스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은 전통사회에서 새로운 국가로의 이주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양 문화에 걸쳐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주거 정착지역과 주민들의 수용 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난민 청소년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적응은 거주 지역사회와 이웃 등 주류 사회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난민 청소년들은 주로 인종적으로 분리되고 갭들이 활동하는 저소득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낮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주 환경은 이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정착 사회로부터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무시당하며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록 이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는 주민들의 차별과 편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고 한다(James, 1997; Park, 1975).

다섯째, 거주국의 이주·난민 지원 정책은 이민자와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완전동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자들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편견이 있는 미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거주 국가와 현재 이주한 국가 간의 사회 경제적 차이가 크고 삶의 수준과 문화적 성격이 많이 다를 때 정신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며, 이전 국가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현 거주 국가에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Park, 1975).

끝으로 난민 청소년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나타난다. 즉, 개인의 관점과, 교육배경, 가족유대, 언어시설, 경제문제 등에 따라 이들의 적응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족이 없고, 제한된 언어 시설과 열악한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때 이주청소년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입원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는 그렇지 않은 이민자보다 정신질환을 적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교육적 욕구가 정신질환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개인적 배경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도 있다(Park, 1975).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경우의 난민 청소년들이 언어와 교육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착지에서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에 갓 이민 온 청소년들은 영어능력에서는 현지 청소년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오히려 본토 아이들보다 우수하며 매우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순조로운 적응의 원인은 초기 이민 1세대 청소년들의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는 긴장감과 부모들의 고생을 보상하려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난민 청소년들의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청소년들의 영어능력은 좋아지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나빠지고 학업성취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민 1세대 청소년들은 긴장감으로 인해 많은 적응 노력을 하지만 2세대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로 인해 더 이상 적응에 대한 긴장감을 갖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민 가정의 일반 가정과 같은 수준의 경제사회적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민 2세대에 대한 교육환경 및 지원 역시 본토 일반청소년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앞에서 소개되었듯이 제3국에 체류 중인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명 및 인권문제는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탈북은 목숨을 내건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또한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해 북한공안요원이나 현지 경찰에게 체포·송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으며,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기약 없는 유랑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인권유린사례는 부지기수이다(곽해룡, 2000; 윤여상, 2001;

김태현, 노치영, 2003). 이렇듯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은 생명의 위협과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국제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여 처벌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과 같은 국내외의 탈북자 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국 내에 10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할 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문제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중국이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일시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은 ‘일시 보호제(first asylum)’ 개념을 도입해서 난민을 받아들였다. 난민들을 받아들인 인도차이나 주변국들은 난민들을 1차로 일정 기간 동안만 수용하고 재정주는 제3국에서 하게 함으로써 난민 수용의 부담감을 경감하였다. 이런 합의에 의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은 베트남 보트피플을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행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일시 보호제는 관련당사국의 합의하에 일반화된 갈등·분쟁 또는 인권남용지역을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난민보호상 의무인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권리(교육, 복지, 노동권)에 대한 유보가 인정된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실형유민에 대한 「일시보호」 차원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중국이 아닌 제3국, 특히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및 몽고 등지로 유입하여 그곳에서 보호시설을 민간단체 또는 국제인권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정부는 보호시설 건립과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실제운영은 국내외 인권단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재외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의 해법은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시급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것이다.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식량제공과 경제지원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갖는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들을 후방에서 지원하여 이들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3. 향후 연구계획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3개년도 연구 중 제2차년도 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양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각 관련국들의 정책을 분석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지역에만도 대략 2만여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매우 열악한 경제 및 가정환경에서 탈피하여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3국으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이들이 직면한 개인적 어려움으로는 정체성의 위기, 열악한 영양상태 및 신체건강 상태, 정신건강의 위기, 가족의 해체, 교육권의 박탈, 노동력 착취 및 여성의 인신매매 등을 들 수 있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기존의 북한 문화와 제3국의 새로운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해당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은둔, 도피 등의 생활을 통해 탈사회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식량난과 이후 탈북 과정에서의 영양섭취의 부족으로 신체적 왜소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탈북과정 및 제3국 체류 상황에서 겪

은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은 청소년들에게 PTSD, 우울,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정신적 부적응 현상을 야기하였다. 한편 북한의 경제난과 그에 따른 탈북현상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부모 및 가족과 원하지 않는 이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는 또한 정규교육의 붕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하여금 북한에 거주할 때부터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탈북 후 제3국에 불법체류하면서부터 이들은 그나마 정규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는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하여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이들의 상황은 문헌연구에서 접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과 도피와 은둔으로 점철된 제3국 체류 생활로 인해 이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온전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제3국 체류시 정규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몇몇 지원단체들의 도움으로 개인교습이나 소규모의 과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이들의 학습동기는 매우 낮은 상태였다. 또한 이들은 불법체류와 발각시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결과 매우 제한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래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들은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꿈과 이들이 처한 현실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제3국에서 처한 상황은 위에서 서술한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위에 관련국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더해져 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정책을 크게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조용한 해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일컬을 수 있다. 즉, 북한이나 해당국의 입장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북

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북한으로의 송환자제와 같은 특별 배려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조용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한편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의식주 제공과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에게서 나타나는 종교적 성향은 해당국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해당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비합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국들의 정책은 자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특정 맥락이나 이슈화의 여부에 따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및 체포와 강제송환, 북한이탈주민 구호단체 탄압과 관련자 엄중처벌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좀 더 관용적인 정책을 표방하여 청소년들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검색을 묵인하면서도 제한적으로 UNHCR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 주민들의 한국행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태국의 경우는 UNHCR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제3국이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나, 국제아동권리협약 등의 법안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거의 주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NGO 단체들의 활동은 그 영향력 면에서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당국들의 이해관계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두 집단의 상황은 서로 간에 유사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났던 자국 탈출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교육기회의 상실, 심리·정서적 어려움, 질병 및 영양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 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들의 경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 등에서 재정착의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자국 탈출 이후의 삶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인도차이나 난민 청소년에 대한 사례는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시 보호제의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현재 처해있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된 제3국으로의 이탈과 제3국 불법체류로 형성된 불안정한 신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관련국들 간의 복잡한 이해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들을 제언함으로써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 정책제언⁴⁶⁾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대규모의 전반적인 조사 실시

현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적인 실태조사가 간간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불법체류

46) 여기에 서술된 정책제언 중에는 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개최한 세미나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방향’에서 이수정(2007)이 발표한 내용과 정책협의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이 반영된 것도 있음을 밝힌다.

자의 신분으로 자기노출을 꺼릴 뿐 아니라 이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전반적이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이 민간단체나 학자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탈 청소년은 물론,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사는 구체적이고 대규모적인 실태조사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분포지역과 각 지역의 체류 규모, 체류기간, 이들의 성별과 연령, 가족관계, 학력과 생활 형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착 희망지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외교적 마찰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이 이러한 조사들을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과 중국 모두 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공식적으로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공동조사 제안이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공동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제난민고등판무관(UHCR),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국제인권관련 기구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관련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국의 정책 및 생활여건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연길 시내에서 구걸 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꽃제비를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중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규모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실태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들 실태의 변화경향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국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거의 없으며, 이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지 민간단체 및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게다가 여러 가지 국내외의 정황상 이들의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문제는 남한으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제3국 체류기간 동안의 부정적인 경험이 남한사회 적응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 간의 공조체제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연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들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일회성 및 전시성 행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국내외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계획은 전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3국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 수립

과거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주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피해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탈북하여 제3국에 체류하였지만, 최근에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및 한국과 북한 간의 경제적 차이, 개인의 자유보장 정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 탈북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체류국, 특히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발각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될 경우 본국에서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는 체류국에서, 그리고 귀환이후 본국에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 마련에는 북한과 중국의 반발,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안전보장 정책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게다가 체류국과의 외교적 노력, 국내외 관련 기관의 협조, 민관의 상호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청소년을 비롯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고려

일부 학자들과 NGO 단체들은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조국과의 유대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국제법상의 난민이므로, 이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교화소, 형무소, 노동단련대,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구타와 고문, 질병에 시달릴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체류국에서 남한사람들이나 기

독교를 접한 경험이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공개처형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 및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된다. 즉, 이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북한이탈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때에 만이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희망 정착지에서의 영구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단 이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에게 있어서 이들은 단순한 “불법월경자”이며 “일시적인 경제이주자”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한국이나 제3국의 공관 등에 진입하여 공개적으로 망명 의사를 밝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한국행을 허가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공안에게 발각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특히 탈북 지원단체나 브로커에 의한 기획탈북에 대해서는 탈북자 송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라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국제법적 원칙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상의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체류하고 있는 각 체류국의 재량에 속한 문제이다(이희훈, 2006).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가 해당국 정부에게 난민으로 승인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어렵거니와 이들의 승인 없이 해당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협약난민으로 간주하고 지원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서술했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와 목적이 실제로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해 국경을 넘은, 난민적 성격을 띠는 이들도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의 성격을 띠는 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 당국 또한 경제난이나 식량난으로 인한 월경자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을 모두 “난민”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2) 일시 보호제 도입방안의 고려

난민지위 부여의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일시피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인도차이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은 ‘일시 보호제(first asylum)’를 통하여 난민을 받아들였다. 즉 인도차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인 주변국들은 1차로 자국에서 난민들을 일정 기간 동안만 머무르게 하고 이후에는 제3국에서 재정착하게 함으로써 난민 수용의 부담감을 경감하고 난민들을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행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일시 보호제는 관련당사국의 합의하에 일반화된 갈등·분쟁 또는 인권남용지역을 탈출한 피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한 방식으로, 난민보호상의 의무인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제반권리(교육, 복지, 노동권)에 대한 유보가 인정된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의 경우에 실향유민에 대한 「일시보호」 차원에서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보호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단체 또는 국제인권단체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정부는 보호시설 건립과 유지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실제운영은 국내외 인권단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들의 문제가 갖는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들을 후방에서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 및 지원활동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여러 가지 조건상 절대 취약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이 같은 보호조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문제 부각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권문제에 특히 민감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이나 “아동권리선언”을 근거로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약에 있는 아동의 권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인 ‘생존권’, 차별·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고 난민아동·법률저촉아동·소수민족아동이 특별보호를 받을 권리인 ‘보호권’, 정규 및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인 ‘발달권’,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인 ‘참여권’ 등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 아동권리 조항을 근거로 우리는 일차적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단체들의 지원활동을 중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도록 협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행정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⁴⁷⁾.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과학교육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국제엠네스티(AI) 등 청소년 관련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기구를 만들어 생존·건강·주거·교육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47)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등록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게 된 과정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2001년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한국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후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역할분담체계 형성

앞서 제시했던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과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한편 비정치적인 성격을 띤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장려하고 체류국 내 인도주의를 지향하는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활동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게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을 맡기는 등이 그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주로 체류하고 있는 지역의 고아원, 탁아소, 학교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체류상황을 호전시키는 것도 정부가 비정부단체들을 매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윤여상, 2003). 또한 한국의 민간단체들을 매개로 국제적 NGO, 특히 중국 측 NGO와 공조하여 그들을 주체로 내세우는 형태를 띠는 지원도 고려해볼직하다. 정부의 공개적인 지원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이들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은 북한이탈 청소년들 인권보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민간단체의 실태 파악 및 지원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 상황에서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매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중 일부가 열의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체들 간의 경쟁의식에 따른 정보공유의 부재로 부지불식간에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한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자들에게 체감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현재 국내외의 많은 민간단체가 제3국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재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와 규모, 활동 내용 등 이들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단체들의 상호 교류망 구축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민간단체들은 경쟁의식으로 인해 서로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활동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

상호 교류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망이 형성된다면 체류국 내 각 담당지역을 나누고 자신들이 담당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원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체들 간의 연합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단체들의 상호 교류망을 구축·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

각 민간단체들은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특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또한 민간단체 및 활동가들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이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면, 현지에 국내의 심리치료 전문가를 보낼 경우, 전문적인 지식은 갖추었으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 및 현지 사정에 어두워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이들의 특성 및 현지사정에는 밝으나 심리치료적 지식이 약한 현지 활동가들에게 이들을 맡긴다면 이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생성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현지 활동가들이 양산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변 내 청소년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현지 전문가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민간단체들의 지원활동에 대한 조율

현재 민간단체들의 사업이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체류국의 특성이나 복잡한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 나간다는 점이다. 단체들의 이러한 점은 국제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활동이 우리나라만큼 자유롭지 못한 중국에서 민간단체들이 지나친 종교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은 향후 국가간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 문제의 협의와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제를 의제로 하는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및 주민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구체적인 활동내용들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최근의 정세와 정부의 대북 정책 현황, 관련국들의 입장을 성명하고,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요청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민간단체들과 체류국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 관할 공간 또는 수용소 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다각적 지원

제3국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에는 비록 제3국에 체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해외 공간이나 제3국 내 정부 관할 보호처에 머물고 있는 경우이다. 이들은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머물고 있으나 그 곳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이들의 연령이나 성별 등 개인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공관의 지원은 단순 보호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의 교육 공백은 길어지고 심리적 외상은 악화되어 남한 입국 후 사회정착 및 적응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적 외상의 문제, 건강문제 등을 들 수 있다(백혜정 외, 2006).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입국을 기다리며 제3국 공관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면 입국 후 하루빨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의 문제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은 남한 정착이후 학교교육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생활을 어려워하며 그에 따라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입국 이전부터 교육 전문가를 고용하여 이들의 학습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실행이 어려울 경우 현지 공관의 상황에 따라 청소년들의 연령과 학력에 맞는 각종 교육용 책자(기본교재 및 연령별 교양도서, 문학서적 등), 시청각자료, 교구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한편, 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탈북 및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입었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유와 정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성인의 경우, 이들을 위한 상담 전문가의 파견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들에 대한 실제 상담지원이 이루어진 후 공관의 의약품 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진술은 이들에게 심리치유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랜 도피생활과 공관에서의 폐쇄된 생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겪으며, 이러한 신체화 증상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인들과 달리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 치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이들의 규모가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정신적 외상에 대해 어른들만큼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연구(예: 백혜정 외, 2006)에 의하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지는 심리적 외상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는 성인의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성인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3)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오랜 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질병에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질병들은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입국 전 공관에서부터 이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방 및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의료관련 전문단체나 민간단체 등의 정기적인 파견과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가족 지지 프로그램의 지원

가족단위로 탈북을 하여 현재 공관이나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아무래도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지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현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며, 남한 내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많이 달라 남한 정착 후 가족 구성원 간에는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며 이것이 남한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줄이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한부모 가족의 재적응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과의 이별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는 무연고 청소년들에게는 대안가정이나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수용소 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지원

한편 제3국 공관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태국과 같이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제3국 수용소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책, 음식, 생필품 등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방안 뿐 아니라 이들의 거주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생적이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벤트성 기획망명의 억제

이벤트성 기획망명이란 북한과 중국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망명이다. 이벤트성 망명은 결과적으로 중국 공안의

단속심화를 가져오고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정책의 경직성을 불러옴으로써 자발적 귀환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중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후유증을 안고 있다. 실제로 기획망명의 결과, 중국 공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검거열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일 자리를 잃고 거주지를 떠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던 중국내 조선족들이나 한인사회가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염려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즉 이벤트성 기획망명은 극히 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망명시키기 위해 그 몇 백배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참담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들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함으로써 국내외 탈북 지원 단체 및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무리한 기획망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환경의 개선촉진

제3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보다도 탈북요인을 감소시켜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탈북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 내 가족의 해체를 불러일으키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 중 대다수는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고 그로 인하여 북한 사회 내에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생존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 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북지원 사업이 현재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행사 중심의 단발적이고 단순한 물질 제공이 아닌 북한주민들의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내 청소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생필품 및 의약품 제공과 같이 기초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로 하여금 북한 내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나타난 북한 내 교육붕괴의 복구를 위한 교육부문의 대북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국내외 민관 합동의 아동 및 청소년 교육복지 전문가 지원과 지원기관 간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북지원 및 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확보방안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의 주요인이 경제난임을 상기시켜 북한이탈주민들이 귀환하거나 송환될 때 북한당국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북한주

<표 V-1> 정책 방안 추진 계획

정책방안		추진단계			관련부처
		단기 (2008)	중기 (2009~ 2011)	장기 (2012~)	
1)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2)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청소년위원회
3) 인권보호	① 난민지위부여	○	○	○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② 일시보호제 도입		○		

	③ 인권문제 부각		○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④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역할분담체제 형성		○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4) 민간단체 지원	① 민간단체 실태파악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② 민간단체 상호교류망 형성		○		
	③ 민간단체 역량강화		○	○	국가청소년위원회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④ 민간단체 활동조율	○	○	○	
5) 관할 공관 및 수용소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②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③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④ 가족지지 프로그램 지원		○	○	국가청소년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⑤ 수용소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6) 이벤트성 기획망명의 억제		○	○		외교통상부, 통일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7) 북한환경의 개선				○	외교통상부, 통일부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NGO 단체

민의 실질적 생활환경이 나아질 때에만이 비로소 잠재적 북한이탈자들의 추가적인 탈북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난으로 잠시 고향을 떠났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귀환도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제언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관련부처의 업무공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앞에서 서술한 제언들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3. 향후 연구계획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년도 연구이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올해 연구인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이들의 가족해체나 교육권의 박탈, 오랜 도피 생활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 미묘한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3개년 연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제3차년도 연구에서는 다시 국내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남한사회 내 올바른 적응을 위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이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연구를 통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진로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남한사회에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건전한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꼭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차기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형성과정 및 실태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대학교 진학 청소년, 취업 청소년 등 진로에 따른 집단별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록(2003).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육사논문집, 59(3), 249-271.
- 곽해룡(2000).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 신(新)이산가족 현상의 발생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 12(1), 247-267.
- 곽해룡(2002). 재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지원단체 역할 및 난민 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지역학회보, 19, 113-138.
- 곽해룡(2005a).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사례와 지원 방안. 한국학술정보.
- 곽해룡(2005b). 중국의 탈북자정책 연구. 민족연구, 14, 76-96.
- 권나혜(2005).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길은배(2001).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2002).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2004).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확대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 문성호(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강녕(2006).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한국통일전략학회 편, 탈북자 문제의 실체적 해부. p. 48. 서울: 도서출판 이경.
- 김동한(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북한의 인권관계법제 비교분석. 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 발표문(2004.11.26).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수암(2007).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 한울 아카데미.
- 김연중(2002). 북한선교활동의 분석과 정책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6(1), 289-329.
- 김예영(2005). 북한이탈 아동의 건강상태 평가. 간호과학, 17(2), 55-63.
- 김윤영(2006).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18-242).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김은정, 백혜정(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 김인성(2005).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14, 6-34.
- 김인혁(2005).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자문제, 통일전략, 8, 91.
- 김태현, 노치영(2003a). 재중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태현, 노치영(2003b).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8), 1-17.
- 남북문화교육통합원(2006).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더불어 무지개 남북문화교육통합원.
- 문남철(2004).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요인과 이주패턴 및 이주경로: 재외 거주공간 정책의 필요성. 지리학연구, 38(4), 497-511.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2000).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문화일보 2007. 4. 26일자 3판 2면 : 라오스 '탈북 청소년' 오늘 입국 당국 보호.
- 미북한인권법 전문(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박상봉(2003). 중국내 북한이탈자 현황, 정책과 전망. 원재천(편).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박선경(1998).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영(2006). 성장발육-생물인류학적 연구.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43-259).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박윤숙(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윤숙, 윤인진(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백영옥(2002). 중국 내 탈북 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41-264.
- 백혜정, 김은배, 윤인진, 이영관(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7). [http://www.dongposarang.or.kr/\(2007/08/03\)](http://www.dongposarang.or.kr/(2007/08/03)).
- 서울신문 2007. 4. 3일자 20판 19면 : 泰, 탈북자 52명 연행.
- 선한승, 강일규, 김영운, 윤인진, 이영훈, 정성훈, 김화순(2005). 북한이탈주민의

-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소중섭(2007). 우리들은 신기한 인형이 아닙니다. 인권, 44, 18-22. 국가인권위원회.
- 양철훈(2004). 중국의 북한이탈자문제와 해결책.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2000). 2000년 북한연감.
- 연합뉴스 2005. 8. 21일자 : 중국 내 탈북자 실사 3만-5만으로 추정.
- 윤여상(1998a).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북한인권시민연합.
- 윤여상(1998b). 탈북자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7(2), 169-201.
- 윤여상(1999). 재중 탈북청소년 인권실태와 대처방안. 통일부편. 북한인권 및 남북인도적 문제: 현황과 대책. 통일부 비공개 워크샵자료.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서울: 세명.
- 윤여상(2002a).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1. 자유공론, 37(9), 38-41.
- 윤여상(2002b).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2. 자유공론, 37(10), 108-111.
- 윤여상(2002c). 국제사회의 탈북자문제 이슈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제문제연구, 7, 1-92.
- 윤여상(2003).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2), 343-364.
- 윤여상(2004). 재외 탈북자 실태: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제7기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
- 윤여상, 윤인진, 이금순, 안혜영, 서윤환, 엄홍석(2005). 새터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윤인진(2000).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금순(2005a). 북한이탈자의 인권현황과 국제사회의 역할. 이제는 북한인권을 말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운동의 향후 방향 및 전략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집(p. 32). 서울지방변호사회 · 북한인권시민연합.
- 이금순(2005b).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 이금순(2006).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제2차 평화재단 심포지움 자료집: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평화재단

- 이금순, 강신창, 김병로, 김수암, 안혜영, 오승렬, 윤여상, 이우영, 임순희, 최의철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기영 (2000).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통일부.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배근 (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357-379.
- 이새롭 (2003).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조기 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학술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 이수정 (2005). 새터민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반차별-반억압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정 (2007). 제3국 체류 탈북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제언.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자료집 (pp.3-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준흠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장호 (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739-789.
- 이희훈 (2006). 중국내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인권보호에 대한 연구. 공법연구, 35(2), 209-235.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1(2). 통일연구원.
- 임순희, 이금순, 김수암, 최의철 (2006).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임원혁 (1998).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임정규 (2004).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 53-78.
- 임채완, 최영관 (2001).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13(2), 121-151.
- 장남수, 강은영, 이종미, 이명근 (2000). 연변지역 탈북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와 식생활 양상. 한국영양학회지, 33(3), 324-331.
- 장복희 (1998). UN 난민고등판문관. 국제인권법, 2, 39-74.
- 장창호 (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 전우택 (1997). 북한이탈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전병범(2004). 재중 탈북자의 인권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병호, 정진웅, 전효관, 이부미(2002).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영선(2000a). 탈북난민들의 인권문제와 국내외적 대응. 호남정치학회보, 12, 165-191.
- 정영선(2000b). 인권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인권의 보편성과 경제성장론의 충돌을 중심으로. 인권과 평화, 1(1), 79-97.
- 정우창(2006). 남한 자원교사들의 갈등과 적응.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 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340-364).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주신(2006).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동북아연구, 21(2), 117-139.
-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진웅(2006). 탈북 청소년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83-297).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81-111.
- 조선일보 2003. 6. 20일자 23면 : 脫北난민은 결국 한국이 풀어야할 문제.
- 조천연(2002). 탈북 경로의 유형 및 실태와 현황: 생계형 탈북에서 삶의 질 향상 위한 형태로 급증. 북한 10월호, 62-78.
- 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좋은벗들(1999a).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 좋은벗들(1999b). 북한식량난민의 실태와 인권보고. 서울: 정토출판.
- 좋은벗들(2006). 오늘의 북한소식, 1. 서울: 좋은벗들.
- 최의철(2003). 북한의 인권부문외교의 전개 방향. 통일연구원.
- 최의철, 임순희(20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연구

원.

최의철(2005). 유럽연합의 대북인권 정책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최의철, 김수암(2005). 북한인권 관련 및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통일연구원.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2006). 탈북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놀이치료연구, 12(9), 23-34.

최창민, 정우경, 강철인, 김도형, 김영근, 허상택, 김희진(2006). 북한이탈주민에서의 결핵의 임상적 고찰. 결핵 및 호흡기 질환, 60(3), 285-289.

통일부(2002). 스페인의 무의탁 청소년 난민 보호제도. 통일부 내부자료.

통일부(2006). 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통일부(2007). 200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2006a).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6-2007.

통일연구원(2006b).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2007). 북한인권백서 2007. 서울: 통일연구원.

한인영(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서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홍미희(2004). 국제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방안과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강원 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한겨레 신문(2004. 11.23)

[http://news.media.daum.net/printpage/politics/others\(2006/08/23\)](http://news.media.daum.net/printpage/politics/others(2006/08/23)).

[http://news.media.daum.net/printpage/politics/others\(2007/08/03\)](http://news.media.daum.net/printpage/politics/others(2007/08/03)).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kis, E.(1955). D. P. Apathy. In Murphy, H. B. M.(Ed.). *Flight and Resettlement*. Paris: UNESCO.

Chan, K. B., & Loveridge, D.(1987). Refugees 'in transit': Vietnamese in a refugee camp in Hong Ko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 (3), 745-759.

Chung, Byung-Ho(2003).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the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43(3), 191-211.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Doffey, A. & Atkinson, P. (1996). *Making sense of qualitative data: Complementary research strateg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umas, J. E. & Nilsen, W. J.(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임영식, 김혜원, 성인자, 조아미, 한상철 역(2005). 청소년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Eisenbruch, M.(1988). The mental health of refugee children and their 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2(2), 282-300.
- Fantino, A., & Colak, A.(2001). Refugee children in Canada: Searching for identity. *Child Welfare*, 80 (5), 587-596.
- Gracey, M.(2004). Caring for the health and medical and emotional needs of children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Acta Pædiatr* 93, 1423-1426.
- Hick, S.(2001). The political economy of war-affected childre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5, 106-121.
- Gillock, K. & Reyes, O.(1999). Stress,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rban, low-income,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2), 259-282.
- Hirschman, C., Kasinitz, P., & DeWind, J. (Eds.)(1999).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Russell Sage Foundation Publications.
- James, D. C. S.(1997). Psychosocial risks of immigrant students: Knowing where they lie is essential to alleviating them. *Education Digest*, 63 (3), 51.
- Kaprielian-Churchill, I.(1996). Refugees and education in Canadian school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2(4), 349-365.
- Kelly, G. P.(1977). *From Vietnam to America*. Boulder: Westview Press.
- Knudsen, J. C.(1983). Boat people in transition: Vietnamese in refugee camps in the Philippines, Hong Kong and Japan. *Bergen Occasional Papers in Social Anthropology*, 31, Department of Soci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Bergen.

- Krasner, S.(Eds.)(1983). *International regimes*. Conell University Press.
- Kunz, E. F.(1973). The refugee in flight: Kinetic models and forms of displacemen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7, 125-146.
- Liu, W. T., Lammanan, M., & Murata, A.(1979). *Transition to nowhere: Vietnamese refugees in America*. Nashville/London: Charter House Publishers,
- Looney, J. G.(1979). Adolescents as refugees. *Adolescent Psychiatry*, 7, 199-208.
- Matsuoka, J. K. & Ryujin, D. J.(1989-1990). Vietnamese refugees: An analysis of contemporary adjustment issues, *The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4(1), 23-45.
- McNall, M., Dunnigan, T., & Mortimer, J. T.(1994).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the St. Paul Hmong.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5(1), 44-65.
- Miller, K.(1996). The effects of state terrorism and exile on indigenous Guatemalan refugee children: A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an analysis of children's narratives. *Child Development*, 67(1), 89-106.
- Murphy, H. B. M.(1955). The extent of the problem. In Murphy, H. B. M.(Ed.). *Flight and resettlement*. Paris: UNESCO.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SEC 201-212.
- Park, J. S.(1975).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 wyst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thesis at the School of Social Work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Pfister-Ammende, M.(1973). Mental hygiene in refugee camps(pp. 241-251) in C. Zwingmann & M. Pfister-Ammende(Eds.). *Uprooting and after*. New York: Springer-Verlag.
- Portes, A.(1996).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Punamaki, R., Qouta, S., & El Sarraj, E.(1997). Models of traumatic

- experience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and the children's own resources and activity. *Child Development*, 68(4), 718-728.
- Rumbaut, R.(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8(4), 748-794.
- Sack, W., Clarke, G., & Seeley, J.(1996). Multiple forms of stress in Cambodian adolescent refugees. *Child Development*, 67(1), 107-116.
- UNHCR(2001).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Oxford University Press.
- U. S. State Department(2005). *The State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U.S.G. Policy Toward Them*.
- USCR(2002). *World Refugee Survey 2002-North Korea(2002.6.6)*.
- Wain, B.(1981). *The refused: The agony of the Indochinese refugees*. Hong Kong: Dow Jones Publishing Co.
- Zhou, M.(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975-1008.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지수 국가청소년위원회 · 사무관
남형기 국가청소년위원회 · 정책총괄팀장
윤경원 McGill University · 객원교수
이장익 아주대학교 · 교수
조영국 국가인권위원회 · 전문위원
조정아 통일연구원 · 연구위원

◆ 협 력 진 ◆

정진현 (사) 남북문화통합교육원 · 사무처장
이수정 무지개 청소년센터 · 부소장

◆ 연구보조원 ◆

심경미 서울여자대학교 · 석사과정수료

연구보고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액이 종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0-4(93330)